# 시 보

| 선 람 | 기관의 장 |
|---|---|

제1556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2998호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 3
○ 인천광역시규칙 제2999호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 11
○ 인천광역시규칙 제3000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40
○ 인천광역시규칙 제3001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 89


##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91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 11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92호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 12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93호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 13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95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13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96호 (2016년도 재해대비·영농편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98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19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③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 19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19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 용유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준공 고시 -) ····· 264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161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 ····· 26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166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사업 방식 변경 공고) ····· 26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169호 (2016년 젓새우 한시어업허가 승인 공고) ····· 26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172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 27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17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인천가족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27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17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녹지)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27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176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78
○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2016-6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공고) ····· 28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6-159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83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6-160호 (보상계획공고) ····· 286


|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예 규

○ 인천광역시예규 제461호 (인천광역시 국외훈련 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 287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80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89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81호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0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82호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1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53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 31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55호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1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56호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46

## 군 · 구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6-996호 (신조공인의 등록 공고) ····· 357
○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3-215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359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정이유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제2조, 제3조 및 제4조)

1)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2)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감사규칙」제3조에 따라 감사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제6조)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및 여건변화로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관계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함.

○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 및 결과 통보(제5조, 제7조 및 제8조)

1)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2)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병행할 수 있고,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법령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감사 효력(제10조)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규칙 제2998호

#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을 말한다.
3. “적극행정”이란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국가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규정,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관의 책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시 본청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시 본청은 제외한다)에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단순히 법령등 해석만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① 시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에 따라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법령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 기관 등 자문) ① 시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의 반영 여부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 | | | |
|---|---|---|---|
| 신청기관<br>(부서명) | | 작성자 | 직급 :<br>성명 : |
| 건 명 | | | |

| |
|---|
| 1. 관 련 법 령 |
| ○<br>○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br>○ |
| 3.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br>○<br>○<br>○ |
| 4. 기타 (감사부서 의견 등) ※ 군·구의 경우 감사부서 의견 생략 가능 |
| ○<br>○ |

※ 관련 증빙자료 첨부(동 서식 외 작성자료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 접수번호 | | 신청기관<br>(부서명) | |
|---|---|---|---|
| 건 명 | | | |

| 1. 컨설팅 개요(추진일정 등) |
|---|
| ○<br>○ |
| **2. 주요내용(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포함)** |
|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br>○<br>○ |
| **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 군·구의 경우 감사부서 의견 생략 가능 |
| ○<br>○ |
| **4. 검토 의견서** |
| ○<br>○ |

[별지 제3호서식]

#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통보서

| 주관부서 | | 접수번호 | |
|---|---|---|---|
| 건 명 | | | |

| 1. 컨설팅 개요 |
|---|
| ○<br>○<br>○ |
| **2.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
| ○<br>○<br>○ |
|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
|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 반영한 경우 미반영 사유 등 기재<br>○<br>○<br>○<br>○ |

#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효율적인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송 용어, 소송문서의 처리·관리 절차, 소송담당자 등의 지정 및 승소(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 승소율 제고를 위해 패소판결금 지연이자에 대한 조치 등 소 확정 후의 조치 강화와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수행절차와 범위, 소송대리인의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서 간 혼선을 방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소송문서의 접수와 처리, 소송의 착수와 소송수행 방침결정 등의 기준을 마련함(제2조부터 제8조까지)

- 소송 관련 용어의 뜻 구체적 명기
- 답변서 제출 및 상소 처리 기한, 소송 문서의 사전 검토 조항 신설

○ 소송담당자 등의 지정(선임) 절차 및 직무의 구분으로 소송 수행시 각각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소송담당자 지정 절차와 법률고문 선임 규정과 소송담당자의 직무 범위 명료화 및 체계화

○ 판결금 지연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제12조제2항)
- 패소판결 즉시 지급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조치하여 지연이자로 인한 예산낭비 최소화

○ 소 확정 후의 부서별 조치 사항에 대한 근거와 수임료의 지급 기준을 마련함(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 (법무담당관) 소송비용의 회수 및 지출과 추심, 패소원인 분석 등
- (소송소관부서)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판결금 등의 추심, 강제집행 절차, 패소 원인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 통보 등

○ 직무관련사건 수행 절차를 명료화 하고 소송담당자의 직무와 수행범위를 신설함(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 소송대리인 선임시 법무담당관의 사전협의 조항 명문화
- 소송대리인의 직무범위 규정(형사사건 → 수사 종결, 민사소송 → 판결 확정)

○ 소송 수행절차 중 사전협의 규정 위반에 따른 패소 사건에 대한 감사부서 통보 조항을 신설함(제30조)
-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소 후 소 취하, 상소포기, 직무관련사건 방침, 중재수행 방침결정 등

○ 중재사건 세부처리 규정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법원 판결이 아닌 중재법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방침 결정
- 중재사건의 기본적인 절차·수임료 → 일반소송 절차·수임료 준용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규칙 제2999호

#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인천광역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인천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3조(소송소관부서)** ① 소송은 해당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하고, 법무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 소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담당관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무담당관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법정기일 10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등)**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응소·상소·반소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련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관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이 송무총괄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소송문서는 법무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은 제외한다.

**제7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담당자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담당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응소·상소·반소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담당자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응소·상소·반소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제9조(소송담당자 등의 지정 및 선임)**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담당자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담당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민사합의심 소송사건은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소송규칙」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민사사건 및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소송수행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장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

④ 소송담당자는 소송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소송소관부서의 장이 사무관일 경우 직근하급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명된 소송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관련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게 소송담당자의 변경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조정·선고기일 등에의 출석·입회 및 상황보고(별지 제7호서식)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소송담당자 등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소송사건 등에 대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4.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변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조정·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화해권고 및 조정 결정 등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판결내용의 가집행부여 부분에 관한 사항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6.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담당자 등은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시 지연이자, 상소심 승소시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가집행 판결금 지급 또는 공탁 여부를 결정하고,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 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증거자료
3. 법률고문 자문의견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 소송대리인 의견 및 법률고문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상소포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복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소송고지)**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장 소 확정 후의 조치 및 수임료 등

**제18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법무담당관과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무담당관: 소송비용의 회수 및 추심
2. 소송소관부서의 장
   가.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나. 강제집행 절차의 이행
   다. 판결금 등의 추심
   라.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추심할 금액보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결금을 제외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담당관실 예산으로 집행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불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 소관부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등을 위한 감사부서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사유로 소송담당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담당관은 징계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소송소관부서의 장 및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구상권 행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해태 등 귀책사유로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금을, 법무담당관은 소송비용을 소송담당자 등 관계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②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1조(임의변제)**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결 중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변제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임의청구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서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5. 각서(별지 제9호서식)

**제22조(강제집행에 대한 조치)** ① 패소 사건으로 법원 집행관이 시 세입금을 강제집행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법무담당관에게 조회하여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정당한 강제집행인가를 확인할 것
2. 집행관 신분증 또는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자의 강제집행인가를 확인할 것
3. 판결서 사본, 가집행부여문, 또는 확정증명서 사본 및 집행관 영수증을 징취할 것

② 시 세입금의 강제집행을 당한 각 실·국장 및 군수·구청장은 강제집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 세정담당관 및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시 세입금 압류사실 보고(별지 제10호서식)
2. 판결서 사본
3. 가집행부여문 사본 또는 확정증명서 사본
4. 집행관 영수증

**제23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와 같고,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

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장 직무관련사건

**제24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소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선임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제25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 수사 종결시(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직무관련사건 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와 같다.

제28조(소송비용 회수 등) ①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4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29조(지도·감독)** ① 법무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송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및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법무담당관은 소송사무의 지도·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사전협의 위반)** 법무담당관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32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소(제소) 보고: 소장 사본첨부
2. 판결시: 소송결과보고서에 판결서 사본첨부
3. 판결확정시: 소송결과보고서에 판결서 사본 및 확정증명 첨부

**제33조(중재수행 방침 결정)** 시장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소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중재문서의 심사 및 관리, 업무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방법 및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 2의 민사소송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자료제출과 공판출석 및 연락 등 본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을 범할 경우에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

다음 소송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 ○ ○과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 건 명 :
2. 당 사 자
   - 원고 :
   - 피고 : 인천광역시장
3. 법원 및 사건번호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

○○법원 ○○부 귀중

[별지 제3호서식]

# 지 명 장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귀하를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다 음

1. 사건번호 : 사 건 명 :
2. 원 고 :
   피 고 :
3.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조사·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보관·유지 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서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공판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마. 그 밖에 시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4호서식]

# 소 송 대 리 인 허 가 신 청 서

1. 사 건 명 :
2. 사건번호 :
3. 당 사 자
   - 원고 :
   - 피고 :
4. 관할법원 :
5. 소송대리인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조정규칙」 제6조에 따라 (조정사건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천 광 역 시

위 대표자 시장 (인)

○○법원 ○○부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사건번호 : )

#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 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 ○ ○과 ○ ○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락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소권 포기
(10)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1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인 **인천광역시**

위 대표자 시장 ○ ○ ○

○○법원 ○○부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사건번호 : )

#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 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 :

성명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락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소권 포기
(10)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1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인 **인천광역시** (민사소송의 경우)

위 대표자 시장 ○ ○ ○

위임인 **인천광역시장**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 ○○부 귀중

[별지 제7호서식]

# 소송담당자(수행자) 변론(조정·선고)기일 입회보고

<table>
<tr><td>사건번호</td><td colspan="2">사건명</td><td colspan="2">당사자</td><td>대리인</td><td colspan="2">소송담당(수행)자</td></tr>
<tr><td rowspan="3"></td><td colspan="2" rowspan="3"></td><td>원<br>고</td><td></td><td></td><td colspan="2">○ ○ ○ 과</td></tr>
<tr><td rowspan="2">피<br>고</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직급(직위)</td><td>성 명</td></tr>
<tr><td></td><td></td></tr>
<tr><td>변론회수</td><td>변론기일</td><td colspan="2">원 고 주 장<br>(항 변) 요 지</td><td colspan="2">피 고 주 장<br>(항 변) 요 지</td><td>증거신청</td><td>차기기일</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재판부<br>지시사항</td><td colspan="7"></td></tr>
<tr><td>소송수행자의견</td><td colspan="7"></td></tr>
</table>

※ 매회 변론기일 입회 후 변론 사항을 기재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8호서식]

# 임 의 변 제 청 구 서

| 처 리 기 간 |
| --- |
| 일 |

| | | | | |
| --- | --- | --- | --- | --- |
| 청 구 인 (원 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청 구 인 (원 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위청구인 동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원고 ○○, 피고 ○○, ○○법원 ○○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 당사자명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청 구 금 액 | | |
| --- | --- | --- | --- | --- | --- |
| 원 고 명 | 인 용 액 | 인 용 액 | 원 금 | 이 자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 ○ ○ (인)

○ ○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서 3부
2. 판결확정증명서 3부
3. 판결서 정본 1부, 등본 2부
4. 청구인 인감증명 3부
5. 위임장 3부(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불요)
6. 대리인 인감증명 3부(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불요)

[별지 제9호서식]

# 각 서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금 ○○원을 귀 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 고 성 명 : (인)
주 소 :
원 고 성 명 : (인)
주 소 :
원 고 성 명 : (인)
주 소 :
소송대리인 성 명 : (인)
주 소 :

인 천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10호서식]

# 기 관 명

수신 인천광역시장

참조 수신처 참조

제목 시 세입금 압류사실 보고

1. 사건의 표시

가. 사건번호 :

나. 사 건 명 :

다. 상 대 방 :

라. 상대방 소송대리인 :

2. 세입금 압류내용

가. 압류일시 :

나. 압류장소 :

다. 압류금액 : 금 ○○원

(원금 : ○○원, 이자 : ○○원, 집행비 : ○○원)

첨부 1. 영수증 사본

2. 판결서 사본

3. 가집행부여문 또는 확정증명 사본

기 관 명

수신처 : 법무담당관, 세정담당관, 소송소관부서의 장

[별지 제11호서식]

# 확 약 서

○ 소 속 :
○ 직급(직위) :
○ 성 명 :

직무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법률지원에 동의하며,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인천광역시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확약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중

[별지 제12호서식]

#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피 고 인(피의자) :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는 ○○○변호사(주소 : ,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법무법인인 경우)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주소 : , ☎○○○-○○○○)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선임인 인천광역시장

○○ 귀중

<별지>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5655호 2016. 5. 19. 공포・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시 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사전조사, 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시 지정문화재 대장, 지정에 관한 자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2조부터 제9조까지)

○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인의 범위, 관리단체의 지정서, 허가신청서, 관외 반출허가,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손실보상,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조사원의 신분 증표,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에 관한 사항 규정(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00호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문화재의 지정

**제2조(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①「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이하 “시 지정문화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종류에 따라 지정한다.

1.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이하 “시 유형문화재”라 한다)
2. 인천광역시 기념물(이하 “시 기념물”이라 한다)

3. 인천광역시 민속문화재(이하 “시 민속문화재”라 한다)

②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 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시 문화재자료(이하 “시 문화재자료”라 한다)는 종류를 나누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② 시 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적·인위적 조건 등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조(사전조사)** ① 시장은 시 지정문화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자로 하여금 조사 및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토 결과,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시 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시 문화재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의 지정번호·종류·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보호물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명칭·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재,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보호물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성명

**제7조(시 지정문화재 대장)**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 지정문화재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 지정문화재 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지정문화재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8조(지정에 관한 자료)**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시 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재의 종류·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성명(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성명)
4. 문화재의 작자, 유래 및 전설
5.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6. 문화재의 사진·도면 또는 녹음물 및 기록물
7.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8. 현상에 관한 설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 조례 제6조에 따라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3. 문화재 도면자료
4.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5. 문화재 사진자료
6.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8.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③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 문화재로 가지정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 지정문화재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세목
2. 시 지정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구조·형식
3. 시 지정문화재가 건조물이 아닌 경우: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지정서 부록을 포함한다)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④ 시장이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장 관리 및 보호

**제10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주변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구청장에게 관할 구역안의 시 문화재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법인의 범위)**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학교법인
2. 문화재 보호·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그 밖의 향토문화단체

**제12조(관리단체 지정서)**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 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방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서에 명시된 관리기간이 만료되거나 관리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신청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별지 제8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동물·식물·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와 사업(연구)계획서, 그 밖의 참고 서류

2.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와 사업(연구)계획서, 그 밖의 참고 서류
3.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와 설계도서, 현장사진,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
4.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내용 변경허가 신청서와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그 밖의 변경부분의 참고서류

**제14조(관외 반출허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 문화재를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제15조(수리 등의 시행통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 부담으로 조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의 지정번호·종류·명칭·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의 내용, 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절차)**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관리자(선임·변경·해임) 신고서
2.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도 예정 신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매도 예정 신고서

3.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동 신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소유자 변경신고서와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신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서와 사진·도면
5.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멸실·도난·훼손) 신고서와 사진·도면
6. 조례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관외반출, 재반입) 신고서
7. 조례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와 공사실시 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사진, 준공도면
8. 조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와 표본·박제 사진

**제17조(보조금 교부신청절차)**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지정번호·종류·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성명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공사관리 보호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손실보상)** 조례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의 지정번호·종류·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와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정서와 증명서류

**제20조(조사원의 신분 증표)** 조례 제23조에 따른 문화재 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2. 시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예방 활동
2. 화재 발생 시 신고요령
3. 화재 발생 시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 제4장 보칙

**제22조(표창)** 군수·구청장은 그 관내에 조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적조서에 증명할 내용을 갖추어 시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서류의 제출절차)**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허가·인가·신고 또는 보고 등에 관한 모든 서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서식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 문화재의 종류 | 지 정 기 준 |
|---|---|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 1. 건조물<br>가. 목조건축물류<br>당탑·궁전·성문·전랑·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br>나. 석조건축물류<br>석굴·석탑·전탑·부도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br>다. 분묘<br>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br><br>2. 전적·서적·문서<br>가. 전적류<br>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br>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br>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br>나. 서적류<br>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속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br>다. 문서류<br>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br><br>3. 회화·조각<br>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특징이 있는 것<br>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br>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br>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br>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br><br>4. 공예품<br>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br>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br>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br><br>5. 고고자료<br>가. 선사시대의 유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br>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것<br>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br>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

| | |
|---|---|
| | 6. 무구<br>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br>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 |
| 인천광역시 기념물 | 1. 유사 이전의 유적<br>패총·유물 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지적·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br><br>2.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br>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그 밖의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br><br>3.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br>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br>고궁·그 밖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br><br>4.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br>고도(옛길)·교지·뚝·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그 밖의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br><br>5. 교육·사회산업에 관한 유적<br>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그 밖의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br><br>6. 분묘·비 등<br>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그 밖의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br><br>7. 명승지<br>가.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br>나. 진귀한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br>다.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 등<br>라. 저명한 해안·하안·도서 그 밖의 경승지<br>마.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br>바. 특색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br><br>8. 동·식물<br>가.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br>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등 특수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br>다.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br>라. 한국특유의 축양동물<br>마. 학술상 가치가 큰 사총·명목·거수·노수·기형목<br>바.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br>사. 저명한 동·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br>아. 진귀한 식물의 자생지<br>자.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br>차.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br><br>9. 지질·광물<br>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br>나. 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한 동굴<br>다.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지질<br>라.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br>마. 학술상 귀중한 표본 |

| | |
|---|---|
| | 바. 온천 및 냉관천<br>10.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br>11. 자연현상 : 관상상, 과학상, 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
| 인천광역시 민속문화재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br>가. 의・식・주에 관한 것<br>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br>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br>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br>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br>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br>라. 교역에 관한 것<br>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br>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br>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br>바. 신앙에 관한 것<br>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br>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br>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br>아. 민속예능・오락・유희등에 관한 것<br>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br><br>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br>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br>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br>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br><br>3. 전설・설화와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br>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br>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단속으로 풍경이 보존된 곳<br>다. 한국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br>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br>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br>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

[별표 2]

#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4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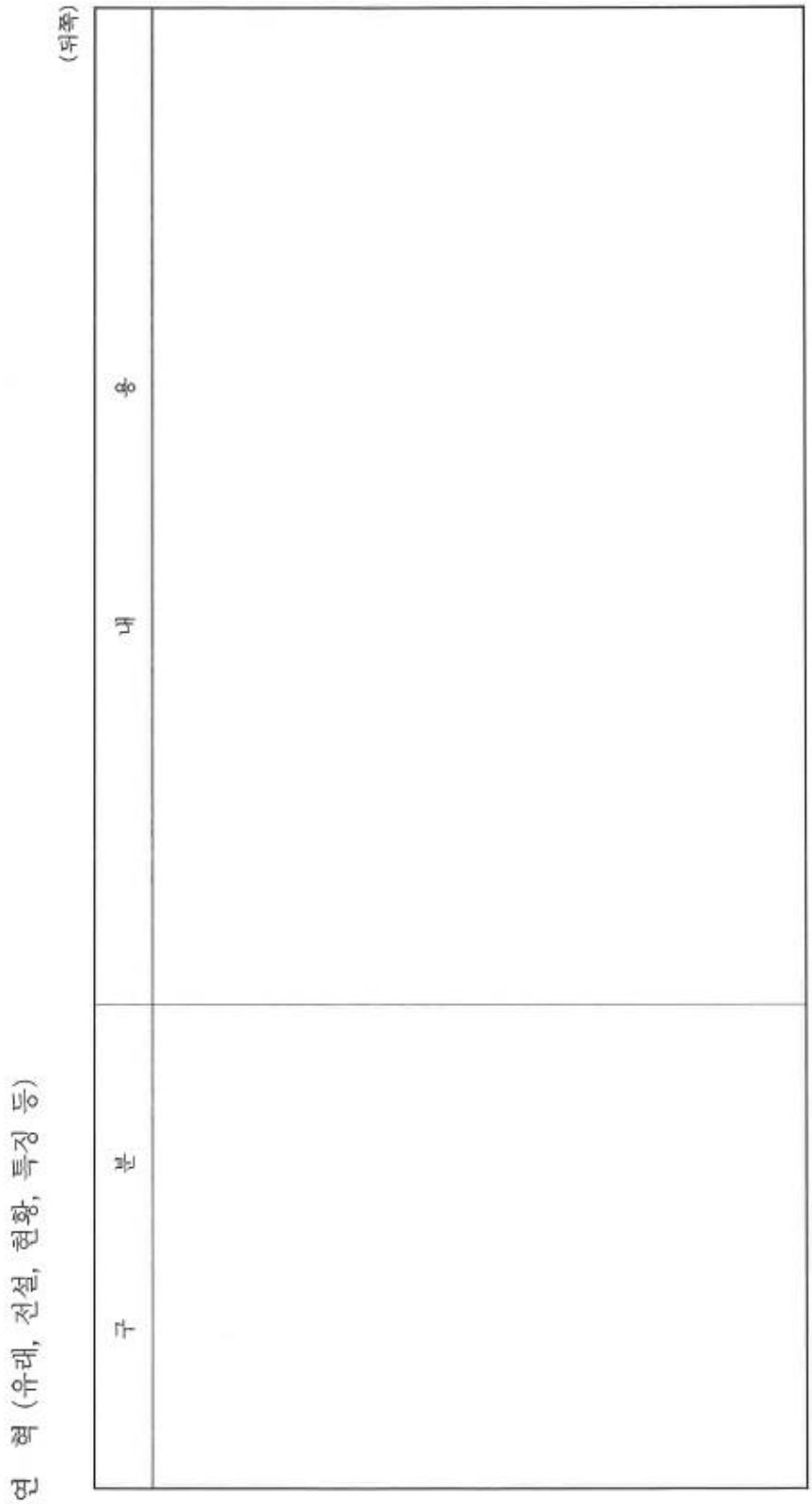
| 문화재의 종류 | 지 정 기 준 |
|---|---|
| 인천광역시 보호구역 지정 기준 | 1.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적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br><br>2.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5미터부터 15미터 이내의 구역<br><br>3. 석비·부도·석종·석불(건물 내의 안치된 것은 제외한다) 등은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5미터 내지 10미터 이내의 구역<br><br>4. 첨성대는 하부 기단에서 3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br><br>5. 석빙고는 벽면상부지면에서 1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br><br>6.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3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br><br>7.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20미터부터 3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br><br>8.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부터 1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br><br>9.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외향 5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구역<br><br>10. 성곽·제방 등은 성벽면 또는 제방하부 기점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10미터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br><br>11. 성·산성·성내 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기석에서 외향 10미터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br><br>12.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5미터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br><br>13.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br><br>14.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br><br>15.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미터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br><br>16. 그 밖에 시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 | |
|---|---|
| 보호물의 지정 기준 | 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은 철책·석책·위장 그 밖에 해당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br><br>2.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br><br>3. 그 밖에 시지정문화재는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
| 보호물의 보호구역 지정기준 | 1.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은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3미터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br><br>2. 보호물이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br><br>3. 그 밖에 보호물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대장

| 문화재종류 | | 지정번호 | | 명 칭 | | | 지정년월일 | | 색인번호 | |
|---|---|---|---|---|---|---|---|---|---|---|
| 재 료 | | 형식 또는 형태 | | 구 조 | | | 규격크기 | | 작자 | |
|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 수 량 (지정면적) | 소유자 | 주소 | 관리자또는관리단체 | 주소 | 점유자 | | 주소 | |
| | | | | 성명 | | 성명 | | | 성명 | |
| 부속시설물 | 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 | | | | | | | | | |
| 보호구역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 |
| 보호물 | 명칭 | 수량 | 소재지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 |
| 보호물의 보호구역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 |
| 지정사유 | 연 혁(유 래) | | | | 관 리 상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뒤쪽)
구 분
내 용
연 혁 (유래, 전설, 현황, 특징 등)

[별지 제2호서식] (1쪽)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자료보고서

| | | | |
|---|---|---|---|
| 문화재 구분 | 지정종류 | | |
| | 유형/종목 | | |
| 대상 문화재 현황 | 명 칭 | 한글 | 한자 |
| | | 영문 | |
| | 시대 / 연대 | | |
| | 소 재 지 | | |
| | 구조/형식/형태 | | |
| | 재료 / 품질 | | |
| | 수량/규모/크기 | 해당문화재 | |
| | | 보호구역 | |
| | | 보호물 | |
| | 현재 용도/기능 | | |
| | 소 유 자 (단체) | 성명(명칭)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연혁/유래/특징 | | |
| 관리단체(안) | 단 체 명 | | 대표자 |
| | 지정신청사유 | | |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 |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수·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br>2.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설명자료<br>3. 문화재 도면자료<br>4.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자료<br>5. 문화재 사진자료<br>6.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br>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br>8.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br>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 1. 건축물대장 등본<br>2. 건물등기부 등본<br>3. 토지(임야) 대장 등본<br>4. 토지등기부 등본 등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자료보고서 작성요령

1. 지정 종류: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유형/종목: 별표 1의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3. 명칭
 ○ 문화재의 성격・유형・시대 등 그 대표성・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재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 다만, 문화재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4. 시대/연대
 ○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 다만, 건립・제작・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5. 소재지
 ○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6.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형태 등을 적습니다.

7. 재료/재질: 문화재를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8.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재(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9.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10. 소유자: 해당 문화재(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11. 연혁/유래/특징
 ○ 문화재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12. 관리단체(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1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민속적・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민속적・기술적 가치 등)
 진정성・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 특징 등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2.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3쪽]

##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축물·구조물 등인 경우

(면적: ㎡)

| 연번 | 명칭 | 시대/연대 | 구조/형식/형태 | 토지면적 건물면적 (연면적,건축면적) 수량 | 용도 | 소재지/지번 | 소유자 성명 | 소유자 주소 | 관리자 성명 | 관리자 주소 | 점유자 성명 | 점유자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 소유자 성명 | 소유자 주소 | 관리자 성명 | 관리자 주소 | 점유자 성명 | 점유자 주소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면적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 설정근거 및 사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쪽)

# 문화재의 인문환경 및 현상·관리 상황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 | |
|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 | |
|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 | |
| 부속시설물 (주변) 현황 | | |
|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등록 문화재 분포현황 | | |
| 그 밖의 사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제 호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지 정 서

명 칭
수 량

위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235mm×290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소유자 | 주 소 |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 기록인 |
|---|---|---|---|---|
| | | | | |
| (변 경 사 항) | | | | |
| 소유자 | 주 소 |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변 경 연 월 일 | 기록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18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 호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부록

| 지정번호 | 명 칭 | 수 량 |
|---|---|---|
| 제 호 | | |

| 번 호 | 명 칭 | 재 료 | 구조·형식·형태 | 규 격 | 수 량 | 기타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5mm×290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번 호 | 명 칭 | 재 료 | 구조·형식·형태 | 규 격 | 수 량 | 기타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table>
<tr><td colspan="8">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신청서</td><td>처리기간<br>30일</td></tr>
<tr><td>① 문화재의 명칭</td><td></td><td>②종류</td><td></td><td>③지정번호</td><td></td><td>④수량</td><td></td></tr>
<tr><td>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td><td colspan="7"></td></tr>
<tr><td>⑥ 보호구역·보호물</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소 유 자</td><td>⑦성명</td><td></td><td>⑧생년월일</td><td></td><td>⑨직업</td><td colspan="2"></td></tr>
<tr><td>⑩주소</td><td colspan="6">(전화번호 : )</td></tr>
<tr><td>⑪재 발 급 사 유</td><td colspan="7">□ 도난 □ 분실 □ 훼손 □ 기타</td></tr>
<tr><td>⑫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td><td colspan="7"></td></tr>
<tr><td>⑬그 밖의 사항</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8">「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년 월 일<br><br>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br><br>인천광역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7">구비서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td><td>수 수 료<br>없 음</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

| ① 발급 번호 | ② 명칭 | ③ 종류 | ④ 지정 번호 | ⑤ 지정 연월일 | ⑥ 수량 | ⑦ 발급 구분 | 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소유자 | | ⑫ 부록 | ⑬ 발급 연월일 | ⑭ 발급자 [인] |
|---|---|---|---|---|---|---|---|---|---|---|---|---|
| | | | | | | | | ⑨ 주소 | ⑩ 생년 월일<br>⑪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 | | | | |
|---|---|---|---|---|
| 단 체 명 | | | | |
| 소 재 지 | | | |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위 단체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의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동물·식물·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 | | | | 처리기간 |
|---|---|---|---|---|---|
| 신청인 | ①성명 | | ②생년월일 | | |
| | ③주소 | (전화 : ) | | | |
| 대상문화재 | ④명칭 | | | | |
| | ⑤종류 | | ⑥지정번호 | | |
| | ⑦도래지·생산지 | | | | |
| ⑧포획·채취·반출 사유 | | | | | |
| ⑨포획·채취·반출 부분 | | ⑩수 량 | | | |
| ⑪포획·채취·반출 예정연월일 | | | | | |
| ⑫포획·채취·반출 방법 | | ⑬반출지 | | | |
| 기술담당자 | ⑭성명 | | ⑮생년월일 | | |
| | ⑯주소 | | | | |
| ⑰재반입여부 | | | | | |
| ⑱그 밖의 사항 | | | | | |

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사업(연구)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 | 수수료 |
|---|---|
|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 | | | | 처리기간 5일 |
|---|---|---|---|---|---|
|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 |
| | ③주 소 | (전화 : ) | | | |
| 대 상 문 화 재 | ④명 칭 | | | | |
| | ⑤종 류 | | ⑥지 정 번 호 | | |
| | ⑦소 재 지 | | | | |
| ⑧ 신 청 사 유 | | | | | |
| ⑨ 신 청 구 분 | | | ⑩수 량 | | |
| ⑪ 작 업 예 정 기 간 | . . 부터 . . 까지 | (일간) | ⑫작업방법 | | |
| 작업을 하고자 하는자 | ⑬성 명 | | ⑭주 소 | | |
| 기 술 담 당 자 | ⑮성 명 | | ⑯생 년 월 일 | | |
| ⑰ 소 요 경 비 | | | ⑱재 원 | | |
| ⑲ 그 밖 의 사 항 | | | | |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사업(연구)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table>
<tr><td colspan="6">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td><td>처리기간<br>30일</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①성 명</td><td></td><td>② 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③주 소</td><td colspan="4">(전화 : )</td></tr>
<tr><td rowspan="3">대 상 문 화 재</td><td>④명 칭</td><td colspan="5"></td></tr>
<tr><td>⑤종 류</td><td></td><td>⑥지정번호</td><td></td><td>⑦수량</td><td></td></tr>
<tr><td>⑧소재지(보관장소)</td><td colspan="5"></td></tr>
<tr><td>⑨보호구역·보호물</td><td colspan="6"></td></tr>
<tr><td>⑩신 청 사 유</td><td colspan="6"></td></tr>
<tr><td>⑪현상변경 등의 부분</td><td colspan="3"></td><td>⑫ 현상변경 등의 내용</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공 사 담 당 자</td><td>⑬성 명</td><td></td><td colspan="2">⑭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⑮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td><td>⑯착 공</td><td colspan="5"></td></tr>
<tr><td>⑰준 공</td><td colspan="5"></td></tr>
<tr><td>⑱소 요 경 비</td><td colspan="2">원</td><td>⑲재 원</td><td colspan="2"></td></tr>
<tr><td>⑳그 밖의 사 항</td><td colspan="6"></td></tr>
</table>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설계도서, 현장사진<br>2.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table>
<tr><td colspan="6">허가내용 변경허가 신청서</td><td>처리기간<br>30일</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①성 명</td><td></td><td>②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③주 소</td><td colspan="4">(전화 : )</td></tr>
<tr><td rowspan="3">대 상 문 화 재</td><td>④명 칭</td><td colspan="5"></td></tr>
<tr><td>⑤종 류</td><td></td><td>⑥지정번호</td><td></td><td>⑦수 량</td><td></td></tr>
<tr><td>⑧소재지(보관장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⑨보호구역·보호물</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⑩당초 허가사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⑪변 경 사 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⑫변 경 사 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td><td>⑬착 공</td><td colspan="5"></td></tr>
<tr><td>⑭준 공</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⑮ 그 밖의 사 항</td><td colspan="5"></td></tr>
</table>

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변경부분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br>2. 그 밖의 변경부분의 참고서류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 관외반출 허가신청서 | | | | | | | | 처리기간 |
|---|---|---|---|---|---|---|---|---|
| 신 청 인 | ①성 명 | | | ②생년월일 | | | |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④문 화 재 명 칭 | | ⑤종 류 | | ⑥지정번호 | | ⑦수량 | | |
| ⑧ 규 격 | | ⑨보관장소 | | | | | | |
| ⑩ 반 출 목 적 | | | | | | | | |
| ⑪ 반출대상시도 | | | ⑫보 험 방 법 | | | | | |
| ⑬ 반출예정연월일 | | | ⑭반입예정연월일 | | | | | |
| 반 출 담 당 자 | ⑮성 명 | | | | | | | |
| | ⑯주 소 | | | | | | | |
| ⑰ 반출중보호방법 | | | | | | | | |
| ⑱ 반출에관한협약 내 용 | | | | | | | | |
| ⑲ 그 밖의 사항 | | | | | | | | |

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
|---|---|
| 1. 보험증서 사본 1부<br>2. 소유자동의서 1부<br>3. 허가신청목록 1부<br>4. 전시계획서 1부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 관외반출 허가신청 목록 | | |
|---|---|---|
| ①지 정 번 호 | | 문화재의 사진 |
| ②명 칭 | | |
| ③수 량 | | |
| ④규 격 | | |
| ⑤보 관 장 소 | | |
| ①지 정 번 호 | | 문화재의 사진 |
| ②명 칭 | | |
| ③수 량 | | |
| ④규 격 | | |
| ⑤보 관 장 소 | | |
| ①지 정 번 호 | | 문화재의 사진 |
| ②명 칭 | | |
| ③수 량 | | |
| ④규 격 | | |
| ⑤보 관 장 소 | | |
| ①지 정 번 호 | | 문화재의 사진 |
| ②명 칭 | | |
| ③수 량 | | |
| ④규 격 | | |
| ⑤보 관 장 소 | | |

190mm×268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table>
<tr><td colspan="7">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관리자(선임·변경·해임) 신고서</td><td>처리기간<br>2일</td></tr>
<tr><td rowspan="2" colspan="2">신 고 인</td><td>①성명</td><td></td><td>②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③주소</td><td colspan="5">(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2">④문화재의명칭</td><td colspan="2"></td><td>⑤종류</td><td></td><td>⑥지정번호</td><td></td><td>⑦수량</td><td></td></tr>
<tr><td colspan="2">⑧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td><td colspan="8">(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4">관 리 자</td><td rowspan="2">신</td><td>⑨성명</td><td></td><td>⑩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⑪주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구</td><td>⑫성명</td><td></td><td>⑬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⑭주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⑮사 유</td><td colspan="3"></td><td>⑯(선임·해임)<br>연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⑰그 밖의 사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br><br>년 월 일<br><br>신고인 (서명 또는 인)<br><br>인천광역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7">구비서류: 없 음</td><td>수 수 료<br>없 음</td></tr>
</table>

90mm×26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매도 예정 신고서</td><td>처리기간<br>즉 시</td></tr>
<tr><td rowspan="2">신 고 인</td><td>①성 명</td><td colspan="2"></td><td>②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③주 소</td><td colspan="5">(전화 : )</td></tr>
<tr><td>④문화재 명칭</td><td></td><td>⑤종류</td><td></td><td>⑥지 정 번 호</td><td></td><td>⑦수량</td></tr>
<tr><td>⑧소재지 또는 보관장소</td><td colspan="6"></td></tr>
<tr><td>⑨매도사유</td><td colspan="3"></td><td>⑩매도방법</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원 매 자</td><td>⑪성 명</td><td colspan="2"></td><td>⑫직 업</td><td colspan="2"></td></tr>
<tr><td>⑬주 소</td><td colspan="5">(전화 : )</td></tr>
<tr><td>⑭매도예정가격</td><td colspan="6"></td></tr>
<tr><td>⑮그 밖의 사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br><br>년 월 일<br><br>신고인 (서명 또는 인)<br><br>인천광역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6">구비서류: 없 음</td><td>수 수 료<br>없 음</td></tr>
</table>

190mm×26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구역, 보호물보호구역) 소유자 변경신고서 | | | | | | | | 처리기간 2일 |
|---|---|---|---|---|---|---|---|---|
| ①문화재의 명칭 | | ②종류 | | ③지정번호 | | ④수량 | | |
| ⑤소재지또는보관장소 | | | | | | | | |
| ⑥보호구역·보호물 | | | | | | | | |
| 소유자 | 신 | ⑦성 명 | | ⑧생년월일 | | ⑨직업 | | |
| | | ⑩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구 | ⑪성 명 | | ⑫생년월일 | | ⑬직업 | | |
| | | ⑭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⑮변 경 사 유 | | | | ⑯변경연월일 | | | | |
| ⑰그 밖의 사항 | | | | | | | |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서명 또는 인)

(구)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 수 료 |
|---|---|
| | 없 음 |

190mm×26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table>
<tr><td colspan="7">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서</td><td>처리기간<br>2일</td></tr>
<tr><td rowspan="2">신 고 인</td><td>①성 명</td><td colspan="2"></td><td>②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③주 소</td><td colspan="5">(전화번호 : )</td></tr>
<tr><td>④문 화 재 명 칭</td><td></td><td>⑤종류</td><td></td><td>⑥지정번호</td><td></td><td>⑦수량</td><td></td></tr>
<tr><td>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td><td colspan="7"></td></tr>
<tr><td>⑨보 호 구 역</td><td colspan="2"></td><td>⑩지 목</td><td></td><td>⑪지 적</td><td></td></tr>
<tr><td>⑫변 경 사 유</td><td colspan="3"></td><td>⑬변경연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변 경 내 용</td><td>⑭신</td><td colspan="6"></td></tr>
<tr><td>⑮구</td><td colspan="6"></td></tr>
<tr><td>⑯그 밖의 사항</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br><br>년 월 일<br>신고인 (서명 또는 인)<br><br>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6">구비서류:사진·도면</td><td>수 수 료<br>없 음</td></tr>
</table>

190mm×26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멸실·도난·훼손) 신고서 | | | | | 처리기간 |
|---|---|---|---|---|---|
| | | | | | 2일 |
| 신고인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 |
| ④문 화 재 의 명 칭 | | | ⑤지정 종류 및 번호 | 제 호 | |
| ⑥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 | | ⑦수 량 | 점 | |
| ⑧보 호 물 명 칭 | | | | | |
| 신고내용 | ⑨사 고 연 월 일 | | | | |
| | ⑩사 고 내 용 | | | | |
| | ⑪사 고 경 위 | | | | |
| | ⑫조 치 내 용 | | | | |

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br>1. 사진 1장<br>2. 도면 1부 | 수 수 료 |
|---|---|
| | 없 음 |

190mm×26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관외반출, 재반입) 신고서</td><td>처리기간<br>즉 시</td></tr>
<tr><td rowspan="2">신 고 인</td><td>①성 명</td><td colspan="2"></td><td>②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③주 소</td><td colspan="5">(전화 : )</td></tr>
<tr><td>④문화재 명칭</td><td></td><td>⑤종류</td><td></td><td>⑥지 정 번 호</td><td>⑦수량</td><td></td></tr>
<tr><td rowspan="2">반출허가내용</td><td>⑧허가번호</td><td colspan="2"></td><td>⑨허가연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⑩허가조건</td><td colspan="5"></td></tr>
<tr><td>⑪반출입연월일</td><td>반 출</td><td colspan="2"></td><td>반 입</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반출입담당자</td><td>⑫성 명</td><td colspan="2"></td><td>⑬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⑭주 소</td><td colspan="5">(전화 : )</td></tr>
<tr><td rowspan="2">보 관 장 소</td><td>⑮반 출 전</td><td colspan="5"></td></tr>
<tr><td>⑯반 입 후</td><td colspan="5"></td></tr>
<tr><td>⑰문화재 현황</td><td colspan="6"></td></tr>
<tr><td>⑱그 밖의 사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br><br>년 월 일<br><br>신고인 (서명 또는 인)<br><br>인천광역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6">구비서류: 없 음</td><td>수 수 료<br>없 음</td></tr>
</table>

190mm×26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서 | | | | 처리기간 1일 |
|---|---|---|---|---|
| 신 고 인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 (전화) | | |
| 대 상 문 화 재 | ④명 칭 | | | |
| | ⑤소재지 (보관장소) | | | |
| ⑥보호구역보호물 | | | | |
| 공 사 내 용 | ⑦명 칭 | | | |
| | ⑧내 용 | | | |
| ⑨착 공 연 월 일 | . . . | ⑩준공(예정)연월일 | . . . | |
| ⑪허가, 명령 연 월 일 | | ⑫허가,명령의내용 | | |
| ⑬공 사 담 당 자 | | ⑭공 사 금 액 | 원 | |
| ⑮그 밖의 사항 | | | |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수 수 료 |
|---|---|
|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 없 음 |
| 2. 공사감독관실시상황보고서 | |
| 3. 사진 및 준공도면 | |

190mm×26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table>
<tr><td colspan="7">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td><td>처리기간<br>2일</td></tr>
<tr><td rowspan="2">신 고 인</td><td>①성명</td><td colspan="2"></td><td>②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③주소</td><td colspan="5">(전화번호 )</td></tr>
<tr><td>④문화재의 명칭</td><td colspan="2"></td><td>⑤종류</td><td></td><td>⑥지정번호</td><td></td><td>⑦수량</td><td></td></tr>
<tr><td>⑧ 소재지 또는<br>보관장소</td><td colspan="8">(전화번호 )</td></tr>
<tr><td>⑫ 소유하게 된 경위</td><td colspan="8"></td></tr>
<tr><td>⑭ 그 밖의 사항</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9">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br>년 월 일<br>신고인 (서명 또는 인)<br><br>귀하</td></tr>
<tr><td colspan="7">※ 구비서류: 표본·박제 사진 1부.</td><td>수수료<br>없 음</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 | | | | 처리기간 30일 |
|---|---|---|---|---|---|
| 추천인 | ①기관명 | | ②대표자 | | |
| | ③주소 | | | | |
| | ④전화번호 | | ⑤전자메일 | | |
| 동물치료소 추천대상 | ⑥기관명 | | ⑦주소 | | |
| | ⑧대표자 | | ⑨생년월일 | | |
| | ⑩전화번호 | | ⑪전자메일 | | |
| | ⑫수의사 면허번호 | | ⑬수의사 면허일 | |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수 또는 구청장 (인)

추천인

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관리단체의 장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br>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없음 |

210㎜×297㎜(백상지80g/㎡)

이 추천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추천기관 | 처리기관<br>(담 당 부 서) |
|---|---|
| 자치군·구<br>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관리단체 | 인천광역시<br>(문화재담당 부서) |
| 추천서 및 의견서 작성 → | 접수 |
| | ↓ |
| 지정서 발급 ← | 결정 |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① 인 천 광 역 시 장 직인

②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23호서식]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 ①발급 번호 | ②발급 일자 | ③기관명 | ④지정 연월일 | 대표자 | | | |
|---|---|---|---|---|---|---|---|
| | | | | ⑤성명 | ⑥생년월일 | ⑦수의사 면허번호 | ⑧수의사 면허일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 | | | 처리기간<br>30일 |
|---|---|---|---|---|---|
| ①지정번호 | | | ②지정일자 | | |
| 신청기관 | ③기관명 | | ④주소 | | |
| | ⑤대표자 | | ⑥생년월일 | | |
| | ⑦수의사 면허번호 | | ⑧수의사 면허일 | | |
| 재발급 사유 |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br>□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br>□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 | |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귀하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br>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br>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지정서와 증명서류 | 없음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5호서식]

##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앞쪽)

제 호

### 문화재조사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위의 사람은 문화재조사원임을 증명함

**인천광역시장** 직인

6.4cm

9.1cm

91mm×64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앞면 기재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 기재의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제정(조례 제5656호 2016.5.19. 공포·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에 관한 사항 규정(제2조부터 제6조까지)

○ 전수교육조교의 추천,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무형문화재 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시 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신분증표, 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전수교육 이수증, 기량심사의 기록,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01호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이하 “시 무형문화재”라 한다)의 지정 및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군수·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

야 한다.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 또는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시 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 무형문화재등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 등의 사유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등의 지정과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무형문화재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 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

항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7조에 따른 시 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9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① 시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조사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인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수교육조교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무형문화재 대장)** 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 무형

문화재 대장 및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무형문화재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시 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13조제5항에서 정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제15조(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대표자를 포함한다),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 | |
|---|---|
| 무형문화재 명 칭 | |
| 개 요 | |
| 전승 현황 | |
| 종합의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군·구 의견) |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군수·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추천서

| | | | |
|---|---|---|---|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명칭 | | 제 호 (명 칭 ) | |
| 추천받는 사 람 | 성 명 | | 생년월일 (성 별) |
| | 주 소 | | |
| | 기능 · 예능 | | (이수 기능 · 예능: ) |
| 경 력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경력 | | |
| | 기능 · 예능 공개실적 | ○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br>○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br>※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 |
| | 이 수 사 항 | 년 월 일 | 이수증 받음 |
| | 그 밖의 사항 | | |

「인천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의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 ] 보유자 [ ] 명예보유자 [ ]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 ] 보유자

[ ] 보유자(인정 기간: . . ~ . . )로서 보유기간 중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에 큰 공적이 있어 명예보유자

[ ] 전수교육조교

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266㎜×380㎜[백상지(150g/㎡)]

■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보 유 단 체 명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단체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266mm×380mm[백상지(150g/㎡)]

■ [별지 제5호서식]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앞쪽)

<table>
<tr><td colspan="2">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명칭</td><td colspan="2">제 호 (명칭 )</td></tr>
<tr><td rowspan="3">전승자 구분</td><td rowspan="3">[ ] 보유자<br>[ ] 보유단체<br>[ ] 명예보유자<br>[ ] 전수교육조교</td><td>성 명<br>(보유단체명)</td><td>생년월일<br>(성 별)</td></tr>
<tr><td>대표자 성명<br>(보유단체 경우)</td><td>대 표 자<br>생년월일<br>(보유단체 경우)</td></tr>
<tr><td colspan="2">주 소<br>(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2">재 교 부 사 유</td><td colspan="2">[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td></tr>
<tr><td colspan="2">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그 밖의 사 항</td><td colspan="2"></td></tr>
</table>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3.5㎝ × 4.5㎝) 1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
| | 인 천 광 역 시 |
|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 인정서 재교부 |

■ [별지 제6호서식]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 ] 보유자 [ ] 명예보유자 [ ]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교부대장

| 교부 번호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 [ ] 보유자 [ ] 명예보유자 [ ] 전수교육조교 성명 | 보유 기능·예능 | 생년월일 (성 별) | 주 소 | 교부 구분 | 교부 연월일 | 교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별지 제7호서식]>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장

| 교부 번호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성 별) | 주 소 | 교부 구분 | 교부 연월일 | 교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인천광역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

| 지정 기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호 각 목 중 선택) | | | | | | | 구 분 | |
|---|---|---|---|---|---|---|---|---|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개인 | 단체 |
| | | | | | | | | |

| | | | |
|---|---|---|---|
| 무형문화재 명 칭 | 한 글 | 한 자 | |
| | 영 문 | | |
| 지 정 일 | | 해 제 일 | 지정번호 |
| 개 요 및 지정 사유 | | | |
| 관리 연혁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인천광역시(긴급보호) 무형문화재 명칭 :

# 전 승 자 목 록

| 전승자 구분 | 성명 (단체명) | 생년월일 (성 별) | 인정일 | 해제일 | 해 제 사 유 | 기능 • 예능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보유자 · 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 | | | |
|---|---|---|---|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명 칭 | 제 호 (명칭 ) | | 지정 연월일 |
| 보유자성명 (보유단체명) | |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 경우) | 인정 연월일 |
| 주 소 | | | 연 락 처 |

| 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 | 전수생 |
|---|---|---|---|
| 명 | 명 | 명 | 명 |

| | |
|---|---|
| 조사 결과 | 기능·예능 |
| | 전수교육 |
| | 전승자 |
| | 전수교육 경비 |
| | 전승활동 |
| | 전 수 교 육 시설 현황 |
| | 특기사항 |
| 종합의견 | |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210㎜×297㎜[백상지(150g/㎡)]

(뒤쪽)

| 세부 점검 내용 | |
|---|---|
| 기능·예능 현 황 | |
| | |
| | |
| | |
| 전수교육 현 황 | |
| | |
| | |
| | |
| 전승자 현 황 | |
| | |
| | |
| | |
| 전수교육 경 비 | |
| | |
| | |
| | |
| 전승활동 현 황 | |
| | |
| | |
| | |
| 전수교육 시설 현황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조사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인천광역시**

60㎜×90㎜[백상지(150g/㎡)]

(뒤쪽)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수신처 : 인천광역시)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 신 고 인<br>(본 인) | 성 명 | 생년월일<br>(성 별)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인천광역시<br>무형문화재<br>명 칭 | 제 호 (명칭 ) | |
| 변경 사유 | | 변경 연월일 |
| 변경 내용 | 신 | |
| | 구 | |
| 그 밖의 사항 | |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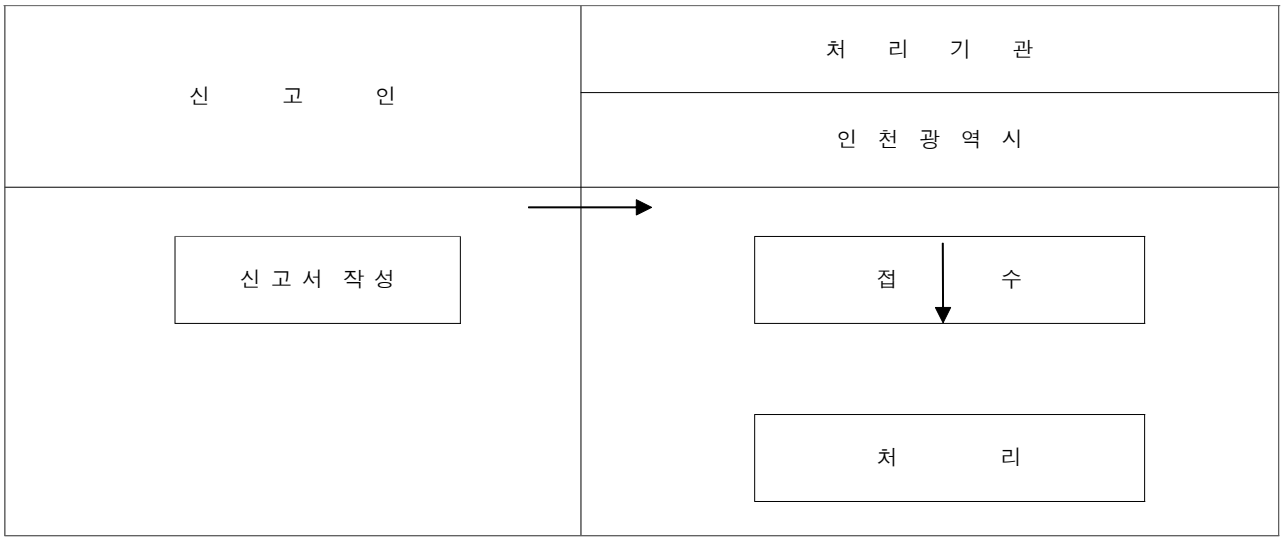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12호서식]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명 칭 | | 제 호(명칭 ) | 보유자명 | (서명 또는 인) |
|---|---|---|---|---|
| 전수 교육 세부계획 | 1월 | | | |
| | 2월 | | | |
| | 3월 | | | |
| | 4월 | | | |
| | 5월 | | | |
| | 6월 | | | |
| | 7월 | | | |
| | 8월 | | | |
| | 9월 | | | |
| | 10월 | | | |
| | 11월 | | | |
| | 12월 | | |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3호서식]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명 칭 | | | 보유자명 | (서명) |
|---|---|---|---|---|
| 전수 교육 세부실적 | 1월 | | | |
| | 2월 | | | |
| | 3월 | | | |
| | 4월 | | | |
| | 5월 | | | |
| | 6월 | | | |
| | 7월 | | | |
| | 8월 | | | |
| | 9월 | | | |
| | 10월 | | | |
| | 11월 | | | |
| | 12월 | | | |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 | | | |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 이 수 증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 (이수 기능·예능: )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위 사람은 위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를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직인

210mm×297mm [백상지(150g/㎡)]

■ [별지 제15호서식]

#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명칭 | 제 호 (명칭 ) | |
| | 성 명 | 생년월일 (성 별)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재 발 급 신 청 사 유 |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br>[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
|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 | |
| 그 밖의 사 항 | |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6호서식]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 전수교육 주체 | 이수 기능예능 | 이수자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발 급 연월일 | 재발급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mm×266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7호서식]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 | | | |
|---|---|---|---|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명칭 | 제 호 (명칭 ) | | |
| 전수교육 주체 | | 심사대상자 | |
| 심사 일시 | 년 월 일 | 심사 장소 | |
| 심사 의견 | | 비 고 | |
| | | | |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8호서식]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 | | | | | |
|---|---|---|---|---|---|
| 추천받는 사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명 칭 | 제 호 (명칭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성 별) | | |
| | 주 소 | | | | |
| 경 력 | 시무형문화재 전 수 경 력 | 보 유 자 성 명 | | 전수 기간 | 개월 |
| | | 보호단체명 | | | |
| | 무형문화재관계 분야 전수 경력 | 기 능 · 예 능 자 명 | | 전수 기간 | 개월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8호서식]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table>
<tr><td rowspan="3">추천받는 사람</td><td>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명 칭</td><td colspan="4">제 호 (명칭 )</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성 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경 력</td><td rowspan="2">시무형문화재 전 수 경 력</td><td>보 유 자 성 명</td><td></td><td rowspan="2">전수 기간</td><td rowspan="2">개월</td></tr>
<tr><td>보호단체명</td><td></td></tr>
<tr><td>무형문화재관계 분야 전수 경력</td><td>기 능 · 예 능 자 명</td><td></td><td>전수 기간</td><td>개월</td></tr>
</table>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91호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 8. 29.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칭: 길상배수지 건설공사

**3. 면적 및 규모**

○ 면적 4,384㎡, 배수용량 4,500㎥

**4. 사업시행자**

○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5

○ 성명: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5. 사업기간**: 2016. 8. 29.~2017. 4.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 | |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
| 계 | | | 21,160 | 4,384 | |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 산20 | 임 | 9,917 | 3,907 | 신정자, 배상윤 |
| | 산21-10 | 임 | 7,324 | 418 | 강화군 |
| | 607-50 | 임 | 3,919 | 59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끝.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 192호

#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72호, 2016.0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 8. 29.

인 천 광 역 시 장

#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1. 개 요

O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O 시 행 자 : 인천상공강화산단주식회사
O 개발기간 : 2011. 4. ~ 2018. 12.
O 개발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 모집)
O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월곳리 일원
O 사 업 비 : 약 995억원
O 면 적 : 461,515.3㎡
- 산업시설 319,496.9㎡, 지원시설 9,423.5㎡, 공공시설 88,002.6㎡, 공원·녹지 44,592.3㎡

## 2. 조성목적

O 강화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O 도시균형발전 및 자족도시로의 기능 강화
O 산재된 개별공장의 합리적 재배치 및 이전 희망업체의 효율적 관리
O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 방지

## 3. 추진경위

O 2008.09.11. :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강화군)
O 2009.02.18. : 산업단지 세부공급계획 승인(국토해양부)
O 2009.08.27. : 강화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O 2010.11.19. : 사업시행 MOU체결(현대엠코·인천상공회의소)
O 2011.04.22. : 특수목적법인 설립(인천상공강화산단주식회사)
O 2012.02.08.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한강유역환경청)
O 2012.02.08. : 산업단지 개발계획 심위위원회 심의(인천시, 조건부통과)
O 2012.07.25. : 군사보호구역 완화 고시, 군사협의 심의결과 통보(해병2사단)
O 2012.07.30.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승인
O 2012.08.03. :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고시
O 2013.03.27. : 부지조성공사 기공식
O 2013.06.03. : 산업단지 개발계획 (1차)변경 승인·고시
O 2013.07.01. : 폐수처리기본계획 승인(한강유역환경청)
O 2013.10.04. : 수용재결공탁(인천지방법원, 토지수용 완료)
O 2013.11.11. : 산업단지 개발계획 (2차)변경 승인·고시
O 2014.06.11. :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문화재청)
O 2014.12.08. : 산업단지 개발계획 (3차)변경 승인·고시
O 2015.02.23.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O 2015.04.27. : 산업단지 개발계획 (4차)변경 승인·고시
O 2015.08.10.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
O 2015.09.11. :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분양공고
O 2015.11.16. : 산업단지 개발계획 (5차)변경 승인·고시
O 2015.12.08. : 산업단지 입주 개시
O 2015.12.31. : 산업단지 조성사업(1단계) 준공인가 공고
O 2018. 12. : 인천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예정)

## 4. 관리방향

O 강화군의 장기발전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O 산업공해 최소화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
O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활성화 도모
O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공간배치로 단지의 생산성과 토지이용 효율성 극대화
O 근로자 복지향상과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 전개

## 5.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자격

### 가. 입주대상업종

1) 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입주대상업종 380개 )

| 업 종 | 중분류 | 입주대상업종(세분류, 세세분류) | 입주대상업종수 |
|---|---|---|---|
| 신소재·신물질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br>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br>20433 화장품 제조업<br>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 4 |
| |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아래 3개 업종을 제외한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br>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br>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br>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 15 |
| | C23 비금속 광물제품 |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br>(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은 제외)<br>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br>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16 |
| 전기·전자 | C26 전자부품 | 전업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 27 |
| | C27 의료·정밀기기 | 전업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19 |
| | C28 전기장비 | 전업종(전기장비 제조업) | 24 |
| 철강·기계 | C24 1차금속 |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br>24123 철강선 제조업<br>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br>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4 |
| | C25 금속가공제품 | 아래 6개업종을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br>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br>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br>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br>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br>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23 |
| | C29 기타기계 | 전업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45 |
| 자동차·운송 | C30 자동차 | 전업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1 |
| | C31 기타운송장비 | 전업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5 |
| 복합산업 | C10 식료품제조업 | 1개업종(10110 도축업)을 제외한 식료품 제조업 | 38 |
| | C11 음료 | 전업종(음료 제조업) | 10 |
| | C13 섬유제품 | 아래 5개업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br>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br>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br>13403 날염 가공업<br>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 26 |

| | | | |
|---|---|---|---|
| | |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
| | C14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 1개 업종(14201 원모피 가공업)을 제외한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 16 |
| | C16 목재·나무제품 | 전업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5 |
| | C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 아래 3개업종을 제외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br>17121 신문용지 제조업<br>17122 인쇄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br>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12 |
| | C18 인쇄및기록매체 | 전업종(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7 |
| | C32 가구 | 전업종(가구 제조업) | 8 |
| | C33 기타제품 | 전업종(기타 제품 제조업) | 25 |
| 물류산업 | H52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 전업종(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20 |

2) 지원시설구역

ㅇ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에 한함)

## 나. 입주기업체 자격

1) 산업시설구역

ㅇ법 제2조 제18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ㅇ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2) 지원시설구역

ㅇ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공공시설구역

ㅇ법 시행령 제4조의5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운영자

ㅇ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공통사항

ㅇ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 6.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

### 가.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 합 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공원·녹지구역 |
|---|---|---|---|---|
| 461,515.3 | 319,496.9 | 9,423.5 | 88,002.6 | 44,592.3 |

※ 산업시설구역 = 공장시설용도 314.572.7㎡ + 물류시설용도 4,924.2㎡

###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ㅇ법 제2조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ㅇ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지원시설구역

ㅇ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ㅇ법 제2조 제17호 및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공공시설구역

ㅇ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한 공공시설(공원, 도로, 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ㅇ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4) 공원·녹지구역

ㅇ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다. 용도별 구역도** : 붙임1. 「강화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참조

## 7.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

### 가. 배치면적

| 구 분 | 업 종 명 (중분류) | 면 적 | 구성비 |
|---|---|---|---|
| 신소재·신물질산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br>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br>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7,938.3㎡ | 5.6% |
| 철강·기계산업 | C24 1차금속 제조업<br>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br>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223,364.2㎡ | 70.0% |
| 전기·전자산업 | C26 전자부품 제조업<br>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br>C28 전기장비 제조업 | 11,593.3㎡ | 3.6% |
| 자동차·운송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21,851.9㎡ | 6.8% |
| 복합산업 | C10 식료품 제조업<br>C11 음료 제조업<br>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br>C14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업(모피제외)<br>C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br>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br>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br>C32 가구 제조업<br>C33 기타제품 제조업 | 39,825.0㎡ | 12.5% |
| 물류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4,924.2㎡ | 1.5% |
| 합 계 | | 319,496.9㎡ | 100% |

**나. 건축계획** :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 다. 배치기준

1) 생산적이며 쾌적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연관기능간의 합리적 배치
2)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연계성 확보
3) 토지이용, 교통, 단계별 사업계획 등에 적합하고 획지별 교환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
4) 도로에 의한 업종별 배치를 원칙으로 블록 구분하고, 인접하여 업종별로 집단화
5) 실제 공장부지 분양시, 실수요에 따라 업종별 공장배치 조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의거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

**라.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2. 「강화일반산업단지 배치계획도」 참조

## 8. 지원시설 설치·운영

**가. 설치계획** : 입주대상업종 참조(공동주택 외 11개 업종)

**나. 건축계획** :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7층이하)

**다. 관리운영**

1) 법 제2조 제17호 및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2) 업주기업체 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 시설에 우선함
3) 지원시설부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용도의 특정업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입주계약변경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9.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지여건**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h>관리기관</th></tr>
<tr><td>진입도로</td><td>◦국도48호선 우회도로에서 입체교차를 통한 진입도로계획(4차로)<br>◦사업대상지 남·서측의 군도8호선을 통한 부진입도로계획(2차로)</td><td>서울지방국토관리청<br>강화군</td></tr>
<tr><td>용 수</td><td>◦공촌정수장에서 길상가압장을 통하여 산업단지배수지에 용수공급
<table>
<tr><th colspan="3">일 최대수요량(㎥/일)</th><th rowspan="2">공급량<br>(㎥/일)</th><th rowspan="2">시설용량<br>(㎥)</th></tr>
<tr><th>공 업</th><th>생 활</th><th>합 계</th></tr>
<tr><td>1,547</td><td>163</td><td>1,710</td><td>1,710</td><td>1,100</td></tr>
</table></td><td>상수도<br>사업본부</td></tr>
<tr><td>오·폐수</td><td>◦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정화후 방류
<table>
<tr><th colspan="3">일 최대발생량(㎥/일)</th><th rowspan="2">시설용량<br>(㎥/일)</th></tr>
<tr><th>오 수</th><th>폐 수</th><th>합 계</th></tr>
<tr><td>136</td><td>748</td><td>884</td><td>950</td></tr>
</table></td><td>인천광역시<br>(수질환경과)</td></tr>
<tr><td>전 력</td><td>◦강화#2변전소에서 공급예정
<table>
<tr><th>구 분</th><th>설비용량(kVA)</th><th>전력부하(kW)</th></tr>
<tr><td>산 업 시 설 용 지</td><td>33,478</td><td>24,901</td></tr>
<tr><td>지원·공공시설용지</td><td>1,167</td><td>1,050</td></tr>
<tr><td>합 계</td><td>34,645</td><td>25,951</td></tr>
</table></td><td>한국전력<br>공사</td></tr>
<tr><td>열</td><td>◦인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td><td>인천도시</td></tr>
</table>

| | | | | |
|---|---|---|---|---|
| (LNG) | 구 분 | 열수요량(Gcal/년) | 최대열부하(Gcal/hr) | 가스㈜ |
| | 산 업 시 설 용 지 | 247,858 | 19.64 | |
| | 지원·공공시설용지 | 1,284 | 0.95 | |
| | 합 계 | 249,142 | 20.59 | |

## 나. 분양 공고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구역, 주차장 분양공고

## 다. 분양 현황

(2016.07.31.현재)

| 구 분 | 총면적(㎡) | 분양 가능 면적(㎡) | | | |
|---|---|---|---|---|---|
| | | 분양현황(㎡) | | 조성현황(㎡) | |
| | | 분 양 | 미분양 | 조 성 | 미조성 |
| 산 업 시 설 | 319,496.9 | 277,914.5 | 41,582.4 | 319,496.9 | |
| 지 원 시 설 | 9,423.5 | | 9,423.5 | 9,423.5 | |
| 주 차 장 | 3,086.8 | | 3,086.8 | 3,086.8 | |
| 공 공 시 설 | 129,508.1 | | 129,508.1 | 129,508.1 | |
| 합 계 | 461,515.3 | 277,914.5 | 183,600.8 | 461,515.3 | |

※ 산업시설 분양률 87.1%

## 라. 입주 현황

(2016.07.31.현재)

| 구 분 | 입주계획 | | 입주현황 | |
|---|---|---|---|---|
| | 업체수 | 면 적(㎡) | 업체수 | 면 적(㎡) |
| 산 업 시 설 | 82 | 319,496.9 | 4 | 19,468.2 |
| 지 원 시 설 | 1 | 9,423.5 | | |
| 주 차 장 | 3 | 3,086.8 | | |
| 합 계 | 86 | 332,007.2 | 4 | 19,468.2 |

※ 획지수에 따른 입주업체수이며, 분양과정에서 획지의 분할·합병이 가능함

## 마. 입주 우선순위

1) 산업시설구역

- ㅇ 1순위 : 실수요출자기업, 인천광역시·사업시행자와 MOU 체결기업, 사업시행자의 입주추천을 받은 기업, 입주면적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 ㅇ 2순위 : 분양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중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기업
- ㅇ 3순위 : 1·2순위 협력기업, 기타 입주희망기업

※ 입주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2) 지원시설구역 및 주차장

ㅇ감정가격 또는 경쟁입찰 낙찰가격 순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바.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

ㅇ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ㅇ법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6개월간의 시정명령을 거쳐 환수할 수 있음

ㅇ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기타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 등 분양용지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 본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서에 의함

2) 환경관리

ㅇ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강화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ㅇ환경오염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ㅇ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저감·방지시설 설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조치

ㅇ산업단지내 공원과 차단녹지를 설치하여 소음 등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와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3) 안전관리

ㅇ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실시

ㅇ입주업체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위험시설을 사용·설치할 때에는 관계 법령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

ㅇ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강화군 관내 파출소, 소방

서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계 구축

ㅇ 산업단지 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발생 감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4) 기반시설 지원

ㅇ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LNG,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5) 입주업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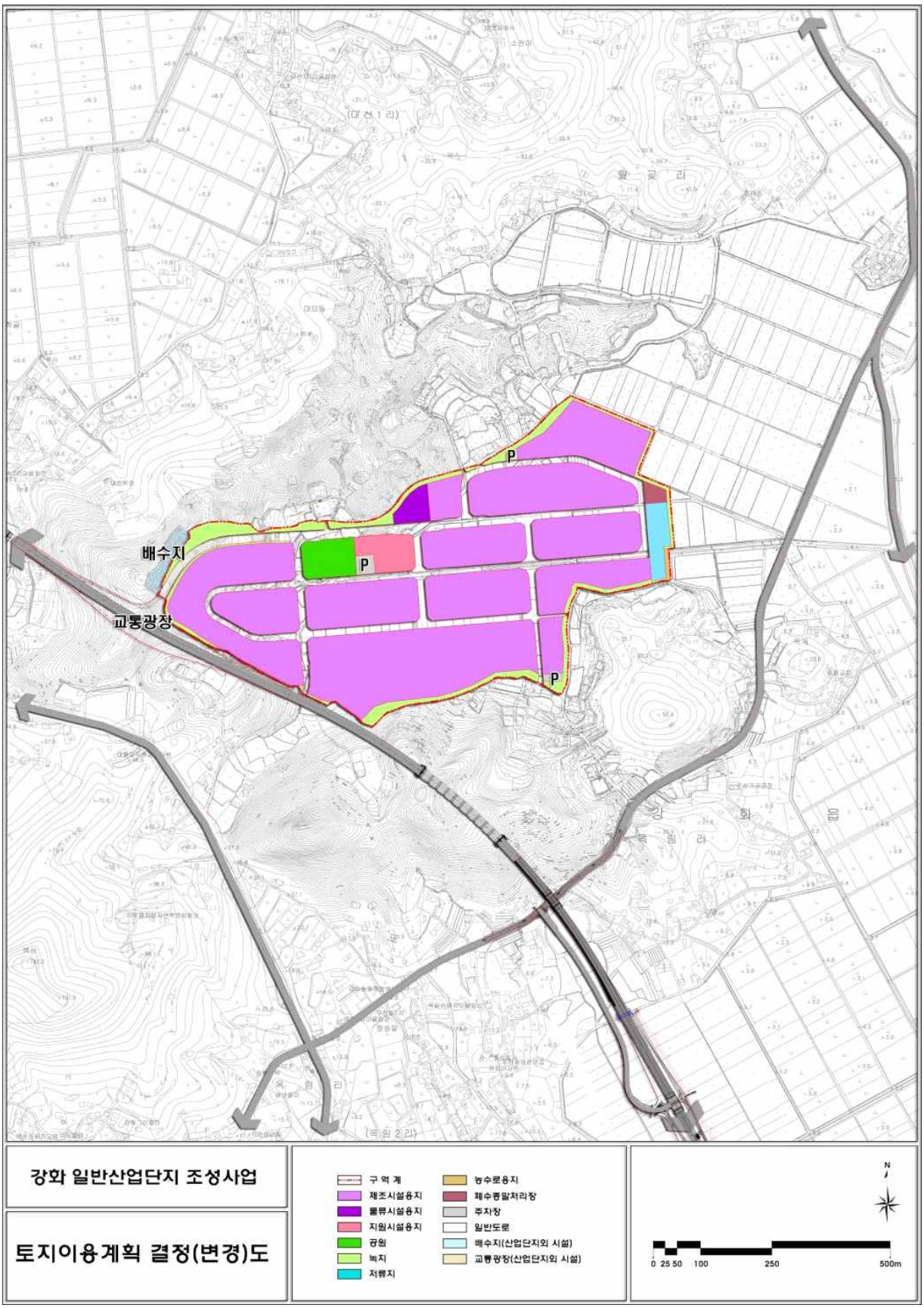
ㅇ 신속한 민원 처리(입주계약, 공장설립 등)

ㅇ 경영 및 생산활동 지원(시책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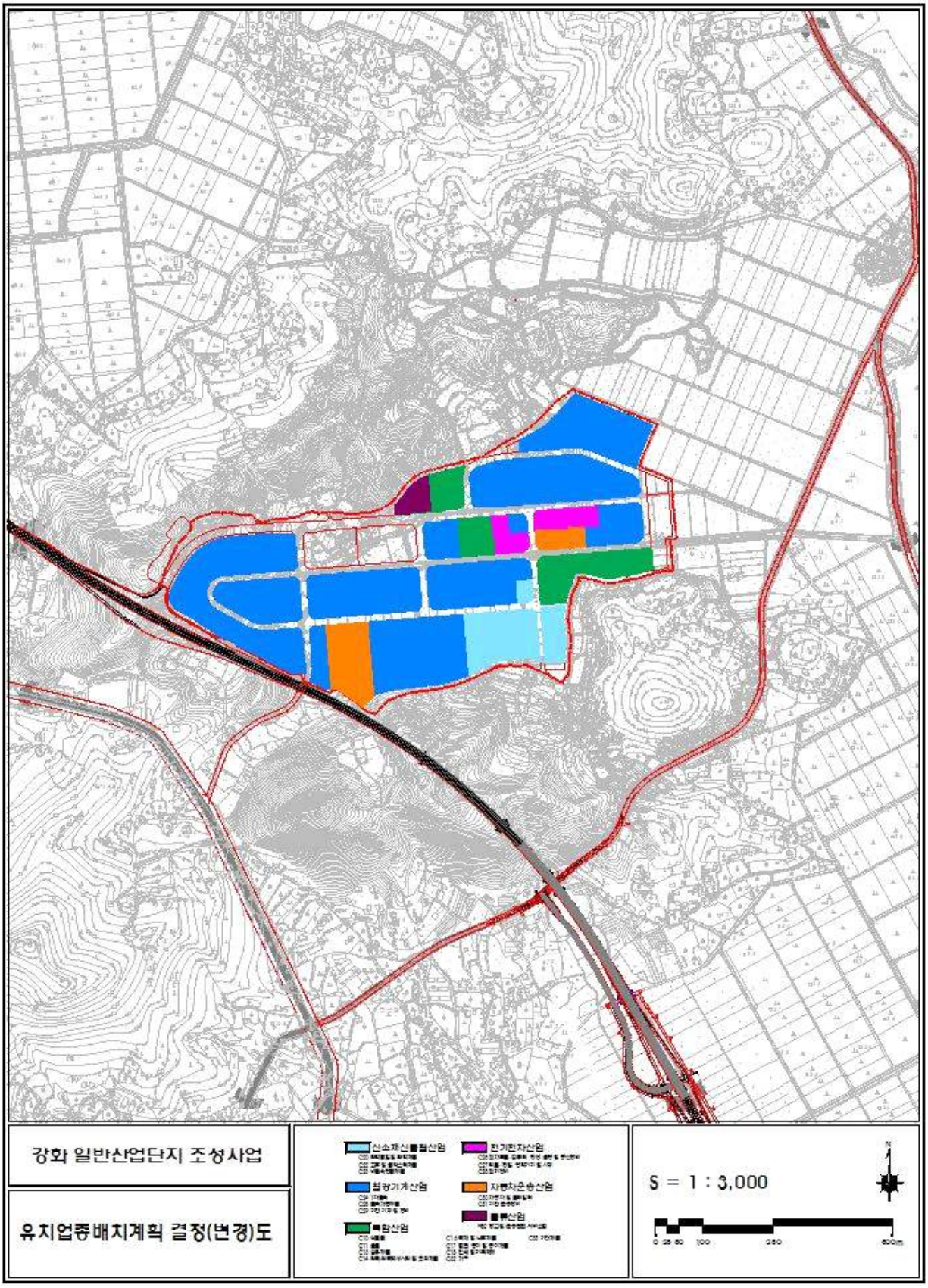
## 사. 기 타

-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른다.

붙임 1. 강화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 붙임 2. 강화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93호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02호, 2015.05.0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 8. 29.

**인 천 광 역 시 장**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서구 경서동 689번지)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중소기업체를 이전 집단화시켜 중소기업전문단지를 조성하여 관련산업의 공업기반을 구축하고

○ 관련기업의 협업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효과 등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며

○ 친환경 업종을 집단 이전화하여 도시환경개선에도 기여토록 함

다. 추진경위

○ 1990.10.14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안)수립 및 동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녹지지역→공업지역)

○ 1991.07.20 : 도시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건설부 고시 제410호, 면적 480,000㎡)

○ 1992.04.14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승인 신청 (건설부)

○ 1992.07.29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승인 (건설부)

○ 1992.08.19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고시(인천시 고시 1992-137호)

○ 1992.12.23 :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

○ 1993.02.08 : 공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시행자 - 인천주물지방공단관리공단)

○ 1993.06.12 :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 1993.09.01 : 공업단지 조성사업 착공

○ 1995.12.29 : 공단개발 사업 준공

○ 1999.03.22 : 산업단지 명칭 변경(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라. 분양현황

(단위 : ㎡)

| 구 분 | 총 면 적 | 분 양 가 능 면 적 | | | | 조성기간 | 조성기관 |
|---|---|---|---|---|---|---|---|
| | | 분 양 | 조 성 현 황 | | | | |
| | | | 조 성 | 미조성 | 소 계 | | |
| 산업시설 | 770,222.9 | 761,858.6 | 770,222.9 | - | 770,222.9 | | |
| 지원시설 | 21,795.3 | 16,048.6ㄱ | 21,795.3 | - | 21,795.3 | '93.9.1 | 인천서부 |
| 공공시설 | 117,370.3 | - | 117,370.3 | - | 117,370.3 | ~ | 지방산업단지 |
| 녹지구역 | 29,236 | - | 29,236 | - | 29,236 | '95.12.29 | 관리공단 |
| 계 | 938,624.5 | 777,907.2 | 938,624.5 | - | 938,624.5 | | |

마. 입주현황

| 구 분 | 입주업체수 (개소) | | | 면 적 (㎡) | | | 비고 |
|---|---|---|---|---|---|---|---|
| | 계 | 제조업 | 기타 | 계 | 제조업 | 기타 | |
| 2016. 7. 현재 | 213 | 212 | 1 | 770,222.9 | 748,841.8 | 21,381.1 | |
| 계 | 213 | 212 | 1 | 770,222.9 | 748,841.8 | 21,381.1 | |

바. 입지여건

○ 항 만 : 인천항 이용

○ 교 통 : 경인고속도로 접합 (6㎞, 15분)

○ 용 수 : 인천광역시에서 공급 (상수도 2,500㎥/일)

○ 전 력 : 변전소 설치 (154,000㎾/H)

○ 통 신 : 한국통신공사에서 공급

2)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가. 관리 기본 방향

○ 인천 및 수도권내 이전대상 기업의 우선 입주 및 이전공장의 조기 안정지원

○ 환경오염물질 업종의 제한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로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

○ 관련기업의 협업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재력 강화 등 기업의 집적 이익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

○ 입주대상 업종

| 유치업종(1군) | 연관업종(2군) |
|---|---|
|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전기장비제조업(28),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26)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가구제조업(32), 기타제품제조업(33) |

- 상기 입주대상 업종이라 할지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유발업종은 관리기관에서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종과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상기 업종 이외의 업종이라 할지라도 관리기관에서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입주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양도·양수, 임대·차 등에 의한 신규입주자에 한한다.
- 기존에 입주한 업체가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없다.

○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의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주대상 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단,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공장(업종 및 시설)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지원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이 있는 자

○ 사후관리계획

-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을 준수 토록 관리
-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사항의 변경 또는 신규업체가 발생 하였을 때는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 총 면 적 | 산업시설 구역 | 지원시설 구역 | 공공 시설구역 | 녹지구역 |
|---|---|---|---|---|
| 938,624.5 | 770,222.9 | 21,795.3 | 117,370.3 | 29,236 |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

| 산업시설구역(계) | 공장시설용도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복합용도<br>(공장및물류시설용도) |
|---|---|---|---|
| 770,222.9 | 732,567.6 | 6,270.1 | 31,385.2 |

○ 구획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공장시설용도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폐주물사 재생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기타(공장 및 물류시설용도) : 공장시설 용도와 보관 및 창고업, 하역,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

- 지원시설 구역
· 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공공시설 구역 : 공공기관의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 구획 : 붙임 참조

라.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

(단위 : 개소, ㎡)

| 구분 / 업종별 | 2016. 7. 현재 | |
|---|---|---|
| | 업체수 | 면 적 |
| 계 | 203 | 770,222.9 |
| 목 재 제 지 | 4 | 6,777.9 |
| 석 유 화 학 | 2 | 3,655.05 |
| 전 기 전 자 | 12 | 115,064.1 |
| 비 금 속 광 물 | 4 | 18,247.61 |
| 1 차 금 속 | 42 | 194,386.0 |
| 조 립 금 속 | 19 | 31,818.1 |
| 기 계 장 비 | 69 | 192,134.2 |
| 기 타 | 14 | 46,120.64 |
| 비 제 조 업 | 37 | 162,019.3 |

○ 배치기준
- 환경적 측면 고려
- 관리기관은 입주수요에 따라 배치계획의 일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5조 제2항에 의한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 변경할 수 있음

마. 산업용지 분할

○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 기준면적은 660$m^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전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분할도면을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바. 지원시설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변전소, 관리공단, 주물조합,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정비소

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 부지규모 11,405.3㎡, 처리규모 4,537$m^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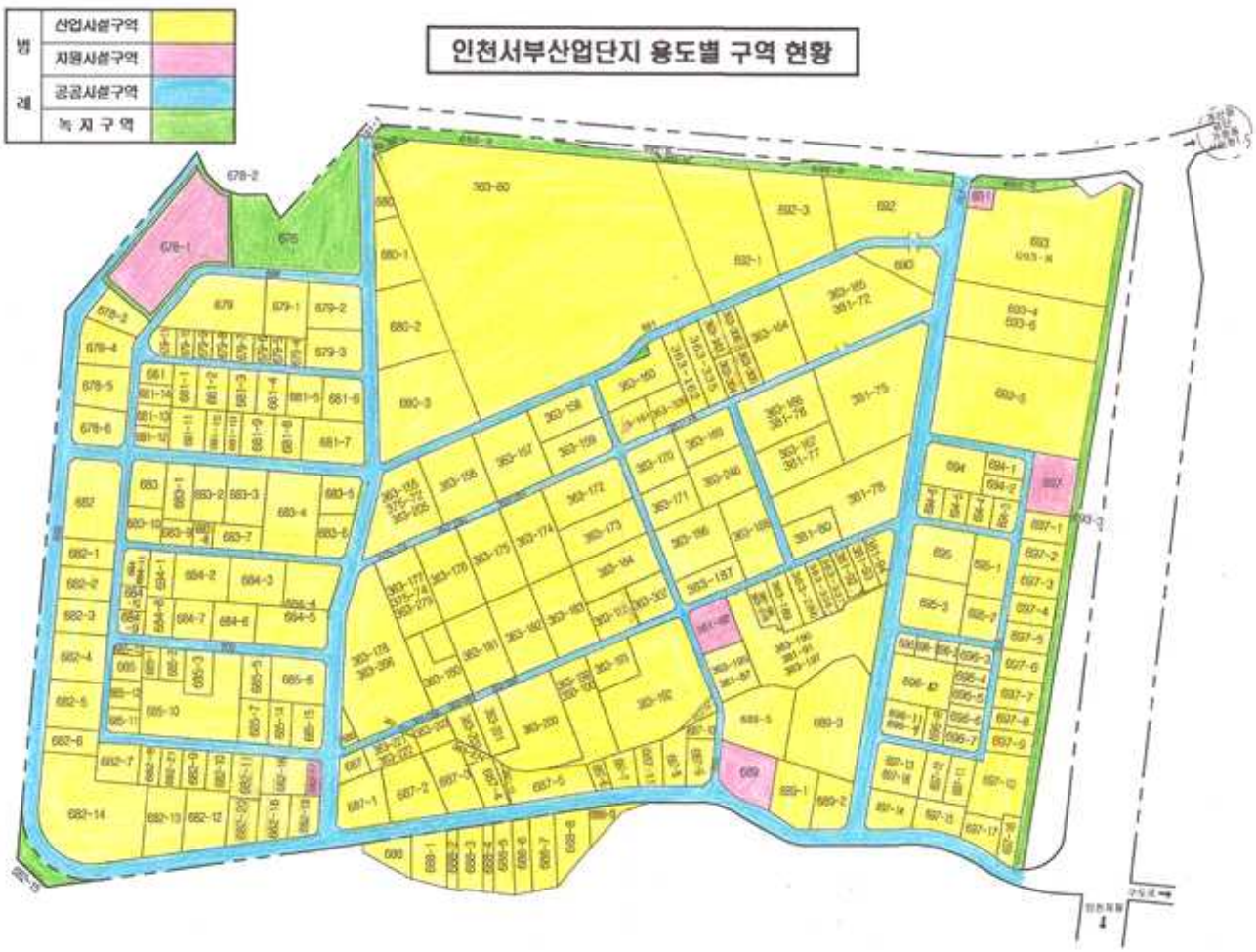
○ 변전소 설치 : 부지규모 3,637㎡, 전압 154㎸

○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정비소 : 부지규모 1,566.8㎡

○ 관리공단 : 부지규모 3,318.2㎡

○ 주물조합 : 부지규모 1,868.0㎡

붙임 :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현황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 - 195호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12, 320(2015. 11.30.)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92) 및 남구 도시창생과(☎ 032)880-450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6. 8. 29

## 인 천 광 역 시 장

### Ⅰ. 개발계획(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면적 : 881,954.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모델 제시
   ○ 인천대학교 이전 전략계획 및 청운대 입지를 통한 교육인프라 개선
   ○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사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6. 5. 29 ~ 2016. 12. 31
- 변경 : 2006. 5. 29 ~ 2017. 12. 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구 분 |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 기정 | 증감 | 변경 | | |
| 총 계 | | 881,954.3 | - | 881,954.3 | 100.0 | |
| 주거용지 | 소 계 | 189,574.7 | - | 189,574.7 | 21.5 | |
| | 공동주택 | 160,465.9 | - | 160,465.9 | 18.2 | |
| | 단독주택 | 4,401.6 | - | 4,401.6 | 0.5 | |
| | 준주거시설 | 24,707.2 | - | 24,707.2 | 2.8 | 근린생활시설 |
| 상업용지 | 소 계 | 52,962.1 | - | 52,962.1 | 6.0 | |
| | 일반상업 | 52,962.1 | - | 52,962.1 | 6.0 | |
| 유통시설용지 | 소 계 | 37,359.6 | - | 37,359.6 | 4.2 | |
| | 물류·유통시설 | 37,359.6 | - | 37,359.6 | 4.2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소 계 | 595,533.6 | - | 595,533.6 | 67.6 | |
| | 학 교 | 325,150.1 | - | 325,150.1 | 36.9 | 대학교(2개소)<br>초교(1개소)<br>,고교(1개소), 유치원(2개소) |
| | 노유자시설 | 495.8 | - | 495.8 | 0.1 | 어린이집(1개소) |
| | 공 원 | 58,395.8 | - | 58,395.8 | 6.6 | 6개소 |
| | 녹 지 | 35,036.9 | - | 35,036.9 | 4.0 | |
| | 공공청사 | 32,582.2 | - | 32,582.2 | 3.7 | 5개소 |
| | 주 차 장 | 6,885.0 | - | 6,885.0 | 0.8 | 5개소 |
| | 문화시설 | | - | | | |
| | 광 장 | 4,512.9 | - | 4,512.9 | 0.5 | |
| | 도 로 | 132,474.9 | - | 132,474.9 | 15.0 | |
| | 유 수 지 | (3,500.0) | 증)492 | (3,992) | (0.5) | 저류시설<br>(공원과 중복결정) |
| 기타시설용지 | 소 계 | 6,524.3 | - | 6,524.3 | 0.7 | |
| | 주 유 소 | 912.2 | - | 912.2 | 0.1 | 1개소 |
| | 종교용지 | 1,869.2 | - | 1,869.2 | 0.2 | 2개소 |
| | 업무시설 | 3,742.9 | - | 3,742.9 | 0.4 | |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생략)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92)

남 구 도시창생과(☎ 032)880-4509)

10.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1(관련도면 게재생략)

## Ⅱ.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모델 제시

○ 인천대학교 이전 전략계획을 통한 교육인프라 개선

○ 주변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면 적 : 881,954.3㎡

4.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사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6. 5. 29 ~ 2016. 12. 31

○ 변경 : 2006. 5. 29 ~ 2017. 12. 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 별첨1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변경없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92)

남 구 도시창생과(☎ 032)880-4509)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게재생략)

10.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 게재생략

○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 : 게재생략

1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12. 지형도면 : 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게재생략)

## [별첨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 구 분 | | 면적(㎡) | | | 구성비(%) | 비고 |
|---|---|---|---|---|---|---|
|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 881,954.3 | - | 881,954.3 | 1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782,344.4 | - | 782,344.4 | 88.7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02,552.6 | - | 702,552.6 | 79.7 | |
| | 준주거지역 | 79,791.8 | - | 79,791.8 | 9.0 | |
| 상업지역 | 소 계 | 64,818.8 | - | 64,818.8 | 7.3 | |
| | 일반상업지역 | 64,818.8 | - | 64,818.8 | 7.3 | |
| 녹지지역 | 소 계 | 34,791.1 | - | 34,791.1 | 4.0 | |
| | 자연녹지지역 | 34,791.1 | - | 34,791.1 | 4.0 |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해당사항없음

### 다.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1. 도시개발구역 지정

■ 도시개발사업구역 결정조서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도화 도시개발구역 | 남구 도화동 43-7번지일원 | 881,954.3 | - | 881,954.3 |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881,954.3 | - | 881,954.3 | |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 류별 | 합 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계 | 30<br>(30) | 21,593<br>(7,833) | 526,341<br>(151,553) | 3<br>(3) | 512<br>(512) | 11,221<br>(11,221) | 15<br>(15) | 13,272<br>(3,821) | 385,559<br>(91,799) | 13<br>(13) | 7,809<br>(3,500) | 176,445<br>(67,902) |
| 대로 | 8<br>(8) | 18,352<br>(4,691) | 486,303<br>(112,703) | - | - | - | 5<br>(5) | 12,218<br>(2,767) | 329,886<br>(63,641) | 3<br>(3) | 6,134<br>(1,924) | 156,417<br>(49,062) |
| 중로 | 11<br>(11) | 2,200<br>(2,101) | 31,656<br>(30,468) | 2<br>(2) | 486<br>(486) | 10,935<br>(10,935) | 1<br>(1) | 51<br>(51) | 765<br>(765) | 8<br>(8) | 1,663<br>(1,564) | 19,956<br>(18,768) |
| 소로 | 11<br>(11) | 1,041<br>(1,041) | 8,382<br>(8,382) | 1<br>(1) | 26<br>(26) | 286<br>(286) | 8<br>(8) | 1,003<br>(1,003) | 8,024<br>(8,024) | 2<br>(2) | 12<br>(12) | 72<br>(72) |

※ 주: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 장<br>(m) | 기 점 | 종 점 | 사 용<br>형 태 | 주 요<br>경과지 | 최 초<br>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 | | | | | | |
| 기정 | 대로 | 2 | 1 | 30~33 | 주간선<br>도 로 | 2,000<br>(737) | 대 2-3 | 광 2-4 | 일반<br>도로 | 도화도시개<br>발구역 | 건고45<br>(71.1.29) | |
| 변경 | 대로 | 2 | 1 | 30~33 | 주간선<br>도 로 | 2,000<br>(737) | 대 2-3 | 광 2-4 | 일반<br>도로 | 도화도시개<br>발구역 | | |
| 기정 | 대로 | 2 | 3 | 30~38 | 주간선<br>도 로 | 1,500<br>(462) | 광 3-9 | 대 2-32 | 일반<br>도로 | 도화도시개<br>발구역 | 건고54<br>(70.2.9) | |
| 변경 | 대로 | 2 | 3 | 30~38 | 주간선<br>도 로 | 1,500<br>(462) | 광 3-9 | 대 2-32 | 일반<br>도로 | 도화도시개<br>발구역 | | |
| 기정 | 대로 | 2 | 32 | 30~38 | 주간선<br>도 로 | 8,100<br>(609) | 대 3-1 | 부천시<br>경계 | 일반<br>도로 | 가좌IC | 건고54<br>(70.2.9) | |
| 변경 | 대로 | 2 | 32 | 30~38 | 주간선<br>도 로 | 8,100<br>(609) | 대 3-1 | 부천시<br>경계 | 일반<br>도로 | 가좌IC | | |
| 기정 | 대로 | 2 | 109 | 30~33 | 보조<br>도로 | 341 | 대 2-3 | 대 2-32 | 일반<br>도로 | - | 인고<br>2009-385<br>(09.12.14) | |
| 변경 | 대로 | 2 | 109 | 30~33 | 보조<br>도로 | 341 | 대 2-3 | 대 2-32 | 일반<br>도로 | - | | |
| 기정 | 대로 | 2 | 92 | 29~35 | 집산<br>도로 | 618 | 대 2-3 | 대3-9 | 일반<br>도로 | - | 인고<br>2009-385<br>(09.12.14) | |
| 변경 | 대로 | 2 | 92 | 29~35 | 집산<br>도로 | 618 | 대 2-3 | 대3-9 | 일반<br>도로 | - | | |
| 기정 | 대로 | 3 | 1 | 25~36 | 보조<br>간선 | 4,921<br>(711) | 29호광장 | 대 2-5 | 일반<br>도로 | - | 건고54<br>(70.2.9) | |
| 변경 | 대로 | 3 | 1 | 25~36 | 보조<br>간선 | 4,921<br>(711) | 29호광장 | 대 2-5 | 일반<br>도로 | - | | |
| 기정 | 대로 | 3 | 6 | 25.5 | 집산<br>도로 | 115 | 대 2-32 | 대 3-9 | 일반<br>도로 | - | 인고<br>2009-385<br>(09.12.14) | |
| 변경 | 대로 | 3 | 6 | 25.5 | 집산<br>도로 | 115 | 대 2-32 | 대 3-9 | 일반<br>도로 | - | | |
| 기정 | 대로 | 3 | 9 | 25.5 | 집산<br>도로 | 1,098 | 대 2-3 | 대 3-1 | 일반<br>도로 | - | 인고<br>2009-385<br>(09.12.14) | |
| 변경 | 대로 | 3 | 9 | 25.5 | 집산<br>도로 | 1,098 | 대 2-3 | 대 3-1 | 일반<br>도로 | - |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144 | 22.5 | 집산 도로 | 309 | 대 3-9 | 대 2-92 | 일반 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변경 | 중로 | 1 | 144 | 22.5 | 집산 도로 | 309 | 대 3-9 | 대 2-92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중로 | 1 | 도화-a | 22.5 | 집산 도로 | 177 | 대 2-1 | 중 3-317 | 일반 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변경 | 중로 | 1 | 도화-a | 22.5 | 집산 도로 | 177 | 대 2-1 | 중 3-317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중로 | 2 | 800 | 15 | 집산 도로 | 51 | 중3-318 | 대 2-3 | 일반 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기정 | 중로 | 3 | 240 | 12 | 국지 도로 | 122 (23) | 중 2-800 | 중 3-5 | 일반 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기정 | 중로 | 3 | 317 | 13-15 | 집산 도로 | 505 | 대 2-1 | 중 3-318 | 일반 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변경 | 중로 | 3 | 317 | 13-20 | 집산 도로 | 505 | 대 2-1 | 중 3-318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중로 | 3 | 318 | 12 | 국지 도로 | 129 | 소1-108 | 중 3-317 | 일반 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변경 | 중로 | 3 | 318 | 12 | 국지 도로 | 129 | 소1-108 | 중 3-317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중로 | 3 | 319 | 12 | 집산 도로 | 62 | 소2-74 | 중 1-477 | 일반 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변경 | 중로 | 3 | 319 | 12 | 집산 도로 | 62 | 소2-74 | 중 1-477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중로 | 3 | 243 | 13 | 집산 도로 | 211 | 대 2-3 | 중 2-799 | 일반 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기정 | 중로 | 3 | 244 | 14.5 | 집산 도로 | 430 | 중3-도화-a | 대 2-92 | 일반 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기정 | 중로 | 3 | 도화-a | 14 | 특수 도로 | 141 | 대 2-3 | 중3-244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변경 | 중로 | 3 | 도화-a | 14 | 특수 도로 | 141 | 대 2-3 | 중3-244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기정 | 중로 | 3 | 도화-b | 14 | 집산 도로 | 63 | 소 2-74 | 대 3-9 | 일반 도로 | - | 인고 2015-320 (15.11.30) | |
| 기정 | 소로 | 1 | 도화-a | 11 | 집산 도로 | 26 | 소 2-73 | 대 2-92 | 일반 도로 | - | 인고 2015-320 (15.11.30) | |
| 변경 | 소로 | 1 | 도화-a | 11 | 집산 도로 | 26 | 소 2-73 | 대 2-92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72 | 8 | 국지 도로 | 211 | 대 3-9 | 중 1-144 | 일반 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변경 | 소로 | 2 | 72 | 8 | 국지 도로 | 211 | 대 3-9 | 중 1-144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73 | 8 | 국지 도로 | 178 | 중 1-144 | 소 2-도화-b | 일반 도로 | - | 인고 2015-320 (15.11.30) | |
| 변경 | 소로 | 2 | 73 | 8 | 국지 도로 | 178 | 중 1-144 | 소 2-도화-b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74 | 8 | 국지 도로 | 270 | 대 2-92 | 중 3-도화-b | 일반 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기정 | 소로 | 2 | 75 | 8 | 특수 도로 | 25 | 대 2-92 | 소 2-73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변경 | 소로 | 2 | 75 | 8 | 특수 도로 | 26 | 대 2-92 | 소 2-73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76 | 8 | 특수 도로 | 25 | 대 2-92 | 소 2-72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변경 | 소로 | 2 | 76 | 8 | 특수 도로 | 26 | 대 2-92 | 소 2-72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429 | 8 | 굴지 도로 | 87 | 중 3-31 | 중 3-31 | 일반도로 | - | 인고 2009-385 (09.12.14) | |
| 기정 | 소로 | 2 | 도화-a | 8 | 굴지 도로 | 108 | 소3-도화-a | 중 3-318 | 일반도로 | | 인고 2015-320 (15.11.30) | |
| 변경 | 소로 | 2 | 도화-a | 8 | 굴지 도로 | 108 | 소3-도화-a | 중 3-318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도화-b | 9.5 | 굴지 도로 | 99 | 소 2-73 | 연결녹지3 | 일반도로 | | 인고 2015-320 (15.11.30) | |
| 변경 | 소로 | 2 | 도화-b | 9.5 | 굴지 도로 | 99 | 소 2-73 | 연결녹지3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도화-a | 6 | 특수 도로 | 6 | 중 3-243 | 소 2-도화-a | 보행자 전용도로 | | 인고 2015-320 (15.11.30) | |
| 기정 | 소로 | 3 | 도화-b | 6 | 특수 도로 | 6 | 대 2-32 | 학 4 | 보행자 전용도로 | | 인고 2015-320 (15.11.30)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대로2-1 | | • 좌표점 조정 |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경계 조정 |
| 대로2-3 | | • 좌표점 조정 |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경계 조정 |
| 대로2-32 | | • 오기정정 | • 소로3-도화-b와 노선분리 반영 |
| 대로2-109 | | • 좌표점 조정 |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경계 조정 |
| 대로2-92 | | • 좌표점 조정 |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경계 조정 |
| 대로3-1 | | • 좌표점 조정 |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경계 조정 |
| 대로3-6 | | • 좌표점 조정 |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경계 조정 |
| 대로3-9 | | • 좌표점 조정 |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경계 조정 |
| 중로1-144 | 중로1-144 | • 좌표점 조정 |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경계 조정 |
| 중로1-도화-a | 중로1-도화-a | • 좌표점 조정 |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경계 조정 |
| 중로3-317 | 중로3-317 | • 오기정정<br>- 연장: 317m<br>- 폭원: 13~15m→13~20m | • 도로폭원 오기 정정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 | 6,885.0 | - | 6,885.0 | - | |
| 기정 | 1 | 주차장 | 도화동 844번지 일원 | 873.2 | - | 873.2 | 인고2013-111 (13.7.15) | |
| 변경 | 2 | 주차장 | 도화동 43-12번지일원 | 938.4 | - | 938.4 | 인고2013-111 (13.7.15) | |
| 기정 | 3 | 주차장 | 도화동 140-1번지 일원 | 1,669.3 | - | 1,669.3 | 인고2015-320 (15.11.30) | |
| 변경 | 4 | 주차장 | 도화동 163-2번지 일원 | 2,000.0 | - | 2,000.0 | 인고2013-111 (13.7.15) | |
| 기정 | 5 | 주차장 | 도화동 835-1번지 일원 | 1,404.1 | - | 1,404.1 | 인고2015-320 (15.11.30)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2 | 주차장 | • 좌표조정(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4 | 주차장 | • 좌표조정(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2. 공간시설

### 가)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 | - | 4,512.9 | - | 4,512.9 | - | |
| 기정 | 1 | 광장 | 근린광장 | 도화동 67-8번지 일원 | 4,512.9 | - | 4,512.9 | 인고2013-111 (13.7.15) | |

###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 | - | 58,395.8 | - | 58,395.8 | | |
| 기정 | 1 | 공원 | 근린공원 | 도화동 26-11번지 일원 | 14,609.8 | - | 14,609.8 | - | |
| 변경 | 2 | 공원 | 근린공원 | 도화동 43-3번지 일원 | 20,181.3 | - | 20,181.3 | 인고2013-111 (13.7.15) | |
| 변경 | 1 | 공원 | 어린이공원 | 도화동 797번지 일원 | 3,441.1 | - | 3,441.1 | 인고2013-111 (13.7.15) | |
| 기정 | 2 | 공원 | 어린이공원 | 도화동 64-1번지 일원 | 5,921.5 | - | 5,921.5 | 인고2013-111 (13.7.15) | |
| 기정 | 3 | 공원 | 어린이공원 |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3,644.1 | - | 3,644.1 | 인고2015-320 (15.11.30) | |
| 변경 | 1 | 공원 | 문화공원 |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10,598.0 | - | 10,598.0 | 인고2013-111 (13.7.15) | 저류시설 중복결정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2 | 근린공원 | • 좌표조정 (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1 | 어린이공원 | • 좌표조정 (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1 | 문화공원 | • 좌표조정 (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다)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 | - | 35,036.9 | - | 35,036.8 | - | |
| 기정 | 1 | 녹지 | 완충녹지 | 도화동 33-10번지 일원 | 2,016.4 | - | 2,016.4 | 인고2015-320 (15.11.30) | |
| 변경 | 2 | 녹지 | 완충녹지 | 도화동 832번지 일원 | 2,358.8 | 증)138.5 | 2,497.3 | 인고2013-111 (13.7.15) | |
| 변경 | 3 | 녹지 | 완충녹지 |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618.6 | - | 618.6 | 인고2013-111 (13.7.15) | |
| 기정 | 4 | 녹지 | 완충녹지 | 도화동 800번지 일원 | 1,579.3 | - | 1,579.3 | 인고2013-111 (13.7.15) | |
| 변경 | 5 | 녹지 | 완충녹지 | 도화동 49-1 번지 일원 | 8,016.0 | - | 8,016.0 | 인고2013-111 (13.7.15) | |
| 변경 | 6 | 녹지 | 완충녹지 | 도화동 838번지 일원 | 2,390.0 | 감)138.5 | 2,251.5 | 인고2015-320 (15.11.30) | |
| 변경 | 1 | 녹지 | 연결녹지 | 도화동 45-1번지 일원 | 1,764.6 | - | 1,764.6 | 인고2013-111 (13.7.15) | |
| 변경 | 2 | 녹지 | 연결녹지 | 도화동 43-7번지 일원 | 7,496.1 | - | 7,496.1 | 인고2013-111 (13.7.15) | |
| 변경 | 3 | 녹지 | 연결녹지 | 도화동 62-15 번지 일원 | 4,176.9 | - | 4,176.9 | 인고2013-111 (13.7.15) | |
| 변경 | 4 | 녹지 | 연결녹지 | 도화동 113-11번지 일원 | 4,164.3 | - | 4,164.3 | 인고2013-111 (13.7.15) | |
| 기정 | 1 | 녹지 | 경관녹지 | 도화동 47-29번지 일원 | 455.9 | - | 455.9 | 인고2013-111 (13.7.15)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2 | 녹지 | • 완충녹지2 면적 변경 | • 획지분할에 따른 일부 완충녹지 면적 변경 |
| 3 | 녹지 | • 완충녹지3 좌표조정 (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5 | 녹지 | • 완충녹지5 좌표조정 (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6 | 녹지 | • 완충녹지6 면적 변경 | • 획지분할에 따른 일부 완충녹지 면적 변경 |
| 1 | 녹지 | • 연결녹지1 좌표조정 (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2 | 녹지 | • 연결녹지2 좌표조정 (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3 | 녹지 | • 연결녹지3 좌표조정 (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4 | 녹지 | • 연결녹지4 좌표조정 (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3. 공공•문화체육시설

### 가) 학교

■ 학교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 | - | 325,150.1 | | 325,150.1 | - | |
| 기정 | 1 | 학교 | 대학 | 도화동 38-3번지일원 | 221,489.0 | | 221,489.0 | '02.5.10 | 인천대 |
| 기정 | 2 | 학교 | 대학 | 도화동 174-5번지일원 | 57,500.0 | | 57,500.0 | 인고2012-238 (12.09.10) | 청운대 |
| 기정 | 3 | 학교 | 초등학교 | 도화동 47-30번지일원 | 18,932.5 | | 18,932.5 | 인교위 8 (84.2.2) | 서화초교 |
| 기정 | 4 | 학교 | 고등학교 | 도화동 43-24번지일원 | 15,269.0 | | 15,269.0 | 인고2009-385 (09.12.14) | 비즈니스고 |
| 변경 | 5 | 학교 | 유치원 | 도화동 44-2번지일원 | 969.4 | | 969.4 | 인고2013-111 (13.7.15) | |
| 변경 | 6 | 학교 | 유치원 | 도화동 43-7번지일원 | 990.0 | | 990.0 | 인고2013-111 (13.7.15) | |
| 기정 | 7 | 학교 | 특수학교 | 도화동 26-11번지일원 | 10,000.2 | | 10,000.2 | 인고2015-320 (15.11.30) | |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5 | 학교 | • 유치원5 좌표조정 (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6 | 학교 | • 유치원6 좌표조정 (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나)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세부시설명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 | - | 32,582.2 | | 32,582.2 | - | |
| 기정 | 1 | 공공청사 | - | 도화동 805번지 일원 | 1,150.4 | | 1,150.4 | 인고2009-385 (09.12.14) | 쑥골어린이 도서관 |
| 기정 | 2 | 공공청사 | - | 도화동 64-7번지일원 | 1,131.3 | | 1,131.3 | 인고2009-385 (09.12.14) | 도화2,3동 주민센터 |
| 변경 | 3 | 공공청사 | - | 도화동 77-7번지 일원 | 9,000.0 | | 9,000.0 | 인고2012-8 (12.1.16) | 행정타운 및 JST |
| 변경 | 4 | 공공청사 | - | 도화동 76-4번지 일원 | 20,000.2 | | 20,000.2 | 인고2013-173 (13.11.4) | 인천지방합동청사 |
| 변경 | 5 | 공공청사 | - | 도화동 156-1번지 일원 | 1,300.3 | - | 1,300.3 | 인고2015-320 (15.11.30) | 도화 지구대 |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3 | 공공청사 | •공공청사3 좌표조정<br>(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4 | 공공청사 | •공공청사4 좌표조정<br>(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5 | 공공청사 | •공공청사5 좌표조정<br>(면적 및 위치변경 없음 | • 지구내 측량결과 반영(좌표이동) |

## 4. 방재시설(변경)

### 가) 유수지

■ 저류시설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 | - | 3,500.0 | 증)492 | 3,992 | - | |
| 변경 | 1 | 유수지 | 저류시설 | 도화동 806-2 번지 일원 | 3,500.0 | 증)492 | 3,992 | 인고2009-385 (09.12.14) | 문화공원 1과 중복결정 |

■ 저류시설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1 | 유수지 | • 면적변경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자상형으로 조성하고 유수지 면적 및 저류용량 변경 |

##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변경)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 획지 | | | | | | 비고 | |
|---|---|---|---|---|---|---|---|---|---|---|---|
| | | | | 번호 | | 위치 | | 면적(㎡)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1 | 42,108.4 | 42,108.4 | ① | ①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33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33번지 일원 | 9,249.4 | 13,985.1 | 물류·유통시설 | 물류·유통시설 |
| | | | | ② | ②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34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34번지 일원 | 14,125.1 | 7,203.5 | 물류·유통시설 | 물류·유통시설 |
| | | | | ③ | ③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35-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35-1번지 일원 | 13,985.1 | 9,159.8 | 물류·유통시설 | 물류·유통시설 |
| | | | | | ④ |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37번지 일원 | | 7,011.2 | | 물류·유통시설 |
| | | | | ④ | ⑤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35-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35-1번지 일원 | 2,358.8 | 2,497.3 | 완충녹지 | 완충녹지 |
| | | | | ⑤ | ⑥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72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72지 일원 | 1,025.0 | 923.4 | 완충녹지 | 완충녹지 |
| | | | | ⑥ | ⑦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37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37번지 일원 | 1,365.0 | 875.2 | 완충녹지 | 완충녹지 |
| | | | | | ⑧ |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36-1번지 일원 | | 452.9 | | 완충녹지 |
| - | 2 | 36,406.5 | 36,406.5 | ① | ①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10,598.0 | 10,598.0 | 문화공원(저류시설과 중복결정) | 문화공원(저류시설과 중복결정) |
| | | | | ② | ②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618.6 | 618.6 | 완충녹지 | 완충녹지 |
| | | | | ③ | ③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16,774.1 | 16,774.1 | 공동주택용지(국민임대) | 공동주택용지(국민임대) |
| | | | | ④ | ④ | 인천시 남구 도화동 798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798번지 일원 | 1,579.3 | 1,579.3 | 완충녹지 | 완충녹지 |
| | | | | ⑤ | ⑤ | 인천시 남구 도화동 788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788번지 일원 | 3,441.1 | 3,441.1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 | | | | ⑥ | ⑥ | 인천시 남구 도화동 787-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787-1번지 일원 | 1,079.1 | 1,079.1 | 종교시설 | 종교시설 |
| | | | | ⑦ | ⑦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912.2 | 912.2 | 주유소 | 주유소 |
| | | | | ⑧ | ⑧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1,404.1 | 1,404.1 | 주차장 | 주차장 |
| - | 3 | 1,826.4 | 1,826.4 | ① | ①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334.6 | 334.6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 | ② | ②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340.9 | 340.9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 | ③ | ③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301.3 | 301.3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 | ④ | ④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299.9 | 299.9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 | ⑤ | ⑤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279.0 | 279.0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 | ⑥ | ⑥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270.7 | 270.7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4 | 2,575.2 | 2,575.2 | ① | ①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295.2 | 295.2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 | ② | ②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301.5 | 301.5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 | ③ | ③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322.3 | 322.3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 | ④ | ④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257.0 | 257.0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 | ⑤ | ⑤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248.2 | 248.2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 | ⑥ | ⑥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261.9 | 261.9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 | ⑦ | ⑦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303.5 | 303.5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 획지 | | |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번호 | | 위치 | | 면적(㎡) | |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4 | 2,575.2 | 2,575.2 | 8 | 8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290.4 | 290.4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 | 9 | 9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295.2 | 295.2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 | 5 | 873.2 | 873.2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5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51번지 일원 | 873.2 | 873.2 | 주차장 | 주차장 |
| - | 6 | 6,181.4 | 6,181.4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46-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46-1번지 일원 | 991.5 | 991.5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2 | 2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51-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51-2번지 일원 | 641.0 | 641.0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3 | 3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50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50번지 일원 | 660.5 | 660.5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4 | 4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49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49번지 일원 | 658.1 | 658.1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5 | 5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47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47번지 일원 | 1,014.9 | 1,014.9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6 | 6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5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5번지 일원 | 1,150.4 | 1,150.4 | 공공청사(숙골어린이도서관) | 공공청사(숙골어린이도서관) |
| | | | | 7 | 7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4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4번지 일원 | 1,065.0 | 1,065.0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7 | 92,148.8 | 92,148.8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9-7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9-7번지 일원 | 18,378.2 | 18,378.2 | 공동주택용지(공공임대) | 공동주택용지(공공임대) |
| | | | | 2 | 2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0-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0-1번지 일원 | 46,308.8 | 46,308.8 |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
| | | | | 3 | 3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2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21번지 일원 | 6,681.6 | 6,681.6 | 완충녹지 | 완충녹지 |
| | | | | 4 | 4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4,176.9 | 4,176.9 | 연결녹지 | 연결녹지 |
| | | | | 5 | 5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24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24번지 일원 | 15,269.0 | 15,269.0 | 학교(인천비즈니스고) | 학교(인천비즈니스고) |
| | | | | 6 | 6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2-17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2-17번지 일원 | 662.1 | 662.1 | 완충녹지 | 완충녹지 |
| | | | | 7 | 7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3-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3-2번지 일원 | 672.2 | 672.2 | 완충녹지 | 완충녹지 |
| - | 8 | 94,139.5 | 94,139.5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5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56-2번지 일원 | 3,742.9 | 3,742.9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 | | | | 2 | 2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1-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1-1번지 일원 | 2,000.0 | 2,000.0 | 주차장 | 주차장 |
| | | | | 3 | 3 | 인천시 남구 도화동 217-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217-1번지 일원 | 9,000.0 | 9,000.0 | 공공청사(행정타운 및 JST) | 공공청사(행정타운 및 JST) |
| | | | | 4 | 4 | 인천시 남구 도화동 76-4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76-4번지 일원 | 20,000.2 | 20,000.2 | 공공청사(인천지방합동청사) | 공공청사(인천지방합동청사) |
| | | | | 5 | 5 | 인천시 남구 도화동 72-2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72-21번지 일원 | 16,406.8 | 16,406.8 | 상업시설(주거복합) | 상업시설(주거복합) |
| | | | | 6 | 6 | 인천시 남구 도화동 255-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255-1번지 일원 | 4,512.9 | 4,512.9 | 광장 | 광장 |
| | | | | 7 | 7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7-8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7-8번지 일원 | 21,752.9 | 36,555.3 | 상업시설(주거복합) | 상업시설(주거복합) |
| | | | | 8 |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0-1번지 일원 | | 14,802.4 | | 상업시설(주거복합) | |
| | | | | 9 | 9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3-1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3-11번지 일원 | 1,131.3 | 1,131.3 | 공공청사(도화2·3동 주민센터) | 공공청사(도화2·3동 주민센터) |
| | | | | 10 | 10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3-17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3-17번지 일원 | 790.1 | 790.1 | 종교시설 | 종교시설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 획지 | | |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번호 | | 위치 | | 면적(㎡) | |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9 | 57,500.0 | 57,500.0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74-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74-1번지 일원 | 57,500.0 | 57,500.0 | 학교 (청운대) | 학교 (청운대) |
| - | 10 | 221,489.0 | 221,489.0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96-3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96-3번지 일원 | 221,489.0 | 221,489.0 | 학교 (인천대) | 학교 (인천대) |
| - | 11 | 7,728.3 | 7,728.3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8-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8-1번지 일원 | 660.7 | 660.7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2 | 2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6-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6-1번지 일원 | 646.1 | 646.1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3 | 3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5-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5-2번지 일원 | 646.1 | 646.1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4 | 4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55-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55-1번지 일원 | 646.1 | 646.1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5 | 5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57-4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57-4번지 일원 | 1,172.6 | 1,172.6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6 | 6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7-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7-2번지 일원 | 657.5 | 657.5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7 | 7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7-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7-1번지 일원 | 645.6 | 645.6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8 | 8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6-10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6-10번지 일원 | 646.5 | 646.5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9 | 9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5-6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5-6번지 일원 | 706.8 | 706.8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10 | 10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56-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56-1번지 일원 | 1,300.3 | 1,300.3 | 공공청사 (도화자구대) | 공공청사 (도화자구대) |
| - | 12 | 8,098.2 | 8,098.2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39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39번지 일원 | 1,669.3 | 1,669.3 | 주차장 | 주차장 |
| | | | | 3 | 3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22-36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22-36번지 일원 | 908.8 | 908.8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4 | 4 | 인천시 남구 도화동 37-36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37-36번지 일원 | 1,222.2 | 1,222.2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5 | 5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38-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38-1번지 일원 | 835.9 | 835.9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6 | 6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22-59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22-59번지 일원 | 838.4 | 838.4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7 | 7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22-46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22-46번지 일원 | 1,176.1 | 1,176.1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8 | 8 | 인천시 남구 도화동 37-14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37-14번지 일원 | 1,447.5 | 1,447.5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13 | 1,877.2 | 1,877.2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8-7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8-7번지 일원 | 625.0 | 625.0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2 | 2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8-24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8-24번지 일원 | 625.0 | 625.0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3 | 3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8-16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8-16번지 일원 | 627.2 | 627.2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14 | 2,863.4 | 2,863.4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1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11번지 일원 | 938.4 | 938.4 | 주차장 | 주차장 |
| | | | | 2 | 2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2-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2-1번지 일원 | 650.0 | 650.0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3 | 3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2-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2-1번지 일원 | 650.0 | 650.0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4 | 4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8-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8-1번지 일원 | 625.0 | 625.0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15 | 46,921.4 | 46,921.4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15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15번지 일원 | 21,090.0 | 21,090.0 |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
| | | | | 2 | 2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990.0 | 990.0 | 유치원 | 유치원 |
| | | | | 3 | 3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4-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64-1번지 일원 | 20,181.3 | 20,181.3 | 근린공원 | 근린공원 |
| | | | | 4 | 4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2-9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2-9번지 일원 | 4,164.3 | 4,164.3 | 연결녹지 | 연결녹지 |
| | | | | 5 | 5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495.8 | 495.8 | 노유자시설 | 노유자시설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 획지 | | |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번호 | | 위치 | | 면적(㎡) | |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16 | 1,516.7 | 1,516.7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10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10번지 일원 | 762.7 | 762.7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2 | 2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10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10번지 일원 | 754.0 | 754.0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17 | 2,469.8 | 2,469.8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4-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4-2번지 일원 | 969.4 | 969.4 | 유치원 | 유치원 |
| | | | | 2 | 2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4-4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4-4번지 일원 | 750.2 | 750.2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3 | 3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8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8번지 일원 | 750.2 | 750.2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18 | 73,434.5 | 73,434.5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7-2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7-21번지 일원 | 18,932.5 | 18,932.5 | 학교(서화초등학교) | 학교(서화초등학교) |
| | | | | 2 | 2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7-30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7-30번지 일원 | 5,921.5 | 5,921.5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 | | | | 3 | 3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7,496.1 | 7,496.1 | 연결녹지 | 연결녹지 |
| | | | | 4 | 4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5-1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5-1번지 일원 | 38,863.9 | 38,863.9 |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
| | | | | 5 | 5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5-6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5-6번지 일원 | 1,764.6 | 1,764.6 | 연결녹지 | 연결녹지 |
| | | | | 6 | 6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455.9 | 455.9 | 경관녹지 | 경관녹지 |
| - | 19 | 45,677.2 | 45,677.2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23-16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23-16번지 일원 | 19,050.8 | 19,050.8 | 공동주택용지(국민임대) | 공동주택용지(국민임대) |
| | | | | 2 | 2 | 인천시 남구 도화동 35-3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35-3번지 일원 | 14,609.8 | 14,609.8 | 근린공원 | 근린공원 |
| | | | | 3 | 3 | 인천시 남구 도화동 38-20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38-20번지 일원 | 10,000.2 | 10,000.2 | 학교(특수학교) | 학교(특수학교) |
| | | | | 4 | 4 | 인천시 남구 도화동 33-15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33-15번지 일원 | 2,016.4 | 2,016.4 | 완충녹지 | 완충녹지 |
| - | 20 | 3,644.1 | 3,644.1 | 1 | 1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인천시 남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 3,644.1 | 3,644.1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별첨

##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변경)

### 1)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공동주택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II → 2 | 3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20% 이하 |
| | | | 용 적 률 | | 180% 이하 |
| | | | 높 이 | | 30층 이하 |
| | | | 배 치 | |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br>•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 |
| | | | 형 태 | |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br>•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br>•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br>•어린이 공원 및 문화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계획<br>•(기정)도시형 생활주택과 인접한 공동주택이 급격한 경관변화로 인한 이질적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치와 건축형태 고려<br>•(변경)단독주택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이 급격한 경관변화로 인한 이질적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치와 건축형태 고려<br>•(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Ⅶ → 7 | 1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20% 이하 |
| | | | 용 적 률 | | 250% 이하 |
| | | | 높 이 | | 30층 이하 |
| | | | 배 치 | |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br>•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 |
| | | | 형 태 | |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br>•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br>•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br>•조망통제점(인천교삼거리, 동구구민운동장)에서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인 및 입면부 지붕형태 등 검토 공동주택 심의·자문 시 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 활용)<br>•도로선형에 의해 시각적 민감지역이 형성되는 구간은 탑상형 배치나 랜드마크동으로 설정하여 건축물 입면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br>•Ⅷ-2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형태적 공간적 맥락 형성<br>•(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Ⅶ → 7 | 2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20% 이하 |
| | | | 용 적 률 | | 250% 이하 |
| | | | 높 이 | | 30층 이하 |
| | | | 배 치 | |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br>•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 |
| | | | 형 태 | |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변화 권장<br>•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br>•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br>•조망통제점(인천교삼거리, 동구구민운동장)에서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인 및 입면부 지붕형태 등 검토 공동주택 심의·자문 시 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 활용)<br>•도로선형에 의해 시각적 민감지역이 형성되는 구간은 탑상형 배치나 랜드마크동으로 설정하여 건축물 입면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br>•Ⅶ-1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형태적 공간적 맥락 형성<br>•(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XV → 15 | 1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20% 이하 |
| | | | 용 적 률 | | 230% 이하 |
| | | | 높 이 | | 30층 이하 |
| | | | 배 치 | |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br>•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 |
| | | | 형 태 | |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br>•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br>•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br>•연결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은 필로티 구조를 통해 보행자와의 연계성 고려<br>•공원, 학교와 인접한 곳은 위압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및 건축물 형태 계획<br>•(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XVIII → 18 | 4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20% 이하 |
| | | | 용 적 률 | | 250% 이하 |
| | | | 높 이 | | 30층 이하 |
| | | | 배 치 | |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br>•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 |
| | | | 형 태 | |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br>•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br>•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br>•연결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은 필로티 구조를 통해 보행자와의 연계성 고려<br>•공원, 학교와 인접한 곳은 위압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및 건축물 형태 계획<br>•(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XIX → 19 | 1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20% 이하 |
| | | | 용 적 률 | | 180% 이하 |
| | | | 높 이 | | 30층 이하 |
| | | | 배 치 | |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br>•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br>•숙골로, 학교시설 등 보행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에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내의 주민 이용 및 단지외부의 이용도 가능하도록 하여 단지의 폐쇄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br>•학교와 인접한 곳은 위압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쇄적인 단지형 배치 지양 |
| | | | 형 태 | |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br>•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br>•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br>•조망통제점(송림삼거리)에서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인 및 입면부 지붕형태 등 검토 (공동주택 심의·자문 시 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 활용)<br>•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건 축 선 | | - |

② 단독주택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III → 3 | 1 2 3 4 5 6 | 용도 | 허용 | •단독주택(필지당 5가구 이하에 한함, 다중주택 제외)<br>• 점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내지 하목<br>•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60% 이하 |
| | | | 용 적 률 | | 150% 이하 |
| | | | 높 이 | | •3층 이하(1층을 필로티 계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 가능) |
| | | | 배 치 |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
| | | | 형 태 | | •점포주택<br>-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사용은 1층과 지하층에 한한다.<br>-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br>•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br>•담장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br>•지붕 및 옥탑<br>-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녹화시 허용<br>-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 : 1 ~ 1 : 3 이 되도록 한다.<br>- 단독주택용지의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 | | 색 채 |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한다.)<br>•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
| | | | 건 축 선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Ⅳ→4 | 1 2<br>3 4<br>5 6<br>7 8<br>9 | 용도 | 허용 | •단독주택(필지당 5가구 이하에 한함, 다중주택 제외)<br>• 점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내지 하목<br>•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60% 이하 |
| | | | 용 적 률 | | 150% 이하 |
| | | | 높 이 | | •3층 이하(1층을 필로티 계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 가능) |
| | | | 배 치 |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
| | | | 형 태 | | •점포주택<br>-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사용은 1층과 지하층에 한한다.<br>-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br>•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br>•담장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br>•지붕 및 옥탑<br>-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녹화시 허용<br>-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br>- 단독주택용지의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 | | 색 채 |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한다.)<br>•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
| | | | 건 축 선 | | - |

③ 상업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Ⅷ → 8 | 5 7 | 용도 | 허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9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38조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에 시설<br>-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90%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5 | 건폐율 | | 40% 이하(주거복합) |
| | | 7 | 용적률 | | 440% 이하(주거복합) |
| | | 8 | 높이 | | 75층 이하(주거복합) |
| | | | 배치 |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
| | | | 형태 | | •도화구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징적인 건축물 디자인 형태를 고려하도록 한다.<br>•대형건축물 형성을 고려하여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등 건축물 층수 및 건축물 배치동에 따라 다양한 입면을 구성하여 휴먼스케일에 맞도록 한다.<br>•도화오거리 결절부 공간을 고려하여 각 가로의 시각회랑축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입면을 계획하도록 한다.<br>•광장과 인접한 상업시설은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하여 광장과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br>•조망통제점(쑥골고가교)에서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랜드마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외관 검토(공동주택 심의·자문 시 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 활용)<br>•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
| | | | 색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
| | | | 건축선 | | - |

④ 학교용지

■ 기타학교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Ⅶ → 7 | 5 | 용도 | 허용 |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대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대규모 하나의 건물보다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기능을 반영한 단위별 건물을 권장하고 건물을 연계하여 일체감 확보 |
| | | | 형 태 | | •건축물 증축, 신축, 리모델링 시 개별적 건축물 형태는 지양하며 맥락성있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br>•권위적 형태의 좌우 대칭형 및 장방형 건축물 형태 지양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 | Ⅷ → 18 | 1 | 용도 | 허용 |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대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대규모 하나의 건물보다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기능을 반영한 단위별 건물을 권장하고 건물을 연계하여 일체감 확보 |
| | | | 형 태 | | •건축물 증축, 신축, 리모델링 시 개별적 건축물 형태는 지양하며 맥락성있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br>•권위적 형태의 좌우 대칭형 및 장방형 건축물 형태 지양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XV → 15 | ② | 용도 | 허용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의한 보육시설 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으로서 건물연면적의 30%이하 범위 내(유치원을 건축하고 남은 면적)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 |
| | | | 형 태 | | -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 | XVII → 17 | ① | 용도 | 허용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의한 보육시설 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으로서 건물연면적의 30%이하 범위 내(유치원을 건축하고 남은 면적)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 |
| | | | 형 태 | | -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특수학교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XIX → 19 | 3 | 용도 | 허용 |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대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대규모 하나의 건물보다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기능을 반영한 단위별 건물을 권장하고 건물을 연계하여 일체감 확보 |
| | | | 형 태 | | •개별적 건축물 형태는 지양하며 맥락성있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br>•권위적 형태의 좌우 대칭형 및 장방형 건축물 형태 지양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인천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X → 10 | 1 | 용도 | 허용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대학),업무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관람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20층 이하 |
| | | | 배 치 | | •대규모 하나의 건물보다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기능을 반영한 단위별 건물을 권장하고 건물을 연계하여 일체감 확보 |
| | | | 형 태 | | •추후 개발 시 건축물의 역사성, 건축적 가치, 장소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보존 요소 등에 대해 검토<br>•건축물 증축, 신축, 리모델링 시 개별적 건축물 형태는 지양하며 맥락성있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br>•권위적 형태의 좌우 대칭형 및 장방형 건축물 형태 지양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청운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Ⅸ → 9 | 1 | 용도 | 허용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대학),업무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관람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 30% 이하 |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 높이 | | 12층 이하 |
| | | | 배치 | | •대규모 하나의 건물보다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기능을 반영한 단위별 건물을 권장하고 건물을 연계하여 일체감 확보 |
| | | | 형태 | | •건축물 증축, 신축, 리모델링 시 개별적 건축물 형태는 지양하며 맥락성있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br>•권위적 형태의 좌우 대칭형 및 장방형 건축물 형태 지양 |
| | | | 색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건축선 | | - |

⑤ 노유자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XV → 15 | 5 | 용도 | 허용 |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폐율 | | 50% 이하 |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 높이 | | 7층 이하 |
| | | | 배치 | | - |
| | | | 형태 | | •권위적 형태의 좌우 대칭형 및 장방형 건축물 형태 지양 |
| | | | 색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
| | | | 건축선 | | - |

⑥ 공공청사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Ⅵ → 6 | 6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시설, 11호 노유자시설,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 |
| | | | 형 태 | | •지역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닌,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br>•민원실과 휴게공간을 저층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br>•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지양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 | Ⅷ → 8 | 3 4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500% 이하 |
| | | | 높 이 | | 15층 이하 |
| | | | 배 치 | | - |
| | | | 형 태 | | •지역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닌,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br>•민원실과 휴게공간을 저층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br>•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지양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 | Ⅷ → 8 | 9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 |
| | | | 형 태 | | •지역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닌,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br>•민원실과 휴게공간을 저층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br>•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지양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XI → 11 | ⑩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시설,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폐율 | | 50% 이하 |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 높이 | | 7층 이하 |
| | | | 배치 | | - |
| | | | 형태 | | •지역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 조성<br>•민원실과 휴게공간을 저층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br>•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지양 |
| | | | 색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건축선 | | - |

⑦ 업무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Ⅷ → 8 | ①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폐율 | | 50% 이하 |
| | | | 용적률 | | 500% 이하 |
| | | | 높이 | | 15층 이하 |
| | | | 배치 | | - |
| | | | 형태 | | •지역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닌,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br>•민원실과 휴게공간을 저층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br>•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지양 |
| | | | 색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건축선 | | - |

⑧ 주차장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V → 5 | 1 | 용도 | 허용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br>•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 배 치 | | - | |
| | | | 형 태 | | - | |
| | | | 색 채 | | - | |
| | | | 건 축 선 | | - | |
| - | Ⅷ → 8 | 2 | 용도 | 허용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br>•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 배 치 | | - | |
| | | | 형 태 | | - | |
| | | | 색 채 | | - | |
| | | | 건 축 선 |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XIV → 14 | 1 | 용도 | 허용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br>•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 배 치 | | - | |
| | | | 형 태 | | - | |
| | | | 색 채 | | - | |
| | | | 건 축 선 | | - | |
| - | II → 2 | 8 | 용도 | 허용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br>•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 배 치 | | - | |
| | | | 형 태 | | - | |
| | | | 색 채 | | - | |
| | | | 건 축 선 |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XII → 12 | 1 | 용도 | 허용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br>•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 배 치 | | - | |
| | | | 형 태 | | - | |
| | | | 색 채 | | - | |
| | | | 건 축 선 | | - | |

⑨ 저류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II → 2 | 1 | 용도 |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18조의 유수지 중 저류시설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 |
| | | | 배 치 | | - |
| | | | 형 태 | | - |
| | | | 색 채 | | - |
| | | | 건 축 선 | | - |

⑩ 기타용지

■ 근린생활시설 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VI → 6 | 1~5 7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60% 이하 |
| | | | 용 적 률 | | 25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
| | | | 형 태 | |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br>•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br>•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XI → 11 | ① ~ ⑨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60% 이하 |
| | | | 용 적 률 | | 25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
| | | | 형 태 | |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br>•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br>•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br>•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 | XII → 12 | (기정) ② ~ ⑦<br>(변경) ③ ~ ⑧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60% 이하 |
| | | | 용 적 률 | | 25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
| | | | 형 태 | |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br>•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br>•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br>•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XIII → 13 | 1 ~ 3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60% 이하 |
| | | | 용 적 률 | | 25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
| | | | 형 태 | |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br>•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br>•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br>•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 | XIV → 14 | 2 ~ 4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60% 이하 |
| | | | 용 적 률 | | 25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
| | | | 형 태 | |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br>•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br>•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br>•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XVI → 16 | 1 2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60% 이하 |
| | | | 용 적 률 | | 25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
| | | | 형 태 | |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br>•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br>•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br>•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 | XVII → 17 | 2 3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60% 이하 |
| | | | 용 적 률 | | 25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
| | | | 형 태 | |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br>•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br>•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br>•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 종교 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Ⅱ → 2 | 6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사당,봉안당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목회자 숙소, 주차시설 등)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 |
| | | | 형 태 | | - |
| | | | 색 채 | | - |
| | | | 건 축 선 | | - |
| - | Ⅷ → 8 | 10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사당,봉안당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목회자 숙소, 주차시설 등)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 |
| | | | 형 태 | | - |
| | | | 색 채 | | - |
| | | | 건 축 선 | | - |

■ 주유소 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II → 2 | 7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 중 가목의 소매점,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수리점) 단, 소방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1항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은 허용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7층 이하 |
| | | | 배 치 | | - |
| | | | 형 태 | | - |
| | | | 색 채 | | - |
| | | | 건 축 선 | | - |

■ 물류유통시설 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구분 | | 계획내용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Ⅰ → 1 | ① ② ③ → ① ② ③ ④ | 용도 | 허용 | ▨ 유통시설<br>•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br>▨ 산업시설<br>•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의한 제조업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기술산업, 첨단업종, 도시형공장임),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지원시설이 복합된 집합건축물이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br>▨ 관련시설<br>•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br>▨ 근린생활시설<br>•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골프연습장제외),<br>-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건축연면적의 3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
| | |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br>•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 | | 건 폐 율 | | 60% 이하 |
| | | | 용 적 률 | | 500% 이하 |
| | | | 높 이 | | 20층 이하 |
| | | | 배 치 | | - |
| | | | 형 태 | | •박스형 매스를 지양하고 시각적 분절을 통하여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에 가까운 건축물 볼륨감 형성<br>•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가로 및 건물 저층부 계획<br>•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및 벽면의 분절 등 입체적인 형태의 시각적 분절 유도 |
| | | | 색 채 |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
| | | |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
| | | | 건 축 선 | | -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

### 1)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① 공동주택용지

| 도면 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 | | |
| - | II → 2 | 3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br>•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 |
| | | | 동선 | 차량 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 불허 구간 |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로 3-243호선변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 보행 동선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의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br>•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br>•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br>•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br>• 보행자도로 및 공원·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지 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 |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Ⅶ → 7 | ①<br>②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br>•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로 3-9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 보행동선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br>•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br>•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br>•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br>•보행자도로 및 공원·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지 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br>•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보도, 완충녹지, 공동주택 내 공공조경 및 차폐조경 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 |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XV → 15 | 1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br>•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br>•연결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 내 공공조경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 그늘이 좋은 수종 식재 권장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로 1-144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 보행동선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의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br>•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br>•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br>•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br>•보행자도로 및 공원·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지 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 |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XVIII → 18 | 4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br>•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br>•연결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 내 공공조경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 그늘이 좋은 수종 식재 권장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로 1-144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 보행동선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br>•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br>•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br>•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br>•보행자도로 및 공원·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지 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 |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XIX<br>→<br>19 | (기정)<br>2<br><br>(변경)<br>1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br>•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로 2-3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 보행동선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의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br>•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br>•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br>•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br>(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br>•보행자도로 및 공원·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지 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 |

② 단독주택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Ⅲ → 3 | 1~6 | 대지내 공지 | |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경 공간으로 조성한다.<br>-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는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br>•단독 및 점포주택용지의 건축한계선에는 일정면적 이상에 대하여 관목(초화류)을 이용하여 식재공간 또는 화분으로 조성한다.<br>•조경기준은 인천시 건축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따른다. | |
| | Ⅳ → 6 | 1~9 | 동선 | 차량동선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br>•단독주택용지내 도로계획시 구역 외부 진입도로 등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 |
| | | | 주차시설 |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1세대당 1대이상'과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단,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br>•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다. | |

③ 상업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Ⅷ → 8 | 5 7 8 → 5 7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br>•인접한 공공청사와 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공지가 창고화되어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차폐한다.<br>•보도와 인접한 부지는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로 3-9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 보행동선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편의시설과의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br>•보행의 불편함이 없는 동선체계 구축<br>•근린광장과의 연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br>•지상에는 가능한 한 비상용·장애인 외의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휴게공간, 조경 및 녹지 공간으로 계획 | |

④ 학교용지

■ 기타학교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Ⅶ → 8 | 5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고등학교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 - | Ⅷ → 18 | 1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초등학교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 - | Ⅹ Ⅴ → 15 | 2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유치원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 - | Ⅶ → 17 | 1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유치원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 - | Ⅸ Ⅹ → 19 | 3 | 대지내 공지 | | •(신설)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특수학교 |
| | | | 동선 | 차량동선 | •(신설)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신설)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신설)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 인천대

| 도면 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 | | |
| - | X →10 | 1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br>•인천대학교 내 운동장 주변의 녹지공간 등은 보전대상으로 설정(권장사항)<br>•보행자 도로와 접하거나 진입부와 인접한 외부공간은 쉘터 등의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권장사항) | |
| | | | 동선 | 차량 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 불허 구간 |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 보행 동선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br>•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br>•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br>•건축물과 연계된 외부공간 조성 시 녹지 및 광장 형태로 조성하여 각 건축물 간을 연결하는 보행녹지축이 형성되도록 권장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확보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br>•위압적 형태의 담장은 지양하며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계부 공간 조성(권장사항)<br>-중고등학교와 인접한 공간은 하나의 공간처럼 개방적인 열린공간으로 조성<br>-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공간은 보행활동을 고려한 가로형태의 경계부 조성<br>-안전상 명확한 경계부가 필요한 경우 식재·펜스 등을 통한 경계부 형성 | |

■ 청운대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IX → 9 | 1 | 대지 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br>•보행자 도로와 접하거나 진입부와 인접한 외부공간은 쉘터 등의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권장사항)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 보행동선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를 조성<br>•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br>•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br>•건축물과 연계된 외부공간 조성 시 녹지 및 광장형태로 조성하여 각 건축물 간을 연결하는 보행녹지축이 형성되도록 권장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br>•위압적 형태의 담장은 지양하며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계부 공간 조성(권장사항)<br>-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공간은 보행활동을 고려한 가로형태의 경계부 조성<br>-안전상 명확한 경계부가 필요한 경우 식재·펜스 등을 통한 경계부 형성 | |

⑤ 노유자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XV → 15 | 5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⑥ 공공청사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Ⅵ → 6 | 6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br>•보행자도로변으로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 - | Ⅷ → 8 | 3<br>4<br>9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br>•보행자도로변으로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 - | Ⅺ → 11 | 10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br>•보행자도로변으로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⑦ 업무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Ⅷ → 8 | 1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br>•보행자도로변으로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⑧ 주차장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Ⅱ → 2 | 8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 |
| - | Ⅻ → 12 | 1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 |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V → 5 | 1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 |
| - | Ⅷ → 8 | 2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 |
| - | XIV → 14 | 1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 |

⑨ 기타용지

■ 종교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II → 2 | 6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 - | Ⅷ → 8 | 10 | 대지내 공지 | |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Ⅵ → 6 | 1~5 7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br>•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br>•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 |
| - | Ⅺ → 11 | 1 ~ 9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br>•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br>•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 |
| - | Ⅻ → 12 | (기정) 2 ~ 7 (변경) 3 ~ 8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br>•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br>•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 |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XIII → 13 | ① ~ ③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br>•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br>•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 |
| - | XIV → 14 | ② ~ ④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br>•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br>•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 |
| - | XVI → 16 | ① ②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br>•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br>•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 |
| | |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 |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XVII → 17 | 2 3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br>•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br>•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 |
| | | | 동선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동선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주차시설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 |

■ 물류·유통시설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I → 1 | (기정) 1 ~ 2 (변경) 1 ~ 4 | 대지내 공지 | •(신설)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br>•(신설)200㎡이상의 공지는 전체면적의 30%이상을 친환경적이면서 투수성 있는 바닥재 사용 권장 | |
| | | | 동선 차량동선 | •(신설)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동선 출입불허구간 | •(신설)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주차시설 | •(신설)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br>•(신설)주차장은 건축물 측면이나 후면부에 설치하고 도로와 면하는 경우 식재로 차폐하여 도로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함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신설)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br>•(신설)보도가 접하지 않는 경계부에는 완충 식재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 동선이 발생하는 곳은 모퉁이 공간의 공지를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을 권장함 | |

■ 주유소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비고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 |
| - | II → 2 | 7 | 동선 |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
| | | | |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 | |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

### 2)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생략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변경없음)

###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도화 특별계획구역 | 인천시 남구 도화동 255번지 일원 | 57,475.0 | - | 57,475.0 | |

<별표 1>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

| 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공동주택용지 | - | 공통 | 공통 | •주조색은 YR-Y 계열과 밝은 톤 사용<br>•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색상 배색을 통해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색감 연출<br>•강조색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하고 주로 저층부와 측벽 그래픽 부분에 적용<br>•공동주택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르도록 함 (단, 공동주택 브랜드 색상 등 사용색 범위 외의 색상 사용은 별도의 건축심의 및 자문을 통해 사용가능)<br>-주조색:색상 YR-Y / 명도 8~9.5 / 채도 0.5~2<br>-보조색:색상 YR-Y / 명도 5~7 / 채도 2~5<br>-강조색:색상 YR-Y / 명도 3~5.5 / 채도 1.5~6 |
| 단독주택용지 | - | 공통 | 공통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한다.)<br>•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
| 상업시설용지 | - | 공통 | 공통 | •밝고 쾌적한 주조색과 보조색, 선명한 강조색, 브라운과 블루계열의 지붕색으로 Cool & Modern 분위기 연출<br>•주조색, 지붕색은 저채도를 선정하여 다른 용도 보다 돌출감과 압박감이 덜 느껴지도록 유도<br>•건물매스에 따른 음영변화가 잘 나타나도록 명도조절, 색상은 동일 색상의 2~3가지 내로 조정<br>•상업시설 및 주거복합시설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br>-주조색:색상 YR-BG / 명도 8~10 / 채도 0.5~2<br>-보조색:색상 YR-BG / 명도 4~7 / 채도 2~4<br>-강조색:색상 GYR-BG / 명도 2~5 / 채도 2~4 |
| 학교용지(노유자시설용지 포함) | - | 공통 | 공통 | •동일색상의 차분한 색채를 형성하고 큰 면적은 명도차를 이용한 면 분할로 분절화 유도<br>•주조색은 저채도로 차분하고 안정감 있도록 계획<br>•지붕은 강조색인 YR- GY 계열의 색상과 저명도, 저채도로 통일<br>•교육시설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br>-주조색:색상 YR-GY / 명도 8~9.5 / 채도 0.5~2<br>-보조색:색상 YR-GY / 명도 5.5~7 / 채도 2~4<br>-강조색:색상 YR-GY / 명도 3~5 / 채도 2~4.5 |

| 용지 | 도면 번호 | 위치 | | 계획내용 |
|---|---|---|---|---|
| |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
| 공공 청사 용지 (업무 시설 용지 포함) | - | 공통 | 공통 | •밝고 쾌적한 주조색과 보조색, 선명한 강조색, 브라운계열의 지붕색으로 Warm & Natural 분위기 연출<br>•주조색, 지붕색은 저채도를 선정하여 다른 용도 보다 돌출감과 압박감이 덜 느껴지도록 유도<br>•건물매스에 따른 음영변화가 잘 나타나도록 명도조절, 색상은 동색계열 2-3가지 내로 조정<br>•공공청사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br>-주조색:색상 YR-Y / 명도 8~9.5 / 채도 0.5~1.5<br>-보조색:색상 YR-Y / 명도 5~7 / 채도 2~3<br>-강조색:색상 YR-Y / 명도 3~5 / 채도 2~4 |
| 근린 생활 시설 용지 | | | | •저채도의 주조색과 보조색, 선명한 강조색의 대비로 경쾌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연출<br>•주조색은 R-GY계열의 밝은 색상을 주로 사용하고, 보조색은 주조와 동일 색상 배색을 통해 안정되고 활기찬 색감 연출<br>•강조색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하고 주로 저층부와 측벽부분에 적용<br>•근린생활시설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br>-주조색:색상 YR-GY / 명도 8~10 / 채도 0.5~2<br>-보조색:색상 YR-GY / 명도 4~7 / 채도 2~4<br>-강조색:색상 YR-GY / 명도 2~5 / 채도 2~4 |
| 물류·유통 시설 용지 | - | 공통 | 공통 | •주조색은 R~YR, BG~N 계열의 색과 밝은 톤 사용<br>•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색상 배색을 통해 안정적인 색감 연출<br>•강조색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하고 주로 저층부와 측벽 그래픽 부분 적용<br>•지식산업센터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br>-주조색:색상 R-YR, BG, N / 명도 8~9.5 / 채도 0.5~2<br>-보조색:색상 R-YR, BG, N / 명도 5~7 / 채도 2~3<br>-강조색:색상 R-YR, BG, N / 명도 2~4.5 / 채도 1.5~4 |

## <별표 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기본원칙</td><td>•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의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소형돌출제외),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설치를 금지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함<br>-파출소, 소방서, 공공청사 등 공공건축물은 필요 시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br>-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한하여만 게시할 수 있음<br>•옥상간판은 표시를 금지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함<br>-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br>-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의 병원 표시 도형<br>•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2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td></tr>
<tr><td>공통기준</td><td>•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한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당 2개 이내로 표시 할 수 있음.<br>-의료기관・약국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을 표시하는 경우<br>-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br>-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br>•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주변 광고물과의 관계, 접촉거리 등을 고려하여 크기와 설치위치를 결정하며 간판의 형상은 건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br>•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함<br>•주변 건물 및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검정색 및 빨강・파랑・노랑・녹색의 경우 순도 높은 원색을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br>•간판의 색채는 다음의 사항을 따를 것을 권장함
<table>
<tr><th>구 분</th><th>색상</th><th>명도</th><th>채도</th></tr>
<tr><td>주조색</td><td>R-PB, N</td><td>6이상 10이하</td><td>1이상 3이하</td></tr>
<tr><td>보조색</td><td>R-PB</td><td>4이상 7이하</td><td>5이상 8이하</td></tr>
<tr><td>강조색</td><td>R-PB, N</td><td>2이상 8이하</td><td>2이상 9이하</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4">유형별<br>기준</td><td>가로형<br>간판</td><td>•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업소당 1개 간판을 입체형 문자체로 설치하며 판류형은 1층에만 설치가 가능함<br>•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범위의 80% 이내(최대 10m), 세로크기는 판류형의 경우 80cm이내 입체형은 최대 50cm 이내(동일 층엔 세로 폭 통일)로 하며 두께는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함<br>•입체형의 주 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평균 세로크기는 최대 50cm 이내로 하며 보조 표기내용(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의 세로크기는 간판 세로크기의 1/4 이내로 함<br>•판류형의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1/3 이내로 표기하거나, 주 표기내용의 평균 세로크기를 간판 세로크기의 1/2 이내로 표기하며 보조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간판 세로크기의 1/6 이내로 함</td></tr>
<tr><td>소형<br>돌출<br>간판</td><td>•도로 및 보도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1층 업소가 표시하는 간판으로서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음<br>•1면의 표기면적은 최대 0.36㎡ 이내로 표시하며 두께는 20cm 이내에 표시하며 업소 출입구의 좌·우측 중 한곳에 1개 표시함</td></tr>
<tr><td>지주<br>이용<br>간판</td><td>•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당해 부지 내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1개 업소만을 표시하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br>•1면의 면적은 최대 6㎡ , 간판면적의 합계는 24㎡ 이내로 하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로 함<br>•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설치한다.<br>•브랜드명 또는 상호명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함<br>•표기내용은 개별간판 면적의 1/3 이내로 표기하거나, 표기내용의 평균 세로크기를 개별간판 세로 폭의 1/2 이내로 표기함<br>•배경색은 저채도의 단일색을 사용하며, 실사이미지 사용을 금지함<br>•특화가로축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은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함.<br><br>
<table>
<tr><th colspan="2">지주이용간판 금지 대상</th></tr>
<tr><td>XI→ 11</td><td>1 2 3 4 5 6 7 8 9</td></tr>
<tr><td>XII→ 12</td><td>1 3 4 5 6 7 8</td></tr>
<tr><td>XIII→<br>13</td><td>1 2 3</td></tr>
<tr><td>XIV→14</td><td>1 2 3 4</td></tr>
<tr><td>XVI→<br>16</td><td>1 2</td></tr>
<tr><td>XVII→<br>17</td><td>2 3</td></tr>
</table>
</td></tr>
<tr><td>연립<br>가로형<br>간판</td><td>•총 면적 8㎡ 이내, 개별간판 표기내용의 세로 크기는 최대 50cm, 면적은 0.5㎡를 넘지 않으며 두께는 20cm이내에 표시함<br>•곡각지점에「ㄱ」자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음<br>•건물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경우 출입구의 폭을 초과할 수 없음<br>•벽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함<br>•통일된 규격으로 조화를 고려하여 건물에 설치함<br>•브랜드 명 또는 상호명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함</td></tr>
</table>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96호

# 2016년도 재해대비·영농편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이 시행하는 재해대비 · 영농편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8. 29.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2016년도 재해대비 · 영농편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목적
   ○ 재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예방
   ○ 노후화된 시설정비를 통한 안정영농 구현,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3.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양도면 삼흥리, 능내리 일원
4. 사업내용
   ○ 수혜면적 : 903.0ha
   ○ 주요공사내역
   - 삼흥양수장 : 수중모터펌프 30kw×200㎜×1대, 송수관로200㎜ L=180m
   - 진남양수장 : 양흡입와권펌프30kw×250㎜×2대,
     전기동력반(3상 380V 30㎾) 교체
   - 길정양수장 : 고압큐비클반 (5면), 저압반(1면) 교체
5. 사 업 비 : 500백만원
6. 사 업 기 간 : 2016년 8월 ~ 2016년 12월 20일
7. 사업효과 : 재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수혜구역 903.0ha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용수로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도모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
9. 기타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2)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 032-930-25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도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194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③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288호(2015. 11. 9)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2-③단계)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골프장 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주택계획 조정

○ 가스공사 인천사옥 건축허가 조건사항인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구경계 인근 부지 맹지 해소를 위한 공원·녹지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변경(2015. 09)에 따라 개발계획상 주거시설 조성계획 내용 수정

○ 8호 완충녹지내 점용 중인 KT통신시설용지를 별도의 통신공급설비로 결정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자금계획 수정

○ IHP지정서 등 오류사항 수정

○ 청라 북서측 투기장 매립사업 준공에 따른 기존 진출입로 인근계획 환원

○ 항만배후단지 남청라IC 연결도로 건설공사 협의요청사항 반영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

○ 면 적 : 17,809,922.2㎡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구역지정일(2003년 8월 11일)

○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31일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 6. 재원조달 방법【변경】

○ 변경사유 :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연차별 자금계획 수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체자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비 | 합 계 | | 용지비 | 조성비 |
|---|---|---|---|---|
| | 기정 | 6,175,300 | 1,997,000 | 4,178,300 |
| | 변경 | 6,064,725 | 1,901,389 | 4,163,336 |

##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1) 총 괄【변경】

○ 변경사유 : 골프장내 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주택계획 조정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변경에 따라 평균평형, 층수항목 삭제

■ 기정

| 구 분 | 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 (인) | 인구밀도 (인/ha) | 평균평형 (평) | 층수 (층) | 용적률 (%) | 비고 |
|---|---|---|---|---|---|---|---|---|
| **합 계** | **2,693,712.8** | **33,210** | **90,000** | **336.3** | **-** | - | **-** | |
| **단 독** | **513,734.4** | **1,635** | **4,432** | **86.3** | **-** | - | **-** | **근생제외** |
| 일반형 | 427,787.7 | 1,378 | 3,734 | 87.3 | 80~120 | - | - | 근생제외 |
| 블록형 | 85,946.7 | 257 | 698 | 81.1 | 100 | - | - | |
| **공 동** | **1,817,448.2** | **27,860** | **75,501** | **415.4** | **-** | - | **-** | |
| 60㎡ 이하 | 190,603.0 | 4,165 | 11,287 | 592.2 | 24 | - | 150~220 | |
| 60~ 85㎡ | 724,670.5 (68,726.1) | 11,981 (630) | 32,468 (1,707) | 448.0 (248.3) | 34 | - | 150~220 (105) | ( )는 연립주택용지 |
| 85㎡ 초과 | 902,174.7 | 11,714 | 31,746 | 351.9 | 45 | - | 150~220 | |
| **주상복합** | **230,157.2** | **3,360** | **9,105** | **395.6** | **35~50** | - | **310** | |
| **기 타** | **132,373.0** | **355** | **962** | **83.9** | **-** | - | **-** | **골프장내 주택단지** |

주) 1. 평균평형 : 지상부 공동주택의 분양면적 기준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산정된 것임
3. 평균평형, 층수, 용적률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4. 인구밀도는 순밀도이며 총밀도는 50.6인/ha로 산정됨
5. 인구밀도 산정시 주상복합용지 및 투자유치용지 주거면적 포함

■ 변경

| 구 분 | 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 (인) | 인구밀도 (인/ha) | 용적률 (%) | 비고 |
|---|---|---|---|---|---|---|
| **합 계** | **2,693,712.8** | **33,210** | **90,000** | **336.3** | **-** | |
| **단 독** | **513,734.4** | **1,635** | **4,432** | **86.3** | **-** | **근생제외** |
| 일반형 | 427,787.7 | 1,378 | 3,734 | 87.3 | - | 근생제외 |
| 블록형 | 85,946.7 | 257 | 698 | 81.1 | - | |
| **공 동** | **1,817,448.2** | **27,860** | **75,501** | **415.4** | **-** | |
| 60㎡ 이하 | 190,603.0 | 4,165 | 11,287 | 592.2 | 150~220 | |
| 60~ 85㎡ | 724,670.5 (68,726.1) | 11,981 (630) | 32,468 (1,707) | 448.0 (248.3) | 150~220 (105) | ( )는 연립주택용지 |
| 85㎡ 초과 | 902,174.7 | 11,714 | 31,746 | 351.9 | 150~220 | |
| **주상복합** | **230,157.2** | **3,360** | **9,105** | **395.6** | **310** | |
| **기 타** | **132,373.0** | **355** | **962** | **83.9** | **-** | **골프장내 주택단지 (264세대), 기타 91세대 유보** |

주) 1. 평균평형 : 지상부 공동주택의 분양면적 기준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산정된 것임
3. 평균평형, 층수, 용적률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4. 인구밀도는 순밀도이며 총밀도는 50.6인/ha로 산정됨
5. 인구밀도 산정시 주상복합용지 및 투자유치용지 주거면적 포함

2) 주택건설용지【변경】

■ 기정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수용세대 (호) | 수용인구 (인) | 비고 |
|---|---|---|---|---|---|
| 합 계 | 2,693,712.8 | 100.0 | 33,210 | 90,000 | |
| 단 독 | 513,734.4 | 19.1 | 1,635 | 4,432 | 근린생활시설 제외 |
| 공 동 | 1,817,448.2 | 67.5 | 27,860 | 75,501 | 연립주택포함 |
| 주상복합 | 230,157.2 | 8.5 | 3,360 | 9,105 | |
| 기 타 | 132,373.0 | 4.9 | 355 | 962 | 골프장내주택단지 |

■ 변경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수용세대 (호) | 수용인구 (인) | 비고 |
|---|---|---|---|---|---|
| 합 계 | 2,693,712.8 | 100.0 | 33,210 | 90,000 | |
| 단 독 | 513,734.4 | 19.1 | 1,635 | 4,432 | 근린생활시설 제외 |
| 공 동 | 1,817,448.2 | 67.5 | 27,860 | 75,501 | 연립주택포함 |
| 주상복합 | 230,157.2 | 8.5 | 3,360 | 9,105 | |
| 기 타 | 132,373.0 | 4.9 | 355 | 962 | 골프장내 주택단지 (264세대), 기타 91세대 유보 |

3) 단계별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4) 가구별 공동주택계획【변경】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변경에 따라 평균평형, 층수항목 삭제외 변경없음
: 기재생략

5) 가구별 주상복합주택계획【변경】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변경에 따라 평균평형, 층수항목 삭제외 변경없음
: 기재생략

## 8.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구 분 | | 면 적(㎡) | | 증·감(㎡) | 구성비(%) | 비 고 |
|---|---|---|---|---|---|---|
| | | 기 정(㎡) | 변 경(㎡) | | | |
| 합 계 | | 17,809,922.2 | 17,809,922.2 | - | 100.0 | - |
| 주택건설용지 | 소 계 | 2,331,182.6 | 2,331,182.6 | - | 13.1 | - |
| | 단독 주택 | 513,734.4 | 513,734.4 | - | 2.9 | 블록형 단독주택지 포함 |
| | 공동 주택 | 1,817,448.2 | 1,817,448.2 | - | 10.2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 14,089.7 | 14,089.7 | - | 0.1 | |
| 상업시설용지 | 소 계 | 654,220.05 | 654,220.05 | - | 3.6 | - |
| | 상업시설용지 | 395,537.85 | 395,537.85 | - | 2.2 | |
| | 지원시설용지 | 62,218.0 | 62,218.0 | - | 0.3 | IHP, 테마파크 지원시설용지 |
| | 복합용지 | 33,058.0 | 33,058.0 | - | 0.2 | - |
| | 복합유통시설용지 | 163,406.2 | 163,406.2 | - | 0.9 | 글로벌 유통산업 메카 등 |
| 주상복합용지 | | 230,157.2 | 230,157.2 | - | 1.3 | - |
| 업무시설용지 | | 495,989.5 | 495,989.5 | - | 2.8 | |
| 산업시설용지 | 소 계 | 861,535.6 | 861,535.6 | - | 4.9 | - |
| | 화훼산업용지 | 101,462.9 | 101,462.9 | - | 0.6 | - |
| | R&D 및 첨단 산업용지 | 713,395.7 | 713,395.7 | - | 4.0 | - |
| |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 46,677.0 | 46,677.0 | - | 0.3 | 로봇연구소 등 |
| 연구시설용지 |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 506,974.0 | 506,974.0 | - | 2.8 | |
| 관광위락시설용지 | 소 계 | 2,004,937.3 | 2,004,937.3 | - | 11.3 | - |
| | 휴양용지 | 124,796.4 | 124,796.4 | - | 0.7 | - |
| | 유 원 지 | 387,607.0 | 387,607.0 | - | 2.2 | 로봇테마파크 등 |
| | 골프장 | 1,492,533.9 | 1,492,533.9 | - | 8.4 | |

| 구 분 | | 면 적(㎡) | | 증·감(㎡) | 구성비(%) | 비 고 |
|---|---|---|---|---|---|---|
| | | 기 정(㎡) | 변 경(㎡) | | | |
| 공공기반시설용지 | 소 계 | 9,095,601.0 | 9,095,601.0 | - | 50.9 | - |
| | 도 로 | 2,889,958.9 | 2,889,752.7 | 감)206.2 | 16.4 | 맹지해소를 위한 계획변경 등 |
| | 공 원 | 1,853,205.6 | 1,853,195.6 | 감)10.0 | 10.4 | 맹지해소를 위한 계획변경 |
| | 녹 지 | 1,528,802.9 | 1,528,671.1 | 감)131.8 | 8.5 | 맹지해소를 위한 계획변경 |
| | 광 장 | 238,610.0 | 238,610.0 | - | 1.3 | |
| | 공 공 공 지 | 81,317.0 | 81,596.0 | 증)279.0 | 0.5 | 가스공사 사옥 건축허가 조건(가감속차로) 반영 등 |
| | 하 천 | 1,474,915.7 | 1,474,915.7 | - | 8.3 | - |
| | 유 수 지 | 123,917.4 | 123,917.4 | - | 0.7 | |
| | 철 도 시 설 | 20,884.8 | 20,884.8 | - | 0.1 | |
| | 주 차 장 | 152,993.5 | 152,993.5 | - | 0.8 | |
| | 공영차고지 | 21,835.0 | 21,835.0 | - | 0.1 | - |
| | 복합환승센터 | 7,500.0 | 7,500.0 | - | - | - |
| | 학 교 시 설 | 357,554.9 | 357,554.9 | - | 2.0 | 유3, 초9, 중5, 고6, 외2 개소 |
| | 하수도시설 | 79,102.9 | 79,102.9 | - | 0.4 | 하수종말처리장 |
| | 전기공급설비 | 24,700.4 | 24,700.4 | - | 0.1 | 변전소(3개소) |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 13,793.1 | 13,793.1 | - | 0.1 | 5개소 |
| | 가스공급설비 | 39,795.0 | 39,795.0 | - | 0.2 | 6개소 |
| | 주 유 소 | 4,455.6 | 4,455.6 | - | - | 3개소 |
| | 종 교 시 설 | 18,301.2 | 18,301.2 | - | 0.1 | 9개소 |
| | 체 육 시 설 | 40,413.1 | 40,413.1 | - | 0.2 | 2개소 |
| | 공공업무시설 | 36,521.2 | 36,521.2 | - | 0.2 | |
| | 근린공공시설 | 31,311.3 | 31,311.3 | - | 0.2 | 지하차도 관리사무소(3개소), 하천 수문관리동(2개소) 포함 |
| | 문화·의료·복지시설 | 52,589.6 | 52,589.6 | - | 0.3 | - |
| | 보 육 시 설 | 3,121.9 | 3,121.9 | - | - | 4개소 |
| | 통신공급설비 | - | 69.0 | 증)69.0 | - | 통신분기국사 시설 별도 결정 |
| 투자유치용지 | | 1,395,060.25 | 1,395,060.25 | - | 8.0 | 관광·위락·레저·교육·의료 등 |
| 유 보 지 | | 220,175.0 | 220,175.0 | - | 1.2 | |

□ 단계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구분 | | 2단계 | | 2 - ①단계 | 2 - ②단계 | 2 - ③단계 | | |
|---|---|---|---|---|---|---|---|---|
| | | 면적(㎡) | | 면적(㎡) | 면적(㎡) | 면적(㎡) | | |
| | | 기정 | 변경 | | | 기정 | 변경 | 증감 |
| 주택건설용지 | | 2,331,182.6 | 2,331,182.6 | 1,892,373.7 | 438,808.9 | - | -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 14,089.7 | 14,089.7 | 3,566.5 | 10,523.2 | - | - | - |
| 상업시설용지 | | 654,220.1 | 654,220.1 | 183,546.5 | 60,327.7 | 410,345.85 | 410,345.9 | - |
| 주상복합용지 | | 230,157.2 | 230,157.2 | 230,157.2 | - | - | - | - |
| 업무시설용지 | | 495,989.5 | 495,989.5 | - | 74,572.5 | 421,417.0 | 421,417.0 | - |
| 산업시설용지 | | 861,535.6 | 861,535.6 | - | - | 861,535.6 | 861,535.6 | - |
| 연구시설용지 | | 506,974.0 | 506,974.0 | - | - | 506,974.0 | 506,974.0 | - |
| 관광위락시설용지 | | 2,004,937.3 | 2,004,937.3 | - | 1,360,160.9 | 644,776.4 | 644,776.4 | - |
| 공공시설용지 | 도로 | 2,889,958.9 | 2,890,166.7 | 1,028,960.7 | 621,846.2 | 1,239,152.0 | 1,238,945.8 | 감)206.2 |
| | 공원·녹지 | 3,382,008.5 | 3,381,866.7 | 743,823.4 | 1,137,825.7 | 1,500359.4 | 1,500,217.6 | 감)141.8 |
| | 광장 | 238,610.0 | 238,610.0 | - | - | 238,610.0 | 238,610.0 | - |
| | 공공공지 | 81,317.0 | 81,182.0 | 22,947.9 | 1,498.1 | 56,871.0 | 57,150.0 | 증)279.0 |
| | 하천 | 1,474,915.7 | 1,474,915.7 | 48,350.7 | - | 1,426,565.0 | 1,426,565.0 | - |
| | 유수지 | 123,917.4 | 123,917.4 | - | 123,917.4 | - | - | - |
| | 철도시설 | 20,884.8 | 20,884.8 | - | 20,884.8 | - | - | - |
| | 주차장 | 152,993.5 | 152,993.5 | 37,868.9 | 13,099.9 | 102,024.7 | 102,024.7 | - |
| | 공영차고지 | 21,835.0 | 21,835.0 | - | - | 21,835.0 | 21,835.0 | - |
| | 복합환승센터 | 7,500.0 | 7,500.0 | - | - | 7,500.0 | 7,500.0 | - |
| | 학교시설 | 357,554.9 | 357,554.9 | 311,570.4 | 45,984.5 | - | - | - |
| | 하수도시설 | 79,102.9 | 79,102.9 | 79,102.9 | - | - | - | - |
| | 전기공급설비 | 24,700.4 | 24,700.4 | 11,215.4 | - | 13,485.0 | 13,485.0 | - |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 13,793.1 | 13,793.1 | 8,248.1 | - | 5,545.0 | 5,545.0 | - |
| | 가스공급설비 | 39,795.0 | 39,795.0 | 100.0 | 25.0 | 39,670.0 | 39,670.0 | - |
| | 주유소 | 4,455.6 | 4,455.6 | - | 2,410.6 | 2,045.0 | 2,045.0 | - |
| | 종교시설 | 18,301.2 | 18,301.2 | 13,450.8 | 4,850.4 | - | - | - |
| | 체육시설 | 40,413.1 | 40,413.1 | 6,600.1 | - | 33,813.0 | 33,813.0 | - |
| | 공공업무시설 | 36,521.2 | 36,521.2 | 14,089.6 | 10,095.6 | 12,336.0 | 12,336.0 | - |
| | 근린공공시설 | 31,311.3 | 31,311.3 | 17,985.2 | 3,656.1 | 9,670.0 | 9,670.0 | - |
| | 문화·의료·복지시설 | 52,589.6 | 52,589.6 | 40,282.6 | - | 12,307.0 | 12,307.0 | - |
| | 보육시설 | 3,121.9 | 3,121.9 | 2,463.4 | 658.5 | - | - | - |
| | 통신공급설비 | - | 69.0 | - | - | - | 69.0 | 증)69.0 |
| | 소계 | 9,095,601.0 | 9,096,861.0 | 2,387,060.1 | 1,986,752.8 | 4,721,788.1 | 4,721,788.1 | - |
| 투자유치용지 | | 1,395,060.3 | 1,395,060.3 | - | 176,107.4 | 1,218,952.85 | 1,218,952.9 | - |
| 유보지 | | 220,175.0 | 220,175.0 | - | - | 220,175.0 | 220,175.0 | - |
| 합계 | | 17,809,922.2 | 17,809,922.2 | 4,696,704.0 | 4,107,253.4 | 9,005,964.8 | 9,005,964.8 | - |

□ 시행자별 토지이용계획(총괄)【변경없음】

| 구분 | 계(㎡) | 청라국제도시 2-①단계 | 청라국제도시 2-②단계 | | 청라국제도시 2-③단계 | |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광역시 | 한국농어촌공사 |
| 총합계 | 17,809,922.50 | 4,696,704.0 | 4,105,753.4 | 1,500.0 | 6,716,021.15 | 1,870,502.55 | 419,441.1 |
| 한국토지주택공사 | 15,518,478.55 | 4,696,704.0 | 4,105,753.4 | - | 6,716,021.15 | - | - |
| 인천광역시 | 1,872,002.55 | - | - | 1,500.0 | - | 1,870,502.55 | - |
| 한국농어촌공사 | 419,441.10 | - | - | - | - | - | 419,441.1 |

□ 시행자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기정

| 구 분 | | | 2-①단계 | 2-②단계 | | 2-③단계 | | |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광역시 | 한국농어촌공사 |
| 주택건설용지 | 단독주택용지 | | 325,506.9 | 188,227.5 | - | - | - | - |
| | 공동주택용지 | | 1,566,866.8 | 250,581.4 | - | - | - | - |
| | 소계 | | 1,892,373.7 | 438,808.9 | - | - | - | - |
| 근생시설용지 | | | 3,566.5 | 10,523.2 | - | - | - | - |
| 상업시설용지 | 상업시설용지 | | 183,546.5 | 60,327.7 | - | 44,220.85 | 66,819.0 | 40,623.8 |
| | 지원시설용지 | | - | - | - | 21,383.0 | 40,835.0 | - |
| | 복 합 용 지 | | - | - | - | - | 33,058.0 | - |
| | 복합유통시설용지 | | - | - | - | - | 163,406.2 | - |
| | 소계 | | 183,546.5 | 60,327.7 | - | 65,603.85 | 304,118.2 | 40,623.8 |
| 주상복합용지 | | | 230,157.2 | - | - | - | - | - |
| 업무시설용지 | | | - | 74,572.5 | - | 404,987.0 | 16,430.0 | - |
| 산업시설용지 | 화훼산업용지 | | - | - | - | - | - | 101,462.9 |
| | R&D 및 첨단산업용지 | | - | - | - | 645,094.0 | - | 68,301.7 |
| |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 | - | - | - | - | 46,677.0 | - |
| | 소계 | | - | - | - | 645,094.0 | 46,677.0 | 169,764.6 |
|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 | | - | - | - | - | 506,974.0 | - |
| 관광위락시설용지 | 휴양용지 | | - | - | - | - | - | 124,796.4 |
| | 유원지 | | - | - | - | - | 387,607.0 | - |
| | 골프장 | | - | 1,360,160.9 | - | 132,373.0 | - | - |
| | 소계 | | - | 1,360,160.9 | - | 132,373.0 | 387,607.0 | 124,796.4 |
| 공공시설용지 | 도로 | | 1,028,960.7 | 620,346.2 | 1,500.0 | 1,048,668.3 | 144,241.5 | 46,242.2 |
| | 공원 | 계 | 421,839.3 | 908,911.8 | - | 481,541.0 | 25,555.0 | 15,358.5 |
| | | 문화공원 | 195,868.7 | 140,204.0 | - | - | - | - |
| | | 근린공원 | 179,986.2 | 748,879.0 | - | 464,122.0 | 10,304.0 | 15,358.5 |
| | | 어린이공원 | 45,984.4 | 19,828.8 | - | - | - | - |
| | | 소공원 | - | - | - | 17,419.0 | 15,251.0 | - |
| | 녹지 | 계 | 321,984.1 | 228,913.9 | - | 908,031.0 | 54,739.0 | 15,134.9 |
| | | 완충녹지 | 291,485.6 | 117,887.6 | - | 615,216.0 | 45,094.0 | 15,134.9 |
| | | 경관녹지 | 30,498.5 | 111,026.3 | - | 283,854.0 | 9,645.0 | - |
| | | 연결녹지 | - | - | - | 8,961.0 | - | - |

| 구 분 | | | 2-①단계 | 2-②단계 | | 2-③단계 | | |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광역시 | 한국농어촌공사 |
| 공공시설용지 | 광장 | | - | - | - | 231,262.0 | 7,348.0 | - |
| | 공공공지 | | 22,947.9 | 1,498.1 | - | 50,925.0 | 5,946.0 | - |
| | 하천 | | 48,350.7 | - | - | 1,426,565.0 | - | - |
| | 유수지 | | - | 123,917.4 | - | - | - | - |
| | 주차장 | | 37,868.9 | 13,099.9 | - | 63,139.0 | 31,365.0 | 7,520.7 |
| | 공영차고지 | | - | - | - | 21,835.0 | - | - |
| | 복합환승센터 | | - | - | - | 7,500.0 | - | - |
| | 학교시설 | 계 | 311,570.4 | 45,984.5 | - | - | - | - |
| | | 유치원 | 4,167.9 | - | - | - | - | - |
| | | 초등학교 | 80,260.9 | 21,997.0 | - | - | - | - |
| | | 중학교 | 46,958.8 | 11,988.7 | - | - | - | - |
| | | 고등학교 | 48,000.0 | 11,998.8 | - | - | - | - |
| | | 체육고등학교 | 66,000.0 | - | - | - | - | - |
| | | 외국인학교 | 66,182.8 | - | - | - | - | - |
| | 하수도시설 | | 79,102.9 | - | - | - | - | - |
| | 전기공급설비 | | 11,215.4 | - | - | 13,485.0 | - | - |
| | 통신공급설비 | | - | - | - | - | - | - |
|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 | 8,248.1 | - | - | 5,545.0 | - | - |
| | 가스공급설비 | | 100.0 | 25.0 | - | 39,670.0 | - | - |
| | 주유소 | | - | 2,410.6 | - | 2,045.0 | - | - |
| | 종교시설 | | 13,450.8 | 4,850.4 | - | - | - | - |
| | 체육시설 | | 6,600.1 | - | - | 33,813.0 | - | - |
| | 공용시설 | 계 | 74,820.8 | 35,295.0 | - | 34,313.0 | - | - |
| | | 공공업무 | 14,089.6 | 10,095.6 | - | 12,336.0 | - | - |
| | | 근린공공 | 17,985.2 | 3,656.1 | - | 9,670.0 | - | - |
| | | 철도역사 | - | 20,884.8 | - | - | - | - |
| | | 문화·의료·복지시설 | 40,282.6 | - | - | 12,307.0 | - | - |
| | | 보육시설 | 2,463.4 | 658.5 | - | - | - | - |
| | 소계 | | 2,387,060.1 | 1,985,252.8 | 1,500.0 | 4,368,337.3 | 269,194.5 | 84,256.3 |
| 투자유치용지 | | | - | 176,107.4 | - | 924,281.0 | 294,671.85 | - |
| 유보지 | | | - | - | - | 175,345.0 | 44,830.0 | - |
| 총합계 | | | 4,696,704.0 | 4,105,753.4 | 1,500.0 | 6,716,021.15 | 1,870,502.55 | 419,441.1 |

■ 변경

| 구 분 | | | 2-①단계 | 2-②단계 | | 2-③단계 | | |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광역시 | 한국농어촌공사 |
| 주택건설용지 | 단독주택용지 | | 325,506.9 | 188,227.5 | - | - | - | - |
| | 공동주택용지 | | 1,566,866.8 | 250,581.4 | - | - | - | - |
| | **소계** | | **1,892,373.7** | **438,808.9** | **-** | **-** | **-** | **-** |
| **근생시설용지** | | | **3,566.5** | **10,523.2** | **-** | **-** | **-** | **-** |
| 상업시설용지 | 상업시설용지 | | 183,546.5 | 60,327.7 | - | 44,220.85 | 66,819.0 | 40,623.8 |
| | 지원시설용지 | | - | - | - | 21,383.00 | 40,835.0 | - |
| | 복 합 용 지 | | - | - | - | - | 33,058.0 | - |
| | 복합유통시설용지 | | - | - | - | - | 163,406.2 | - |
| | **소계** | | **183,546.5** | **60,327.7** | **-** | **65,603.85** | **304,118.2** | **40,623.8** |
| **주상복합용지** | | | **230,157.2** | **-** | **-** | **-** | **-** | **-** |
| **업무시설용지** | | | **-** | **74,572.5** | **-** | **404,987.00** | **16,430.0** | **-** |
| 산업시설용지 | 화훼산업용지 | | - | - | - | - | - | 101,462.9 |
| | R&D 및 첨단산업용지 | | - | - | - | 645,094.00 | - | 68,301.7 |
| |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 | - | - | - | - | 46,677.0 | - |
| | **소계** | | **-** | **-** | **-** | **645,094.00** | **46,677.0** | **169,764.6** |
|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 | | **-** | **-** | **-** | **-** | **506,974.0** | **-** |
| 관광위락시설용지 | 휴양용지 | | - | - | - | - | - | 124,796.4 |
| | 유원지 | | - | - | - | - | 387,607.0 | - |
| | 골프장 | | - | 1,360,160.9 | - | 132,373.00 | - | - |
| | **소계** | | **-** | **1,360,160.9** | **-** | **132,373.00** | **387,607.0** | **124,796.4** |
| 공공시설용지 | 도로 | | 1,028,960.7 | 620,346.2 | 1,500.0 | 1,048,462.10 | 144,241.5 | 46,242.2 |
| | 공원 | **계** | **421,839.3** | **908,911.8** | **-** | **481,531.00** | **25,555.0** | **15,358.5** |
| | | 문화공원 | 195,868.7 | 140,204.0 | - | - | - | - |
| | | 근린공원 | 179,986.2 | 748,879.0 | - | 464,112.00 | 10,304.0 | 15,358.5 |
| | | 어린이공원 | 45,984.4 | 19,828.8 | - | - | - | - |
| | | 소공원 | - | - | - | 17,419.00 | 15,251.0 | - |
| | 녹지 | **계** | **321,984.1** | **228,913.9** | **-** | **907,899.20** | **54,739.0** | **15,134.9** |
| | | 완충녹지 | 291,485.6 | 117,887.6 | - | 615,108.00 | 45,094.0 | 15,134.9 |
| | | 경관녹지 | 30,498.5 | 111,026.3 | - | 283,830.20 | 9,645.0 | - |
| | | 연결녹지 | - | - | - | 8,961.00 | - | - |

| 구 분 | | | 2-①단계 | 2-②단계 | | 2-③단계 | | |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광역시 | 한국농어촌공사 |
| 공공시설용지 | 광장 | | - | - | - | 231,262.00 | 7,348.0 | - |
| | 공공공지 | | 22,947.9 | 1,498.1 | - | 51,204.00 | 5,946.0 | - |
| | 하천 | | 48,350.7 | - | - | 1,426,565.00 | - | - |
| | 유수지 | | - | 123,917.4 | - | - | - | - |
| | 주차장 | | 37,868.9 | 13,099.9 | - | 63,139.00 | 31,365.0 | 7,520.7 |
| | 공영차고지 | | - | - | - | 21,835.00 | - | - |
| | 복합환승센터 | | - | - | - | 7,500.00 | - | - |
| | 학교시설 | **계** | **311,570.4** | **45,984.5** | **-** | **-** | **-** | **-** |
| | | 유치원 | 4,167.9 | - | - | - | - | - |
| | | 초등학교 | 80,260.9 | 21,997.0 | - | - | - | - |
| | | 중학교 | 46,958.8 | 11,988.7 | - | - | - | - |
| | | 고등학교 | 48,000.0 | 11,998.8 | - | - | - | - |
| | | 체육고등학교 | 66,000.0 | - | - | - | - | - |
| | | 외국인학교 | 66,182.8 | - | - | - | - | - |
| | 하수도시설 | | 79,102.9 | - | - | - | - | - |
| | 전기공급설비 | | 11,215.4 | - | - | 13,485.00 | - | - |
| | 통신공급설비 | | - | - | - | 69.00 | - | - |
|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 | 8,248.1 | - | - | 5,545.00 | - | - |
| | 가스공급설비 | | 100.0 | 25.0 | - | 39,670.00 | - | - |
| | 주유소 | | - | 2,410.6 | - | 2,045.00 | - | - |
| | 종교시설 | | 13,450.8 | 4,850.4 | - | - | - | - |
| | 체육시설 | | 6,600.1 | - | - | 33,813.00 | - | - |
| | 공용시설 | **계** | **74,820.8** | **35,295.0** | **-** | **34,313.00** | **-** | **-** |
| | | 공공업무 | 14,089.6 | 10,095.6 | - | 12,336.00 | - | - |
| | | 근린공공 | 17,985.2 | 3,656.1 | - | 9,670.00 | - | - |
| | | 철도역사 | - | 20,884.8 | - | - | - | - |
| | | 문화·의료·복지시설 | 40,282.6 | - | - | 12,307.00 | - | - |
| | | 보육시설 | 2,463.4 | 658.5 | - | - | - | - |
| | **소계** | | **2,387,060.1** | **1,985,252.8** | **1,500.0** | **4,368,337.30** | **269,194.5** | **84,256.3** |
| **투자유치용지** | | | **-** | **176,107.4** | **-** | **924,281.00** | **294,671.85** | **-** |
| **유보지** | | | **-** | **-** | **-** | **175,345.00** | **44,830.0** | **-** |
| **총합계** | | | **4,696,704.0** | **4,105,753.4** | **1,500.0** | **6,716,021.15** | **1,870,502.55** | **419,441.1** |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

○ 변경사유 : 골프장내 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주택계획 조정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변경에 따라 평균평형, 층수항목 삭제

■ 기정

| 구 분 | 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 (인) | 인구밀도 (인/ha) | 평균평형 (평) | 층수 (층) | 용적률 (%) | 비고 |
|---|---|---|---|---|---|---|---|---|
| 합 계 | 2,693,712.8 | 33,210 | 90,000 | 336.3 | - | - | - | |
| 단 독 | 513,734.4 | 1,635 | 4,432 | 86.3 | - | - | - | 근생제외 |
| 일반형 | 427,787.7 | 1,378 | 3,734 | 87.3 | 80~120 | - | - | 근생제외 |
| 블록형 | 85,946.7 | 257 | 698 | 81.1 | 100 | - | - | |
| 공 동 | 1,817,448.2 | 27,860 | 75,501 | 415.4 | - | - | - | |
| 60㎡ 이하 | 190,603.0 | 4,165 | 11,287 | 592.2 | 24 | - | 150~220 | |
| 60~85㎡ | 724,670.5 (68,726.1) | 11,981 (630) | 32,468 (1,707) | 448.0 (248.3) | 34 | - | 150~220 (105) | ( )는 연립주택용지 |
| 85㎡ 초과 | 902,174.7 | 11,714 | 31,746 | 351.9 | 45 | - | 150~220 | |
| 주상복합 | 230,157.2 | 3,360 | 9,105 | 395.6 | 35~50 | - | 310 | |
| 기 타 | 132,373.0 | 355 | 962 | 83.9 | - | - | - | 골프장내 주택단지 |

주) 1. 평균평형 : 지상부 공동주택의 분양면적 기준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산정된 것임

3. 평균평형, 층수, 용적률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4. 인구밀도는 순밀도이며 총밀도는 50.6인/ha로 산정됨

5. 인구밀도 산정시 주상복합용지 및 투자유치용지 주거면적 포함

■ 변경

| 구 분 | 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 (인) | 인구밀도 (인/ha) | 용적률 (%) | 비고 |
|---|---|---|---|---|---|---|
| 합 계 | 2,693,712.8 | 33,210 | 90,000 | 336.3 | - | |
| 단 독 | 513,734.4 | 1,635 | 4,432 | 86.3 | - | 근생제외 |
| 일반형 | 427,787.7 | 1,378 | 3,734 | 87.3 | - | 근생제외 |
| 블록형 | 85,946.7 | 257 | 698 | 81.1 | - | |
| 공 동 | 1,817,448.2 | 27,860 | 75,501 | 415.4 | - | |
| 60㎡ 이하 | 190,603.0 | 4,165 | 11,287 | 592.2 | 150~220 | |
| 60~ 85㎡ | 724,670.5 (68,726.1) | 11,981 (630) | 32,468 (1,707) | 448.0 (248.3) | 150~220 (105) | ( )는 연립주택용지 |
| 85㎡ 초과 | 902,174.7 | 11,714 | 31,746 | 351.9 | 150~220 | |
| 주상복합 | 230,157.2 | 3,360 | 9,105 | 395.6 | 310 | |
| 기 타 | 132,373.0 | 355 | 962 | 83.9 | - | 골프장내 주택단지 (264세대), 기타 91세대 유보 |

주) 1. 평균평형 : 지상부 공동주택의 분양면적 기준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산정된 것임

3. 평균평형, 층수, 용적률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4. 인구밀도는 순밀도이며 총밀도는 50.6인/ha로 산정됨

5. 인구밀도 산정시 주상복합용지 및 투자유치용지 주거면적 포함

다.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주상복합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연구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관광·위락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휴양용지【변경없음】
2) 유원지【변경없음】
3) 골프장【변경】
○ 사유 : 골프장내 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일부 조정

| 구 분 | 번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계 | - | - | 1,492,533.90 | 1,492,533.90 | - | |
| 골프장 | 1-1 | 경서동 533-16답 일원 | 742,945.20 | 742,945.20 | - | 골프장 |
| | 1-2 | 경서동 540-5답 일원 | 29,772.00 | 29,772.00 | - | 골프장주택단지, 골프장내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면적 조정 |
| | 1-2-1 | 경서동 540-8답 일원 | 5,766.00 | 5,765.98 | 감)0.02 | |
| | 1-2-2 | 경서동 540-8답 일원 | 6,132.00 | 6,132.01 | 증)0.01 | |
| | 1-2-3 | 경서동 540-8답 일원 | 6,763.00 | 6,763.00 | - | |
| | 1-2-4 | 경서동 540-8답 일원 | 7,017.00 | 7,016.98 | 감)0.02 | |
| | 1-2-5 | 경서동 540-8답 일원 | 362.00 | 362.00 | - | |
| | 1-2-6 | 경서동 540-8답 일원 | 3,732.00 | 3732.03 | 증)0.03 | |
| | 1-3 | 경서동 561-4답 일원 | 47,003.00 | 47,003.00 | - | 골프장주택단지, 골프장내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면적 조정 |
| | 1-3-1 | 경서동 561-4답 일원 | 7,764.00 | 7,763.76 | 감)0.24 | |
| | 1-3-2 | 경서동 561-4답 일원 | 7,039.00 | 7,039.23 | 증)0.23 | |
| | 1-3-3 | 경서동 561-4답 일원 | 8,258.00 | 8,257.97 | 감)0.03 | |
| | 1-3-4 | 경서동 561-4답 일원 | 8,035.00 | 8,034.87 | 감)0.13 | |
| | 1-3-5 | 경서동 561-4답 일원 | 9,393.00 | 9,392.83 | 감)0.17 | |
| | 1-3-6 | 경서동 561-4답 일원 | 893.00 | 893.00 | - | |
| | 1-3-7 | 경서동 561-4답 일원 | 5,621.00 | 5,621.34 | 증)0.34 | |
| | 2-1 | 경서동 553-3답 일원 | 617,215.70 | 617,215.70 | - | 골프장 |
| | 2-2 | 경서동 559-6답 일원 | 55,598.00 | 55,598.00 | - | 골프장주택단지, 골프장내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면적 조정 |
| | 2-2-1 | 경서동 559-3답 일원 | 8,127.00 | 8,127.00 | - | |
| | 2-2-2 | 경서동 559-3답 일원 | 6,216.00 | 6,216.00 | - | |
| | 2-2-3 | 경서동 559-3답 일원 | 8,128.00 | 8,128.00 | - | |
| | 2-2-4 | 경서동 559-3답 일원 | 8,509.00 | 8,509.00 | - | |
| | 2-2-5 | 경서동 559-3답 일원 | 8,741.00 | 8,741.00 | - | |
| | 2-2-6 | 경서동 559-3답 일원 | 8,768.00 | 8,768.00 | - | |
| | 2-2-7 | 경서동 559-3답 일원 | 723.00 | 723.00 | - | |
| | 2-2-8 | 경서동 559-3답 일원 | 6,386.00 | 6,386.00 | - | |

차. 투자유치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기타 관련계획【변경없음】

## 9. 교통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 구분 | 주 요 내 용 | |
|---|---|---|
| | 기 정 | 변 경 |
| 도로 | ○ 자동차전용도로 : 3개노선<br>○ 일반도로 : 303개노선<br>○ 특수도로 : 176개노선<br>○ 전체 : 482개노선, 133,777m | ○ 자동차전용도로 : 3개노선<br>○ 일반도로 : 303개노선<br>○ 특수도로 : 177개노선<br>○ 전체 : 483개노선, 133,824m |
| 철도 | ○ 변경없음 | ○ 변경없음 |
| 주차장 | ○ 변경없음 | ○ 변경없음 |
| 광장 | ○ 변경없음 | ○ 변경없음 |
| 복합환승센터 | ○ 변경없음 | ○ 변경없음 |
| 자동차정류장 | ○ 변경없음 | ○ 변경없음 |

2)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3) 광역교통 개선대책【변경없음】

## 10. 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 1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13. 관광·레저계획【변경】

1) 골프장 및 골프장 주택단지계획【변경】

○ 사유 : 골프장내 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일부 조정

| 구 분 | 번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계 | - | - | 1,492,533.90 | 1,492,533.90 | - | |
| 골프장 | 1-1 | 경서동 533-16답 일원 | 742,945.20 | 742,945.20 | - | 골프장 |
| | 1-2 | 경서동 540-5답 일원 | 29,772.00 | 29,772.00 | - | 골프장주택단지, 골프장내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면적 조정 |
| | 1-2-1 | 경서동 540-8답 일원 | 5,766.00 | 5,765.98 | 감)0.02 | |
| | 1-2-2 | 경서동 540-8답 일원 | 6,132.00 | 6,132.01 | 증)0.01 | |
| | 1-2-3 | 경서동 540-8답 일원 | 6,763.00 | 6,763.00 | - | |
| | 1-2-4 | 경서동 540-8답 일원 | 7,017.00 | 7,016.98 | 감)0.02 | |
| | 1-2-5 | 경서동 540-8답 일원 | 362.00 | 362.00 | - | |
| | 1-2-6 | 경서동 540-8답 일원 | 3,732.00 | 3732.03 | 증)0.03 | |
| 골프장 | 1-3 | 경서동 561-4답 일원 | 47,003.00 | 47,003.00 | - | 골프장주택단지, |

| 구 분 | 번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1-3-1 | 경서동 561-4답 일원 | 7,764.00 | 7,763.76 | 감)0.24 | 골프장내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면적 조정 |
| | 1-3-2 | 경서동 561-4답 일원 | 7,039.00 | 7,039.23 | 증)0.23 | |
| | 1-3-3 | 경서동 561-4답 일원 | 8,258.00 | 8,257.97 | 감)0.03 | |
| | 1-3-4 | 경서동 561-4답 일원 | 8,035.00 | 8,034.87 | 감)0.13 | |
| | 1-3-5 | 경서동 561-4답 일원 | 9,393.00 | 9,392.83 | 감)0.17 | |
| | 1-3-6 | 경서동 561-4답 일원 | 893.00 | 893.00 | - | |
| | 1-3-7 | 경서동 561-4답 일원 | 5,621.00 | 5,621.34 | 증)0.34 | |
| | 2-1 | 경서동 553-3답 일원 | 617,215.70 | 617,215.70 | - | 골프장 |
| | 2-2 | 경서동 559-6답 일원 | 55,598.00 | 55,598.00 | - | 골프장주택단지, 골프장내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면적 조정 |
| | 2-2-1 | 경서동 559-3답 일원 | 8,127.00 | 8,127.00 | - | |
| | 2-2-2 | 경서동 559-3답 일원 | 6,216.00 | 6,216.00 | - | |
| | 2-2-3 | 경서동 559-3답 일원 | 8,128.00 | 8,128.00 | - | |
| | 2-2-4 | 경서동 559-3답 일원 | 8,509.00 | 8,509.00 | - | |
| | 2-2-5 | 경서동 559-3답 일원 | 8,741.00 | 8,741.00 | - | |
| | 2-2-6 | 경서동 559-3답 일원 | 8,768.00 | 8,768.00 | - | |
| | 2-2-7 | 경서동 559-3답 일원 | 723.00 | 723.00 | - | |
| | 2-2-8 | 경서동 559-3답 일원 | 6,386.00 | 6,386.00 | - | |

2) 유원지계획【변경없음】

## 14. 공원·녹지계획【변경】

1) 공원계획【변경】

○ 사유 : 청라국제도시 공원녹지계획으로 인하여 지구경계부 일부 부지가 맹지가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변경

| 구분 | 주 요 내 용 | |
|---|---|---|
| | 기 정 | 변 경 |
| 문화공원 | ○ 3개소(336,072.7㎡) | ○ 변경없음 |
| 근린공원 | ○ 16개소(1,418,649.7㎡) | ○ 16개소(1,418,639.7㎡) |
| 어린이공원 | ○ 17개소(65,813.2㎡) | ○ 변경없음 |
| 소공원 | ○ 6개소(32,670.0㎡) | ○ 변경없음 |

2) 녹지계획【변경】

○ 사유 : 청라국제도시 공원녹지계획으로 인하여 지구경계부 일부 부지가 맹지가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변경, 도면오류수정

| 구분 | 주 요 내 용 | |
|---|---|---|
| | 기 정 | 변 경 |
| 완충녹지 | ○ 132개소(1,084,818.1㎡) | ○ 132개소(1,084,710.1㎡) |
| 경관녹지 | ○ 46개소(435,023.8㎡) | ○ 46개소(435,000.0㎡) |
| 연결녹지 | ○ 4개소(8,961.0㎡) | ○ 변경없음 |

3) 공공공지계획【변경】

○ 사유 : 가스공사 인천사옥 건축허가조건 반영에 따른 변경, 청라북서측 투기장 매립사업 준공(2015. 11)에 따라 기존 진출입로 사용목적 상실로 공공공지 35호 환원

| 구분 | 주 요 내 용 | |
|---|---|---|
| | 기 정 | 변 경 |
| 공공공지 | ○ 38개소(81,317.0㎡) | ○ 38개소(81,596.0㎡) |

4) 하천계획【변경없음】

5) 유수지시설계획【변경없음】

##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 16. 투자유치계획【변경없음】

## 17. 공공편익시설계획【변경】

1) 학교시설계획【변경없음】

2) 공용시설계획【변경없음】

3) 종교시설계획【변경】

4)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5) 하수도시설 계획【변경없음】

6) 전기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8) 생활폐기물자동잡하장 계획【변경없음】

9) 가스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10) 체육시설 계획【변경없음】

11) 통신공급설비 계획【신설】

| 구분 | 번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비 고 |
|---|---|---|---|---|
| 계 | - | 1 개 소 | 69 | |
| | 1 | 경서동 630-4전 일원 | 69 | 통신분기국사 |

18.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2. 토지조서 : 생략【변경없음】
23.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도(S=1:10,000) : 생략【변경없음】
24. 단계별 구분(변경)도(S=1:10,000) : 생략【변경없음】
25. 시행자별 구분(변경)도(S=1:10,000) : 생략【변경없음】
26. 개발계획(변경)도(S=1:10,000) : 생략【변경】
27.법 제7조2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1)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승인서 : 생략【변경】

##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③단계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골프장내 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주택계획 조정
○ 가스공사 인천사옥 건축허가 조건사항인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구경계 인근 부지 맹지 해소를 위한 공원·녹지 계획 변경
○ 8호 완충녹지 내 점용 중인 KT통신시설용지를 별도의 통신공급설비로 결정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의한 일부준공 사항 반영
○ 관리처분계획(업무용지 등) 누락 사항 수정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자금계획 수정
○ IHP 실시계획승인서 등 오류 수정
○ 골프장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 수정
○ 한국농어촌공사 요청에 따른 친환경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차량진출입불허) 수정
○ 기타 수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 용어 경미한 수정 등
○ 항만배후단지 남청라IC 연결도로 건설공사 협의요청사항 반영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 구 분 | | 기정(㎡) | 변경(㎡) | 증·감(㎡) | 구성비(%) | 비 고 |
|---|---|---|---|---|---|---|
| 상업시설용지 | 상업시설용지 | 151,663.65 | 151,663.65 | - | 1.7 | - |
| | 복합유통시설용지 | 163,406.20 | 163,406.20 | - | 1.8 | - |
| | 지원시설용지 | 62,218.00 | 62,218.00 | - | 0.7 | - |
| | 복합용지 | 33,058.00 | 33,058.00 | - | 0.4 | - |
| | **소 계** | 410,345.85 | 410,345.85 | - | 4.6 | - |
| **업무시설용지** | | 421,417.00 | 421,417.00 | - | 4.8 | - |
|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 | 506,974.00 | 506,974.00 | - | 5.6 | - |
| 산업시설용지 | 화훼산업용지 | 101,462.90 | 101,462.90 | - | 1.1 | - |
| | R&D 및 첨단산업용지 | 713,395.70 | 713,395.70 | - | 7.9 | - |
| |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 46,677.00 | 46,677.00 | - | 0.5 | - |
| | **소 계** | 861,535.60 | 861,535.60 | - | 9.5 | - |
| 관광위락시설용지 | 유 원 지 | 387,607.00 | 387,607.00 | - | 4.3 | - |
| | 휴 양 용 지 | 124,796.40 | 124,796.40 | - | 1.4 | - |
| | 골프장-골프장내주택용지 | 132,373.00 | 132,373.00 | - | 1.5 | - |
| | **소 계** | 644,776.40 | 644,776.40 | - | 7.2 | - |
| 공공시설용지 | 도 로 | 1,239,152.0 | 1,238,945.80 | 감)206.2 | 13.5 | 맹지해소를 위한 계획변경 등 |
| | 공 원 | 522,454.50 | 522,444.50 | 감)10.0 | 5.8 | 맹지해소를 위한 계획변경 |
| | 녹 지 | 977,904.90 | 977,773.10 | 감)131.8 | 10.9 | 맹지해소를 위한 계획변경 |
| | 공 공 공 지 | 56,871.00 | 57,150.00 | 증)279.0 | 0.6 | 가스공사 건축허가 조건(가감속차로) 반영 등 |
| | 광 장 | 238,610.00 | 238,610.00 | - | 2.7 | - |
| | 주 차 장 | 102,024.70 | 102,024.70 | - | 1.1 | - |
| | 공영차고지 | 21,835.00 | 21,835.00 | - | 0.2 | - |
| | 전기공급설비 | 13,485.00 | 13,485.00 | - | 0.2 | - |
|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 5,545.00 | 5,545.00 | - | 0.1 | - |
| | 가스공급설비 | 39,670.00 | 39,670.00 | - | 0.4 | - |
| | 하 천 | 1,426,565.00 | 1,426,565.00 | - | 15.9 | - |
| | 복합환승센터 | 7,500.00 | 7,500.00 | - | 0.1 | - |
| | 주 유 소 | 2,045.00 | 2,045.00 | - | - | - |
| | 체육시설 | 33,813.00 | 33,813.00 | - | 0.4 | - |

| | | | | | | |
|---|---|---|---|---|---|---|
| | 공공업무시설 | 12,336.00 | 12,336.00 | - | 0.1 | - |
| | 근린공공시설 | 9,670.00 | 9,670.00 | - | 0.1 | - |
| | 문화·의료·복지시설 | 12,307.00 | 12,307.00 | - | 0.1 | - |
| | 통신공급설비 | - | 69.00 | 증)69.0 | - | 통신분기국사 별도 결정 |
| | 소 계 | 4,721,788.10 | 4,721,788.10 | - | 52.2 | - |
| 유 보 지 | | 220,175.00 | 220,175.00 | - | 2.5 | |
| 투자유치용지 | | 1,218,952.85 | 1,218,952.85 | - | 13.6 | - |
| 합 계 | | 9,005,964.8 | 9,005,964.80 | - | 100.0 | - |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사유 : 골프장내 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주택계획 조정

■ 기정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수용세대 (세대) | 수용인구 (인) | 비 고 |
|---|---|---|---|---|---|
| 합 계 | 571,181.9 | 100.0 | 4,710 | 12,764 | 2.71인/호 |
| 기 타 | 132,373.0 | 17.9 | 355 | 962 | 골프장 내 주택단지 |

■ 변경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수용세대 (세대) | 수용인구 (인) | 비 고 |
|---|---|---|---|---|---|
| 합 계 | 571,181.9 | 100.0 | 4,710 | 12,764 | 2.71인/호 |
| 기 타 | 132,373.0 | 17.9 | 355 | 962 | 골프장 내 주택단지 (264세대)<br>기타 91세대 유보 |

3)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구 분 | 번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비 고 |
|---|---|---|---|---|
| 계 | - | - | 435,751.4<br>(421,417.0) | ( )단계내 면적 |
| 업무시설용지 | 1 | 경서동 610-2답 일원 | 56,428.0 | |
| | 2 | 경서동 610-5답 일원 | 68,449.0 | |
| | 3 | 경서동 609-3답 일원 | 28,132.4<br>(13,798.0) | ( )단계내 면적, 2016년 일부준공 |
| | 4 | 경서동 608-2답 일원 | 26,177.0 | |
| | 5 | 경서동 608-9답 일원 | 34,322.0 | |
| | 6 | 경서동 618-6답 일원 | 11,351.0 | |
| | 7 | 경서동 628-6답 일원 | 7,351.0 | |
| | 8 | 경서동 634-10답 일원 | 34,321.0 | |
| | 9 | 경서동 628-2답 일원 | 26,177.0 | |
| | 10 | 경서동 633-3답 일원 | 10,541.0 | |
| | 11 | 경서동 632-7답 일원 | 61,703.0 | |
| | 12 | 경서동 632-5답 일원 | 54,369.0 | |
| | 16 | 원창동 440-18잡 일원 | 2,970 | |

| 구 분 | 번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비 고 |
|---|---|---|---|---|
| | 17 | 원창동 440-19잡 일원 | 2,970 | |
| | 18 | 원창동 440-20잡 일원 | 3,250 | |
| | 19 | 원창동 440-23잡 일원 | 3,500 | |
| | 20 | 원창동 440-24잡 일원 | 3,740 | |

5)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6)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투자유치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7) 관광·위락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유원지【변경없음】

□ 휴양용지【변경없음】

□ 골프장용지【변경】

| 구 분 | 번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계 | - | - | 132,373.00 | 132,373.00 | - | |
| 골프장 | 1-2 | 경서동 540-5답 일원 | 29,772.00 | 29,772.00 | - | 골프장주택단지, 골프장내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면적 조정 2016년 일부준공 |
| | 1-2-1 | 경서동 540-8답 일원 | 5,766.00 | 5,765.98 | 감)0.02 | |
| | 1-2-2 | 경서동 540-8답 일원 | 6,132.00 | 6,132.01 | 증)0.01 | |
| | 1-2-3 | 경서동 540-8답 일원 | 6,763.00 | 6,763.00 | - | |
| | 1-2-4 | 경서동 540-8답 일원 | 7,017.00 | 7,016.98 | 감)0.02 | |
| | 1-2-5 | 경서동 540-8답 일원 | 362.00 | 362.00 | - | |
| | 1-2-6 | 경서동 540-8답 일원 | 3,732.00 | 3732.03 | 증)0.03 | |
| | 1-3 | 경서동 561-4답 일원 | 47,003.00 | 47,003.00 | - | 골프장주택단지, 골프장내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면적 조정 2016년 일부준공 |
| | 1-3-1 | 경서동 561-4답 일원 | 7,764.00 | 7,763.76 | 감)0.24 | |
| | 1-3-2 | 경서동 561-4답 일원 | 7,039.00 | 7,039.23 | 증)0.23 | |
| | 1-3-3 | 경서동 561-4답 일원 | 8,258.00 | 8,257.97 | 감)0.03 | |
| | 1-3-4 | 경서동 561-4답 일원 | 8,035.00 | 8,034.87 | 감)0.13 | |
| | 1-3-5 | 경서동 561-4답 일원 | 9,393.00 | 9,392.83 | 감)0.17 | |
| | 1-3-6 | 경서동 561-4답 일원 | 893.00 | 893.00 | - | |
| | 1-3-7 | 경서동 561-4답 일원 | 5,621.00 | 5,621.34 | 증)0.34 | |
| | 2-2 | 경서동 559-6답 일원 | 55,598.00 | 55,598.00 | - | 골프장주택단지, 골프장내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면적 조정 2016년 일부준공 |
| | 2-2-1 | 경서동 559-3답 일원 | 8,127.00 | 8,127.00 | - | |
| | 2-2-2 | 경서동 559-3답 일원 | 6,216.00 | 6,216.00 | - | |
| | 2-2-3 | 경서동 559-3답 일원 | 8,128.00 | 8,128.00 | - | |

| 구 분 | 번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2-2-4 | 경서동 559-3답 일원 | 8,509.00 | 8,509.00 | - | |
| | 2-2-5 | 경서동 559-3답 일원 | 8,741.00 | 8,741.00 | - | |
| | 2-2-6 | 경서동 559-3답 일원 | 8,768.00 | 8,768.00 | - | |
| | 2-2-7 | 경서동 559-3답 일원 | 723.00 | 723.00 | - | |
| | 2-2-8 | 경서동 559-3답 일원 | 6,386.00 | 6,386.00 | - | |

8)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 【변경】

■ 기정

| 류별 |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 98 | 58,126 | 1,239,152 | 43 | 20,140 | 497,990 | 29 | 18,156 | 490,854 | 26 | 19,830 | 325,660 |
| 자동차 전용 도로 | 계 | 3 | 6,516 | 208,236 | 1 | 1,419 | 43,421 | 1 | 4,184 | 140,164 | 1 | 913 | 24,651 |
| | 대로 | 3 | 6,516 | 208,236 | 1 | 1,419 | 43,421 | 1 | 4,184 | 140,164 | 1 | 913 | 24,651 |
| 일 반 도 로 | 계 | 81 | 50,397 | 1,093,326 | 37 | 18,112 | 448,479 | 22 | 13,496 | 344,558 | 22 | 18,789 | 300,289 |
| | 광로 | 3 | 1,438 | 68,180 | - | - | - | 1 | 1,066 | 53,300 | 2 | 372 | 14,880 |
| | 대로 | 17 | 14,404 | 440,294 | 6 | 4,455 | 157,289 | 6 | 6,468 | 195,980 | 5 | 3,481 | 87,025 |
| | 중로 | 58 | 34,201 | 581,312 | 28 | 13,303 | 287,650 | 15 | 5,962 | 95,278 | 15 | 14,936 | 198,384 |
| | 소로 | 3 | 354 | 3,540 | 3 | 354 | 3,540 | - | - | - | - | - | - |
| 보행자 전용 도로 | 계 | 14 | 1,213 | 12,942 | 5 | 609 | 6,090 | 6 | 476 | 6,132 | 3 | 128 | 720 |
| | 중로 | 3 | 332 | 4,980 | - | - | - | 3 | 332 | 4,980 | - | - | - |
| | 소로 | 11 | 881 | 7,962 | 5 | 609 | 6,090 | 3 | 144 | 1,152 | 3 | 128 | 720 |
| 가각 및 기타 | | - | - | -75,352 | - | - | - | - | - | - | - | - | - |

주) 가각, 가감속차로 등 면적 포함, 광장90 중복결정면적포함

주) 제2외곽지하차도 상부공간 경관녹지 중복결정 면적 제외

■ 변경

| 류별 |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 99 | 58,173 | 1,238,945.8 | 43 | 20,140 | 497,991 | 30 | 18,203 | 491,230 | 26 | 19,830 | 325,660 |
| 자동차 전용 도로 | 계 | 3 | 6,516 | 208,237 | 1 | 1,419 | 43,422 | 1 | 4,184 | 140,164 | 1 | 913 | 24,651 |
| | 대로 | 3 | 6,516 | 208,237 | 1 | 1,419 | 43,422 | 1 | 4,184 | 140,164 | 1 | 913 | 24,651 |
| 일 반 도 로 | 계 | 81 | 50,397 | 1,093,326 | 37 | 18,112 | 448,479 | 22 | 13,496 | 344,558 | 22 | 18,789 | 300,289 |
| | 광로 | 3 | 1,438 | 68,180 | - | - | - | 1 | 1,066 | 53,300 | 2 | 372 | 14,880 |
| | 대로 | 17 | 14,404 | 440,294 | 6 | 4,455 | 157,289 | 6 | 6,468 | 195,980 | 5 | 3,481 | 87,025 |
| | 중로 | 58 | 34,201 | 581,312 | 28 | 13,303 | 287,650 | 15 | 5,962 | 95,278 | 15 | 14,936 | 198,384 |
| | 소로 | 3 | 354 | 3,540 | 3 | 354 | 3,540 | - | - | - | - | - | - |
| 보행자 전용 도로 | 계 | 15 | 1,260 | 13,318 | 5 | 609 | 6,090 | 7 | 523 | 6,508 | 3 | 128 | 720 |
| | 중로 | 3 | 332 | 4,980 | - | - | - | 3 | 332 | 4,980 | - | - | - |
| | 소로 | 12 | 928 | 8,338 | 5 | 609 | 6,090 | 4 | 191 | 1,528 | 3 | 128 | 720 |
| 가각 및 기타 | | - | - | -75,935.2 | - | - | - | - | - | - | - | - | - |

주) 가각, 가감속차로 등 면적 포함, 광장90 중복결정면적포함

주) 제2외곽지하차도 상부공간 경관녹지 중복결정 면적 제외

◦ 도로(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광로 | 2 | 4 | 50 | 주간선 도로 | 16,180 (1,066) | 광로3-2 | 금곡동구역계 | 일반도로 | | 1970 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광로 | 3 | 3 | 40 | 국지도로 | 1,804 (9) | 대로 3-92 원창동 420-7 | 대로 1-17종점 | 일반도로 | | 1970 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광로 | 3 | 30 | 40-44 | 주간선 도 로 | 4,048 (363) | 중로3-191 원창동403-22 | 북측 구역계 경서동516-1 | 일반도로 | 14호 근린공원 | 1970 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1 | 14 | 35 | 주간선 도 로 | 14,447 (5) | 중로3-314 원창동 410-3 | 광로 2-7 | 일반도로 | | 1986 9.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1 | 16 | 35 | 국지도로 | 1,655 (19) | 광로 2-4 | 대로 3-93 원창동 420-7 | 일반도로 | | 1986 9.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1 | 17 | 35 | 보조간선 도 로 | 3,061 | 중로3-194 원창동434 | 광로3-3 | 일반도로 | | 1986 9.29 | |
| 기정 | 대로 | 1 | 54 | 35 | 보조간선 도 로 | 1,142 (193) | 중로3-269 경서동584 | 광로3-30 경서동608-11 | 일반도로 | 14호 공공공지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1 | 61 | 37 | 보조간선 도 로 | 682 | 중로3-270 경서동641-11 | 대로2-73 원창동433 | 일반도로 | 21호 근린공원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1 | 62 | 35 | 주간선 도 로 | 2,230 (495) | 광로3-13 | 대로2-73 경서동514 | 일반도로 | 58호 광장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1 | 63 | 30.6 | 주간선 도 로 | 4,544 (1,419) | 서측구역계 (청라2매립지구) | 원창동 31호광장 | 자 동 차 전용도로 | 심곡천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2 | 37 | 30 | 국지도로 | 1,429 (12) | 대로 1-7 | 중로3-314 원창동 409 | 일반도로 | | 1986 9.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2 | 38 | 30 | 국지도로 | 1,129 (152) | 광로3-9 | 광로2-4 원창동406-17 | 일반도로 | | 2005 8.24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2 | 67 | 30 | 보조간선 도 로 | 796 | 대로1-60 경서동633-2 | 대로1-54 경서동609-2 | 일반도로 | 3호 문화공원 | 2006 11.21 | |
| 변경 | 대로 | 2 | 67 | 30 | 보조간선 도 로 | 796 | 대로1-60 경서동633-2 | 대로1-54 경서동609-2 | 일반도로 | 3호 문화공원 | 2006 11.21 | 가감속차로 반영 |
| 기정 | 대로 | 2 | 73 | 30 | 보조간선 도 로 | 4,161 | 중로3-192 원창동434 | 북측구역계 경서동514 | 일반도로 | 2호 근린공원 | 2006 11.21 | |
| 변경 | 대로 | 2 | 73 | 30 | 보조간선 도 로 | 4,161 | 중로3-192 원창동434 | 북측구역계 경서동514 | 일반도로 | 2호 근린공원 | 2006 11.21 | 지구계변 맹지해소 |
| 기정 | 대로 | 2 | 93 | 34 | 보조간선 도로 | 485 | 대로3-92 원창동420-2 | 중로3-193 원창동421 | 일반도로 | | 2010 5.12 | |
| 기정 | 대로 | 2 | 94 | 33.5 | 주간선 도 로 | 4,184 | 중로3-191 원창동431 | 북측구역계 경서동522-12 | 자동차 전용도로 | 3호 문화공원 | 2006 11.21 | 경관녹지62~65 중복결정 |
| 기정 | 대로 | 2 | 95 | 30 | 집산도로 | 862 | 중로3-270 경서동 541-10 | 대로2-73 경서동542-8 | 일반도로 | | 2013 8.12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3 | 88 | 25 | 집산도로 | 962 | 대로1-60 경서동641-8 | 대로1-54 경서동601-2 | 일반도로 | 3호 문화공원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3 | 92 | 25 | 보조간선 도로 | 1,705 | 광로2-4 원창동410-13 | 대로1-17 원창동433 | 일반도로 | | 2006 11.21 | |
| 변경 | 대로 | 3 | 92 | 25 | 보조간선 도로 | 1,705 | 광로2-4 원창동410-13 | 대로1-17 원창동433 | 일반도로 | | 2006 11.21 | 지구계변 맹지해소 |
| 기정 | 대로 | 3 | 177 | 27~44.2 (27) | 주간선 도로 | 4,501 (913) | 광장505호 | 광장90호 | 자동차 전용도로 | | 2012 5.07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3 | 178 | 25 | 집산도로 | 242 | 대로2-67 경서동615-1 | 대로3-88 경서동612-6 | 일반도로 | 31호 주차장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3 | 179 | 25 | 집산도로 | 233 | 대로2-67 경서동629-1 | 대로3-88 경서동630-7 | 일반도로 | 32호 주차장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3 | 180 | 25 | 주간선 도로 | 339 | 중로1-444 원창동414-2 | 대로2-93 원창동420-3 | 일반도로 | | 2014 7.29 | |
| 기정 | 중로 | 1 | 180 | 20~46 | 집산도로 | 862 | 중로3-192 | 중로3-유3 | 일반도로 | | 2012 12.24 | |
| 기정 | 중로 | 1 | 252 | 20 | 집산도로 | 357 | 광로3-30 경서동618-11 | 중로1-254 경서동618-4 | 일반도로 | 25호 주차장 | 2006 11.21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253 | 20 | 집산도로 | 357 | 광로3-30<br>경서동628-11 | 중로1-254<br>경서동628-4 | 일반도로 | 27호<br>주차장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1 | 254 | 20 | 집산도로 | 680 | 대로1-60<br>경서동634-4 | 대로1-54<br>경서동608-4 | 일반도로 | 3호<br>문화공원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1 | 256 | 20 | 집산도로 | 186 | 중로3-202<br>경서동612-2 | 대로3-88<br>경서동612-6 | 일반도로 | 3호<br>문화공원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1 | 258 | 20 | 집산도로 | 186 | 중로3-202<br>경서동630-3 | 대로3-88<br>경서동630-7 | 일반도로 | 3호<br>문화공원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1 | 268 | 21.75 | 집산도로 | 1,015 | 중로3-203<br>경서동526 | 대로2-95<br>경서동542-40 | 일반도로 |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1 | 443 | 23 | 집산도로 | 573 | 대로2-93<br>원창동420-3 | 대로2-93<br>원창동417-7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1 | 444 | 21 | 보조간선도로 | 1,588 | 광로2-4<br>원창동401-20 | 대로3-92<br>원창동416-5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1 | 445 | 21 | 집산도로 | 1,948 | 대로2-38<br>원창동143-5 | 중로1-445<br>원창동405-19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1 | 446 | 21 | 집산도로 | 369 | 중로1-447<br>원창동400-3 | 중로1-447<br>원창동400-10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1 | 447 | 21 | 집산도로 | 348 | 중로1-51<br>원창동405-16 | 중로1-447<br>원창동399-23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1 | 448 | 23.5 | 집산도로 | 471 | 광로2-4<br>원창동410-11 | 대로2-38<br>원창동143-7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1 | 460 | 24 | 국지도로 | 451 | 중로2-751 | 소공원5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1 | 24 | 집산도로 | 67 | 대로2-73 | 중로1-460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2 | 24 | 집산도로 | 73 | 대로2-73 | 중로2-751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3 | 24 | 국지도로 | 71 | 중로1-180 | 중로2-751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4 | 20 | 집산도로 | 170 | 중로1-268<br>경서동 528-5 | 중로1-465<br>경서동528-6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5 | 20 | 집산도로 | 507 | 중로 3-270<br>경서동 533-20 | 중로 1-268<br>경서동 533-18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6 | 20 | 집산도로 | 359 | 대로 2-95<br>경서동 542-20 | 중로 1-468<br>경서동 563-8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7 | 20 | 집산도로 | 360 | 대로 2-95<br>경서동 541-3 | 중로 1-468<br>경서동 562-3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8 | 20 | 집산도로 | 757 | 중로 3-270<br>경서동 562-8 | 대로 2-73<br>경서동 563-6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9 | 20 | 집산도로 | 596 | 중로3-270<br>원창동488-35 | 대로2-73<br>원창동578-3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1 | 470 | 20 | 집산도로 | 268 | 중로1-471 | 대로2-73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1 | 471 | 20 | 집산도로 | 358 | 중로1-268 | 대로1-62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1 | 472 | 20 | 집산도로 | 176 | 중로1-268 | 대로1-62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1 | 473 | 20 | 집산도로 | 125 | 광로2-4<br>원창동410-12 | 중로1-448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1 | 474 | 24.6 | 국지도로 | 25 | 중로3-269 | 투자3-4 | 일반도로 | | 2015<br>11.09 | |
| 변경 | 중로 | 1 | 474 | 24.6 | 국지도로 | 25 | 중로3-269 | 투자3-4 | 일반도로 | | 2015<br>11.09 | 가감속차로 반영 |
| 기정 | 중로 | 2 | 390 | 15 | 국지도로 | 358 | 중로1-252<br>경서동618-10 | 중로1-254<br>경서동608-4 | 일반도로 | 25호<br>주차장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2 | 393 | 15 | 국지도로 | 358 | 중로1-253<br>경서동628-10 | 중로1-254<br>경서동634-4 | 일반도로 | 28호<br>주차장 | 2006<br>11.21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2 | 402 | 15 | 국지도로 | 2,188 | 대로2-73<br>경서동531 | 대로2-73<br>경서동570 | 일반도로 | 2호<br>경관녹지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2 | 403 | 15 | 국지도로 | 16 | 중로2-402<br>경서동545 | 서측 구역계<br>경서동675 | 일반도로 | 2호<br>경관녹지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2 | 404 | 15 | 국지도로 | 126 | 광로3-30<br>경서동548-11 | 경서동548-9 | 일반도로 | | 2009<br>4.2 | 2016년 일부준공 |
| 기정 | 중로 | 2 | 405 | 15~18 | 국지도로 | 506 | 광로3-30<br>경서동548-12 | 경서동560-4 | 일반도로 | | 2009<br>4.2 | 2016년 일부준공 |
| 기정 | 중로 | 2 | 750 | 16.5 | 국지도로 | 76 | 중로1-448<br>원창동196-11 | 원창동196-1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2 | 751 | 18 | 국지도로 | 535 | 중로1-462 | 중로1-462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2 | 754 | 15 | 집산도로 | 447 | 대로2-73 | 중로2-402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2 | 755 | 18 | 집산도로 | 241 | 중로1-471 | 대로2-73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2 | 756 | 18 | 집산도로 | 429 | 중로1-471 | 중로1-472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2 | 757 | 18 | 집산도로 | 341 | 중로3-270 | 중로1-472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2 | 758 | 15 | 집산도로 | 68 | 중로1-268 | 중로2-757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2 | 760 | 16.5 | 국지도로 | 127 | 광로2-4<br>원창동410-12 | 중로1-448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2 | 761 | 16 | 국지도로 | 146 | 광로3-30 | 시티타워 | 일반도로 | | 2015<br>11.09 | 시티타워와<br>연계하여 개발 |
| 기정 | 중로 | 3 | 191 | 12 | 보조간선<br>도 로 | 1,545<br>(652) | 대로1-63<br>원창동431 | 광장(남청라IC)<br>원창동425-1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3 | 192 | 12 | 보조간선<br>도로 | 883 | 광장<br>원창동43 | 서측구역계<br>(청라2매립지구) | 일반도로 | 22호<br>근린공원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3 | 193 | 12 | 보조간선<br>도 로 | 1,564<br>(669) | 대로1-63<br>원창동402-8 | 광장(남청라IC)<br>원창동425-1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3 | 194 | 12 | 보조간선<br>도로 | 892 | 서측구역계<br>(청라2매립지구) | 광장<br>원창동43 | 일반도로 | 107호<br>완충녹지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3 | 266 | 13 | 국지도로 | 227 | 중로1-447<br>원창동410-12 | 중로1-448<br>원창동409-5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3 | 267 | 13 | 국지도로 | 27 | 중로1-448<br>원창동409-6 | 원창동407-3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3 | 268 | 13 | 국지도로 | 34 | 중로1-450<br>원창동143-13 | 원창동406-26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3 | 269 | 14 | 보조간선<br>도 로 | 4,177 | 중로3-191<br>원창동431 | 북측구역계<br>경서동522-12 | 일반도로 | 3호<br>문화공원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3 | 270 | 14 | 보존간선<br>도로 | 4,194 | 중로3-191<br>원창동431 | 북측구역계<br>경서동522-12 | 일반도로 | 3호<br>문화공원 | 2006<br>11.21 | |
| 변경 | 중로 | 3 | 270 | 14 | 보존간선<br>도로 | 4,194 | 중로3-191<br>원창동431 | 북측구역계<br>경서동522-12 | 일반도로 | 3호<br>문화공원 | 2006<br>11.21 | 오류 수정 |
| 기정 | 중로 | 3 | 310 | 14 | 집산도로 | 22 | 대로2-73 | 유원지1<br>내부 주차장1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3 | 311 | 12 | 집산도로 | 1,062 | 중로3-192 | 인천로봇랜드<br>북측구역계 | 일반도로 | | 2012<br>12.24 | |
| 기정 | 중로 | 3 | 313 | 13 | 국지도로 | 142 | 대로3-180<br>원창동421-7 | 대2-93<br>원창동421-4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3 | 314 | 13 | 국지도로 | 1,453 | 원창동414-2 | 대로3-180<br>원창동414-2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3 | 315 | 13 | 국지도로 | 483 | 대로2-93<br>원창동420-4 | 대로3-180<br>원창동419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3 | 316 | 12 | 국지도로 | 19 | 대로2-93<br>원창동420-4 | 대로3-180<br>원창동419 | 일반도로 | | 2015<br>11.09 | |
| 기정 | 소로 | 1 | 35 | 10 | 국지도로 | 145 | 대로2-73<br>경서동643 | 서측 구역계<br>경서동509-17 | 일반도로 | | 2006<br>11.21 | |
| 기정 | 소로 | 1 | 36 | 10 | 국지도로 | 20 | 중로2-402<br>경서동570-2 | 서측 구역계<br>경서동570-2 | 일반도로 | | 2006<br>11.21 | |
| 기정 | 소로 | 1 | 73 | 10 | 국지도로 | 189 | 중로1-251 | 시티타워 | 일반도로 | | 2015<br>11.09 | 시티타워와<br>연계하여 개발 |
| 기정 | 중로 | 2 | 752 | 15 | 특수도로 | 177 | 중로2-751 | 중로2-751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2 | 753 | 15 | 특수도로 | 57 | 중로2-751 | 중로2-752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2 | 759 | 15 | 특수도로 | 98 | 중로2-756 | 대로1-62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소로 | 1 | 37 | 10 | 특수도로 | 206<br>(30) | 중로3-202<br>경서동584 | 중로1-231<br>경서동600-3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06<br>11.21 | |
| 기정 | 소로 | 1 | 49 | 10 | 특수도로 | 132 | 광로2-4<br>원창동400-18 | 중로1-445<br>원창동400-10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소로 | 1 | 50 | 10 | 특수도로 | 195 | 중로1-445<br>원창동400-18 | 중로1-447<br>원창동400-10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소로 | 1 | 51 | 10 | 특수도로 | 80 | 중로1-445<br>원창동400-19 | 원창동4-10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소로 | 1 | 74 | 10 | 특수도로 | 172 | 광장5 | 중로1-180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소로 | 2 | 16 | 8 | 특수도로 | 41 | 광로2-4<br>원창동410-10 | 중로3-266<br>원창동410-12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소로 | 2 | 17 | 8 | 특수도로 | 73 | 중로1-448<br>원창동410-12 | 중로3-266<br>원창동410-12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소로 | 2 | 18 | 8 | 특수도로 | 30 | 중로1-448<br>원창동410-12 | 중로3-266<br>원창동410-12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누락<br>정정 | 소로 | 2 | 19 | 8 | 특수도로 | 47 | 중로3-313<br>원창동432-3 | 완충녹지116<br>원창동432-3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소로 | 3 | 92 | 6 | 특수도로 | 43<br>(27) | 중로3-202<br>경서동583-1 | 소로1-1<br>경서동589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06<br>11.21 | |
| 기정 | 소로 | 3 | 227 | 6 | 특수도로 | 77 | 대로2-73 | 중로1-460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소로 | 3 | 228 | 4 | 특수도로 | 24 | 철도시설1<br>경서동519-22 | 북측구역계<br>경서동519-22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4<br>7.29 | 2016년 일부준공 |

□ 주차장【변경없음】
□ 복합환승센터【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공원【변경】

| 구 분 | 번 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계 | - | 13개소 | 522,454.5 | 522,444.5 | 감)10.0 | |
| 근린공원 | 소 계 | 7개소 | 489,784.5 | 489,774.5 | 감)10.0 | |
| | 2 | 경서동 산252-1임 일원 | 192,877.0 | 192,877.0 | - | |
| | 3 | 경서동 산251-7임 일원 | 226,460.0 | 226,450.0 | 감)10.0 | 지구계변 맹지해소 |
| | 30 | 원창동 420-3전 일원 | 11,171.0 | 11,171.0 | - | |
| | 31 | 원창동 401-4전 일원 | 11,509.0 | 11,509.0 | - | |
| | 32 | 원창동 400-8전 일원 | 22,105.0 | 22,105.0 | - | |
| | 34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0,304.0 | 10,304.0 | - | |
| | 35 | 서구 경서동 528답 일원 | 15,358.5 | 15,358.5 | - | |
| 소공원 | 소 계 | 6개소 | 32,670 | 32,670 | - | |
| | 2 | 원창동 406-26전 일원 | 7,758.0 | 7,758.0 | - | |
| | 3 | 원창동 420전 일원 | 9,661.0 | 9,661.0 | - | |
| | 4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2,404.0 | 2,404.0 | - | |
| | 5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4,104.0 | 4,104.0 | - | |
| | 6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3,006.0 | 3,006.0 | - | |
| | 7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5,737.0 | 5,737.0 | - | |

□ 녹지 【변경】

| 구 분 | 번 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계 | - | 78개소 | 1,043,275.5<br>(977,904.9) | 1,043,143.7<br>(977,773.1) | 감)131.8 | ( )단계 내 면적 |
| 완충녹지 | 소 계 | 41개소 | 740,815.5<br>(675,444.9) | 740,707.5<br>(675,336.9) | 감)108.0 | ( )단계 내 면적 |
| | 1 | 경서동 547-11답 일원 | 22,449.0 | 22,445.0 | 감)4.0 | 도면오류 수정 |
| | 2 | 경서동 630-2답 일원 | 32,233.0 | 32,233.0 | - | |
| | 3 | 경서동 662-3전 일원 | 37,148.0 | 37,148.0 | - | |
| 완충녹지 | 8 | 경서동 632-4답 일원 | 11,152.0 | 11,083.0 | 감)69.0 | 통신공급설비 신설 |
| | 9 | 경서동 488-32임 일원 | 11,074.0 | 11,074.0 | - | |
| | 10 | 경서동 488-19잡 일원 | 7,808.9<br>(4,530.0) | 7,808.9<br>(4,530.0) | - | ( )단계 내 면적 |
| | 11 | 경서동 583-2답 일원 | 3,632.0 | 3,632.0 | - | |

| 구 분 | 번 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12 | 경서동 589-3답 일원 | 7,421.3<br>(3,314.0) | 7,421.3<br>(3,314.0) | - | ( )단계 내 면적 |
| | 13 | 경서동 519-8답 일원 | 54,080.2<br>(14,941.0) | 54,045.2<br>(14,906.0) | 감)35.0 | ( )단계 내 면적<br>가감속차로 변경 |
| | 14 | 경서동 518-13답 일원 | 8,254.0 | 8,254.0 | - | 완14 중 5,409㎡ :<br>2016년 일부준공 |
| | 15 | 경서동 537-2답 일원 | 132,680.2<br>(113,835.0) | 132,680.2<br>(113,835.0) | - | ( )단계 내 면적 |
| | 96 | 원창동 400전 일원 | 66,861.0 | 66,861.0 | - | |
| | 97 | 원창동 406-26전 일원 | 4,253.0 | 4,253.0 | - | |
| | 98 | 원창동 410-8전 일원 | 1,463.0 | 1,463.0 | - | |
| | 99 | 원창동 404-13전 일원 | 22,908.0 | 22,908.0 | - | |
| | 100 | 원창동 429-6전 일원 | 1,861.0 | 1,861.0 | - | |
| | 101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69,408.0 | 69,408.0 | - | |
| | 104 | 원창동 429-4전 일원 | 11,024.0 | 11,024.0 | - | |
| | 107 | 원창동 417-11전 일원 | 10,861.0 | 10,861.0 | - | |
| | 115 | 원창동 398-29전 일원 | 97,756.0 | 97,756.0 | - | |
| | 116 | 원창동 422-11전 일원 | 30,721.0 | 30,721.0 | - | |
| | 117 | 원창동 416-5잡 일원 | 3,075.0 | 3,075.0 | - | |
| | 118 | 원창동 399-40도 일원 | 2,577.0 | 2,577.0 | - | |
| | 124 | 원창동 404-13전 일원 | 16,872.0 | 16,872.0 | - | |
| | 126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745.0 | 1,745.0 | - | |
| | 127 | 경서동 519-22도 일원 | 7,187.0 | 7,187.0 | - | 2016년 일부준공 |
| | 128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153.0 | 1,153.0 | - | |
| | 129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2,654.0 | 2,654.0 | - | |
| | 130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4,120.0 | 4,120.0 | - | |
| | 131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2,384.0 | 2,384.0 | - | |
| | 132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5,603.0 | 5,603.0 | - | |
| 완충녹지 | 133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2,208.0 | 2,208.0 | - | |
| | 134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463.0 | 463.0 | - | |

| 구 분 | 번 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135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856.0 | 1,856.0 | - | |
| | 136 | 원창동 410-21전 일원 | 23,683.0 | 23,683.0 | - | |
| | 137 | 원창동 417-7전 일원 | 1,280.0 | 1,280.0 | - | |
| | 138 | 원창동 420-3전 일원 | 2,451.0 | 2,451.0 | - | |
| | 139 | 원창동 420-3전 일원 | 1,321.0 | 1,321.0 | - | |
| | 140 | 경서동 521-2답 일원 | 3,956.9 | 3,956.9 | - | |
| | 141 | 경서동 522-1답 일원 | 4,480.5 | 4,480.5 | - | |
| | 142 | 경서동 522-6답 일원 | 6,697.5 | 6,697.5 | - | |
| 경관녹지 | 소계 | 33개소 | 293,499.0 | 293,475.2 | 감)23.8 | |
| | 1 | 경서동 1514도 일원 | 1,506.0 | 1,506.0 | - | |
| | 3 | 경서동 563-1답 일원 | 4,516.0 | 4,516.0 | - | |
| | 12 | 원창동 431천 일원 | 1,321.0 | 1,321.0 | - | |
| | 25 | 원창동 420-5전 일원 | 227.0 | 227.0 | - | |
| | 26 | 원창동 420-8전 일원 | 4,067.0 | 4,067.0 | - | |
| | 27 | 원창동 424-2도 일원 | 645.0 | 642.9 | 감)2.1 | 자구계변 맹지해소 |
| | 29 | 원창동 424-2도 일원 | 272.0 | 272.0 | - | |
| | 30 | 원창동 424-2도 일원 | 1,013.0 | 1,013.0 | - | |
| | 31 | 원창동 427전 일원 | 8,158.3 | 8,136.6 | 감)21.7 | 자구계변 맹지해소 |
| | 32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64,393.0 | 64,393.0 | - | |
| | 33 | 원창동 432제 일원 | 462.0 | 462.0 | - | |
| | 34 | 원창동 434제 일원 | 1,078.0 | 1,078.0 | - | |
| | 35 | 경서동 509-18임 일원 | 1,262.0 | 1,262.0 | - | |
| | 36 | 경서동 574-9답 일원 | 3,095.7 | 3,095.7 | - | |
| | 38 | 원창동 426-4전 일원 | 104,783.0 | 104,783.0 | - | |
| | 46 | 경서동 574-3답 일원 | 5,550.0 | 5,550.0 | - | |
| | 47 | 경서동 667-4전 일원 | 8,771.0 | 8,771.0 | - | |

| 구 분 | 번 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48 | 원창동 426전 일원 | 13,519.0 | 13,519.0 | - | |
| | 52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018.0 | 1,018.0 | - | |
| | 53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586.0 | 586.0 | - | |
| | 54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329.0 | 329.0 | - | |
| | 55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341.0 | 341.0 | - | |
| | 56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324.0 | 1,324.0 | - | |
| | 57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692.0 | 1,692.0 | - | |
| | 58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239.0 | 1,239.0 | - | |
| | 59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443.0 | 1,443.0 | - | |
| | 60 | 경서동 542-40답 일원 | 4,097.0 | 4,097.0 | - | |
| | 61 | 경서동 507전 일원 | 14,150.0 | 14,150.0 | - | |
| | 62 | 경서동 산253-1임 일원 | 9,687.0 | 9,687.0 | - | |
| | 63 | 경서동 612-1답 일원 | 3,544.0 | 3,544.0 | - | |
| | 64 | 경서동 641-6잡 일원 | 6,478.0 | 6,478.0 | - | |
| | 65 | 경서동 662전 일원 | 11,570.0 | 11,570.0 | - | |
| | 67 | 경서동 662전 일원 | 11,362.0 | 11,362.0 | - | |
| 연결녹지 | 소계 | 4개소 | 8,961.0 | 8,961.0 | - | |
| | 1 | 경서동 630답 일원 | 5,207.0 | 5,207.0 | - | |
| | 8 | 원창동 420-5전 일원 | 1,186.0 | 1,186.0 | - | |
| | 9 | 원창동 417-6전 일원 | 1,322.0 | 1,322.0 | - | |
| | 10 | 원창동 420-5전 일원 | 1,246.0 | 1,246.0 | - | |

□ 광장【변경없음】

□ 공공공지【변경】

| 구 분 | 번 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계 | - | 17개소 | 56,871.0 | 57,150.0 | 증)279.0 | |
| 공공공지 | 1 | 경서동 601-1답 일원 | 1,388.0 | 1,388.0 | - | |
| | 2 | 경서동 609-4구 일원 | 3,846.0 | 3,846.0 | - | |
| | 3 | 경서동 615-1답 일원 | 288.0 | 288.0 | - | 2016년 일부준공 |
| | 4 | 경서동 629-1답 일원 | 435.0 | 435.0 | - | 2016년 일부준공 |
| | 5 | 경서동 633-2답 일원 | 2,897.0 | 2,897.0 | - | |
| | 6 | 경서동 641-5잡 일원 | 1,416.0 | 1,416.0 | - | |
| | 7 | 경서동 609-2답 일원 | 3,313.0 | 3,178.0 | 감)135.0 | 가스공사 인천사옥 건축허가조건(가감속차로) 반영 2016년 일부준공 |
| | 8 | 경서동 634답 일원 | 3,217.0 | 3,217.0 | - | 2016년 일부준공 |
| | 9 | 경서동 634-2답 일원 | 577.0 | 577.0 | - | |
| | 10 | 경서동 634-9답 일원 | 3,382.0 | 3,382.0 | - | 2016년 일부준공 |
| | 13 | 경서동 608-10답 일원 | 3,524.0 | 3,524.0 | - | |
| | 14 | 경서동 608-3답 일원 | 593.0 | 593.0 | - | |
| | 34 | 원창동 410-11전 일원 | 1,563.0 | 1,563.0 | - | |
| | 35 | 경서동 545제 일원 | 21,957.0 | 22,371.0 | 증)414.0 | 투기장 진출입로 환원 |
| | 40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5,946.0 | 5,946.0 | - | |
| | 42 | 원창동 421-2전 일원 | 936.0 | 936.0 | - | |
| | 43 | 경서동 522-39답 일원 | 1,593.0 | 1,593.0 | - | |

□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변경없음】

□ 통신공급설비【신설】

| 구 분 | 번 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비 고 |
|---|---|---|---|---|
| 계 | - | 1 개 소 | 69 | |
| 통신공급설비 | 1 | 경서동 630-4답 일원 | 69 | 분기국사 |

□ 하천 【변경없음】
□ 복합환승센터 【변경없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변경없음】
□ 체육시설 【변경없음】
□ 공공업무시설 【변경없음】
□ 근린공공시설 【변경】

| 구 분 | 번 호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비 고 |
|---|---|---|---|---|
| 계 | - | 1 개 소 | 69 | |
| 근린공공시설 | 1 | 경서동 618-3답 일원 | 3,000.1<br>(1,950.0) | ( ) 단계내 면적 |
| | 2 | 경서동 628-3답 일원 | 3,000.0 | 근공2-1(1,500㎡): 2016년 일부준공 |
| | 13 | 경서동 618-3답 일원 | 2,000.0 | |
| | 14 | 경서동 628-3답 일원 | 2,000.0 | |
| | 15 | 경서동 43-1제 일원 | 360.0 | |
| | 18 | 경서동 358-1도 일원 | 360.0 | |

□ 문화·의료·복지시설 【변경없음】

9) 유보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기간
-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 사업의 준공시점에 대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상 개발사업 단계인 2단계로 구분
- 단계별 시행계획 : 2단계

◦ 사업의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단계 구분(변경없음)
- 2-①단계 : 주민 기 입주지역은 대해 2012년 12월 내 정상 준공
- 2-②단계 :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
- 2-③단계 : 국제업무지구 등 투자유치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 변경 유연성확보를 필요로 하는 지역 및 화훼단지, 로봇랜드, IHP 등 개발사업 지연구역은 장기적으로 2018년 12월에 준공
- 시행자별 사업계획, 단지조성공사 수행여건(토량확보 등)을 고려하여 2-①단계, 2-②단계, 2-③단계로 구분

| 단계별 시행계획 | | 시행자 | 면적(㎡) | 목표년도 | 비고 |
|---|---|---|---|---|---|
| 2단계 | 계 | - | 17,809,922.2 | 2018년 | |
| | 2-①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 4,696,704.0 | 2012년 | |
| | 2-②단계 | 인천광역시 | 1,500.0 | 2015년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4,105,753.4 | | |
| | 2-③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 6,716,021.15 | 2018년 | |
| | | 한국농어촌공사 | 419,441.1 | | |
| | | 인천광역시 | 1,870,502.55 | | |

◦ 2-③단계 중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성 및 공급이 완료되어 사업 준공이 필요한 부지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일부준공 조치를 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제47조)

| 단계별 시행계획 | | 면적(㎡) | | | 목표년도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2단계 | 계 | 17,809,922.2 | 17,809,922.2 | - | 2018년 | |
| | 2-①단계 | 4,696,704.0 | 4,696,704.0 | - | 2012년 | 기준공 |
| | 2-②단계 | 4,107,253.4 | 4,107,253.4 | - | 2015년 | 기준공 |
| | 2-③단계 | 9,005,964.8 | 9,005,964.8 | - | 2018년 | |
| | 2016년 일부준공 | - | 184,040.0 | - | 2016년 | |
| | 2018년 준공 | | 8,821,924.8 | | 2018년 | |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변경】

6. 지구단위계획 : 붙임2【변경】

7.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해당사항없음】

8.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구분 | 사업시행자 명칭 | | 사업시행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 이 재 영 |
| |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박 상 우 |
| -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기정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487) | 이 상 무 |
| | | 변경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 이 상 무 |
| - | 인천광역시 시장 | 기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유 정 복 |

9. 위치도·계획평면도(S=1/10,000) : 생략【변경】

10. 용지도(S=1/2,400)·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 : 생략【변경】

11.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가. 재원조달계획계획【변경없음】

나.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변경】

■ 기 정

(단위 : 억원)

| 구 분 | | 계 | 연차별 투자계획 | | | | | | | | | | | | 비고 |
|---|---|---|---|---|---|---|---|---|---|---|---|---|---|---|---|
| | |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 |
| 투자계 | | 61,753 | 794 | 7,192 | 1,415 | 1,255 | 3,166 | 4,126 | 4,725 | 4,908 | 8,672 | 8,863 | 6,550 | 5,553 | 4,534 | |
| 투자계획 | 용지비 | 19,970 | 793 | 7,147 | 1,378 | 775 | 1,122 | 87 | 476 | 846 | 1,022 | 1,798 | 2,069 | 1,677 | 780 | |
| | 조성비 | 41,783 | 1 | 45 | 37 | 480 | 2,044 | 4,039 | 4,249 | 4,062 | 7,650 | 7,065 | 3,260 | 3,876 | 4,975 | |
| 회수계획 | | 64,105 | 0 | 0 | 688 | 5,696 | 15,321 | 12,910 | 9,743 | 2,870 | 2,137 | 2,228 | 1,725 | 1,028 | 9,758 | |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변 경

(단위 : 억원)

| 구 분 | | 계 | 연차별 투자계획 | | | | | | | | | | | | | | 비고 |
|---|---|---|---|---|---|---|---|---|---|---|---|---|---|---|---|---|---|
| | |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이후 | - |
| 투자계 | | 60,647 | 794 | 7,192 | 1,415 | 955 | 2,466 | 3,126 | 3,725 | 3,608 | 7,172 | 4,259 | 3,192 | 2,597 | 1,697 | 1,817 | 6,083 | 10,549 | |
| 투자계획 | 용지비 | 19,014 | 793 | 7,147 | 1,378 | 775 | 1,122 | 87 | 476 | 846 | 1,022 | 87 | 481 | 844 | 356 | 258 | 1,366 | 1,976 | |
| | 조성비 | 41,633 | 1 | 45 | 37 | 180 | 1,344 | 3,039 | 3,249 | 2,762 | 6,150 | 4,172 | 2,711 | 1,753 | 1,341 | 1,559 | 4,717 | 8,573 | |
| 회수계획 | | 64,104 | 0 | 0 | 688 | 5,696 | 15,321 | 12,910 | 9,743 | 2,870 | 2,137 | 2,228 | 1,725 | 1,028 | 3,236 | 2,570 | 1,699 | 2,253 | |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다. 인천로봇랜드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변경없음】

라. 한국농어촌공사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변경없음】

## 12.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13.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근거규정【변경없음】

나.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변경없음】

다.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변경없음】

라. 처분시기 및 투기방지대책【변경없음】

마. 대금(선수금) 납부에 관한사항【변경없음】

바.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변경】

| 처분대상토지 구분 | | | 면적(㎡) 기정 | 면적(㎡) 변경 | 면적(㎡) 증·감 | 처분 착수 시기 |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 처분방법 및 조건 | 처분가격 결정방법 |
|---|---|---|---|---|---|---|---|---|---|
| 합 계 | | | 9,005,964.8 | 9,005,964.8 | - | - | - | - | - |
| 공공시설용지 | 전기공급설비 | | 13,485.0 | 13,485.0 | - | 2005 | 한국전력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 | 가스공급설비 | | 39,670 | 39,670 | - | 2010 | 가스공사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 | 통신공급설비 | | - | 69.0 | 증)69.0 | 2016 | 실수요자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 | 주유소 | | 2,045.0 | 2,045.0 | - | 2007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 주차장 (주차장43, 44제외) | | 68,059.4 | 68,059.4 | - | 2013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 | | | | | | 외국인투자자, 국가·지자체 | 수의계약 | 감정가격이하 (조성원가이하) |
| | 주차장43 | | 31,365.0 | 31,365.0 | - | 인천광역시(위탁:인천로봇랜드) 사업시행 | | | |
| | 주차장44 | | 2,600.3 | 2,600.3 | - | 2015 | 관리기관 | 무상양여 | 무상양여 |
| | 공영차고지 | | 21,835.0 | 21,835.0 | - | 2013 | 국가·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이하 |
| | | | | | | | 실수요자 | 추첨 | 감정가격 |
| | 공용시설 | 복합환승센터 | 7,500.0 | 7,500.0 | - | 2010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지방공사 | 수의계약 |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이하 |
| | | | | | |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 | 공공업무시설 | 12,336.0 | 12,336.0 | - | 2007 | 국가·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이하 |
| | | 근린공공시설 | 8,950.0 | 8,950.0 | - | 2007 | 국가·지자체 | 수의계약 | |
| | | | | | |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 | 문화·의료·복지시설 | 12,307.0 | 12,307.0 | - | 2009 | 국가·지자체,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이하 |
| | | | | | |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공공시설용지 | 체육시설 | | 33,813.0 | 33,813.0 | - | 2010 | 관리기관 | 무상양여 | 무상양여 |
| | 근린공공시설 (공촌천·심곡천 수문관리동 (공공15, 공공18)) | | 720.0 | 720.0 | - | 준공시 | 관리기관 | 무상양여 | 무상양여 |
| | 공원 | | 522,454.50 | 522,444.50 | 감)10.0 | | | | |
| | 녹지 | | 977,904.90 | 977,773.10 | 감)131.8 | | | | |
| | 공공공지 | | 56,871.0 | 57,150.0 | 증)279.0 | | | | |
| | 도로 | | 1,099,858.0 | 1,099,651.8 | 감)206.2 | | | | |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 | 5,545.0 | 5,545.0 | - | | | | |

| 처분대상토지 | | | | | 처분착수시기 |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 처분방법 및 조건 | 처분가격 결정방법 |
|---|---|---|---|---|---|---|---|---|
| 구분 | | 면적 (㎡) | | | |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
| | 하천 | 1,426,565.0 | 1,426,565.0 | - | | | | |
| | 광장 | 29,001.0 | 29,001.0 | - | | | | |
| | 광장 (남청라IC) | 209,609.0 | 209,609.0 | - | | 국가·지자체 | 수의계약 |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의함 |
| | 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 139,294.0 | 139,294.0 | - | | | | |
| 업무시설용지 | 업무시설용지 (로봇랜드) | 16,430.0 | 16,430.0 | - | 인천광역시(위탁:인천로봇랜드) 사업시행 | | | |
| 업무시설용지 | 업무시설용지 | 404,987.0 | 404,987.0 | - | 2013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 감정가격이하 (조성원가이하) |
| | | | | |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상업시설용지 | 상업시설용지 (로봇랜드) | 66,819.0 | 66,819.0 | - | 인천광역시(위탁:인천로봇랜드) 사업시행 | | | |
| 상업시설용지 | 테마파크 관리지원 | 40,835.0 | 40,835.0 | - | 인천광역시(위탁:인천로봇랜드) 사업시행 | | | |
| 상업시설용지 | 복합유통시설용지 | 163,406.2 | 163,406.2 | - | 2013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 감정가격이하 (조성원가이하) |
| 상업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 21,383.0 | 21,383.0 | - |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상업시설용지 | 상업시설용지 (친환경복합단지) | 40,623.8 | 40,623.8 | - | 2015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감정가격 |
| 상업시설용지 | 상업시설용지 | 44220.85 | 44220.85 | - | 2006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 | | | |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이하 또는 조성원가이하 공급 가능<br>※ 생활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급<br>※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업무용지에 한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 가능 | | | |
| 상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 33,058.0 | 33,058.0 | - | 2015 |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 | 감정가격 이하 또는 조성원가 이하 (단, 공모에 의한 경우 공모가격 ) |
| 산업시설용지 | 화훼산업용지 | 101,462.9 | 101,462.9 | - | 2015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조성원가 이하 |
| 산업시설용지 | R&D 및 첨단산업용지 (장기임대 포함) | 586,489.0 | 586,489.0 | - | 2013 | 외국인투자자 | 추첨 또는 수의계약 | 감정가격 이하 (조성원가 이하) |
| | | | | | | 실수요자 | 추첨 | 조성원가 기준 |
| | | | | | ※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 | | | |

| 처분대상토지 구분 | 면적(㎡) 기정 | 면적(㎡) 변경 | 면적(㎡) 증·감 | 처분 착수 시기 |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 처분방법 및 조건 | 처분가격 결정방법 |
|---|---|---|---|---|---|---|---|
| | | | | |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R&D 및 첨단산업용지에 한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수 있도록 함 | | |
| R&D 및 첨단산업용지 (첨단산업집적센터) | 58,605.0 | 58,605.0 | - | | 실수요자 | 추첨 | 감정가격 |
| R&D 및 첨단산업용지 (친환경복합단지) | 68,301.7 | 68,301.7 | - | 2015 | 실수요자 | 경쟁입찰 또는 추첨 | 조성원가 이하 |
|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 46,677.0 | 46,677.0 | - | 인천광역시(위탁:인천로봇랜드) 사업시행 | | | |
| 유원지 | 387,607.0 | 387,607.0 | - | 인천광역시(위탁:인천로봇랜드) 사업시행 | | | |
| 휴양용지 | 124,796.4 | 124,796.4 | - | 2014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
|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 506,974.0 | 506,974.0 | - |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가 한국GM 유치 | | | |
| 유보지 | 220,175.0 | 220,175.0 | - | 용도 미지정(향후 인허가 변경에 의함) | | | |
| 관광위락시설용지 - 골프장 (골프장내주택단지) | 132,373.0 | 132,373.0 | - | 2006 | ※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설립자 : 수의계약<br>- 분양 : 감정가격이하 또는 조성원가 이하<br>- 임대 : 감정가격이하 또는 조성원가 이하<br>※ 국가·지자체 :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의함 | | |
| 투자유치용지 | 1,218,952.85 | 1,218,952.85 | - | | | | |

주) 1. 실시계획승인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공급토지의 위치, 공급규모, 면적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동 사항이 기본적인 처분계획승인 내용에 부합되는 때에는 별도의 처분계획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본건 승인내용에 준하여 시행함.

14.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변경없음】

15.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6. 공공시설 등의 설차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및 계획서【변경】 : 생략

1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18.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9.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20. 골프장 주택단지 조성계획 【변경】: 생략

## Ⅳ. 승인관련 지형도면

○ 지형도면 : 게재생략

## Ⅴ. 관련 도서의 열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61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23)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 : //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1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③단계 실시계획(변경)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 기정

| 류별 |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계 | | 98 | 58,126 | 1,239,152 | 43 | 20,140 | 497,990 | 29 | 18,156 | 490,854 | 26 | 19,830 | 325,660 |
| 자동차전용도로 | 계 | 3 | 6,516 | 208,236 | 1 | 1,419 | 43,421 | 1 | 4,184 | 140,164 | 1 | 913 | 24,651 |
| | 대로 | 3 | 6,516 | 208,236 | 1 | 1,419 | 43,421 | 1 | 4,184 | 140,164 | 1 | 913 | 24,651 |
| 일반도로 | 계 | 81 | 50,397 | 1,093,326 | 37 | 18,112 | 448,479 | 22 | 13,496 | 344,558 | 22 | 18,789 | 300,289 |
| | 광로 | 3 | 1,438 | 68,180 | - | - | - | 1 | 1,066 | 53,300 | 2 | 372 | 14,880 |
| | 대로 | 17 | 14,404 | 440,294 | 6 | 4,455 | 157,289 | 6 | 6,468 | 195,980 | 5 | 3,481 | 87,025 |
| | 중로 | 58 | 34,201 | 581,312 | 28 | 13,303 | 287,650 | 15 | 5,962 | 95,278 | 15 | 14,936 | 198,384 |
| | 소로 | 3 | 354 | 3,540 | 3 | 354 | 3,540 | - | - | - |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 계 | 14 | 1,213 | 12,942 | 5 | 609 | 6,090 | 6 | 476 | 6,132 | 3 | 128 | 720 |
| | 중로 | 3 | 332 | 4,980 | - | - | - | 3 | 332 | 4,980 | - | - | - |
| | 소로 | 11 | 881 | 7,962 | 5 | 609 | 6,090 | 3 | 144 | 1,152 | 3 | 128 | 720 |
| 가각 및 기타 | | - | - | -75,352 | - | - | - | - | - | - | - | - | - |

주) 가각, 가감속차로 등 면적 포함, 광장90 중복결정면적포함
주) 제2외곽지하차도 상부공간 경관녹지 중복결정 면적 제외

■ 변경

| 류별 |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계 | | 99 | 58,173 | 1,238,945.8 | 43 | 20,140 | 497,991 | 30 | 18,203 | 491,230 | 26 | 19,830 | 325,660 |
| 자동차전용도로 | 계 | 3 | 6,516 | 208,237 | 1 | 1,419 | 43,422 | 1 | 4,184 | 140,164 | 1 | 913 | 24,651 |
| | 대로 | 3 | 6,516 | 208,237 | 1 | 1,419 | 43,422 | 1 | 4,184 | 140,164 | 1 | 913 | 24,651 |
| 일반도로 | 계 | 81 | 50,397 | 1,093,326 | 37 | 18,112 | 448,479 | 22 | 13,496 | 344,558 | 22 | 18,789 | 300,289 |
| | 광로 | 3 | 1,438 | 68,180 | - | - | - | 1 | 1,066 | 53,300 | 2 | 372 | 14,880 |
| | 대로 | 17 | 14,404 | 440,294 | 6 | 4,455 | 157,289 | 6 | 6,468 | 195,980 | 5 | 3,481 | 87,025 |
| | 중로 | 58 | 34,201 | 581,312 | 28 | 13,303 | 287,650 | 15 | 5,962 | 95,278 | 15 | 14,936 | 198,384 |
| | 소로 | 3 | 354 | 3,540 | 3 | 354 | 3,540 | - | - | - |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 계 | 15 | 1,260 | 13,318 | 5 | 609 | 6,090 | 7 | 523 | 6,508 | 3 | 128 | 720 |
| | 중로 | 3 | 332 | 4,980 | - | - | - | 3 | 332 | 4,980 | - | - | - |
| | 소로 | 12 | 928 | 8,338 | 5 | 609 | 6,090 | 4 | 191 | 1,528 | 3 | 128 | 720 |
| 가각 및 기타 | | - | - | -75,935.2 | - | - | - | - | - | - | - | - | - |

주) 가각, 가감속차로 등 면적 포함, 광장90 중복결정면적포함
주) 제2외곽지하차도 상부공간 경관녹지 중복결정 면적 제외

◦ 도로(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광로 | 2 | 4 | 50 | 주간선 도로 | 16,180 (1,066) | 광로3-2 | 금곡동구역계 | 일반도로 | | 1970 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광로 | 3 | 3 | 40 | 국지도로 | 1,804 (9) | 대로 3-92 원창동 420-7 | 대로 1-17종점 | 일반도로 | | 1970 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광로 | 3 | 30 | 40-44 | 주간선 도 로 | 4,048 (363) | 중로3-191 원창동403-22 | 북측 구역계 경서동516-1 | 일반도로 | 14호 근린공원 | 1970 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1 | 14 | 35 | 주간선 도 로 | 14,447 (5) | 중로3-314 원창동 410-3 | 광로 2-7 | 일반도로 | | 1986 9.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1 | 16 | 35 | 국지도로 | 1,655 (19) | 광로 2-4 | 대로 3-93 원창동 420-7 | 일반도로 | | 1986 9.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1 | 17 | 35 | 보조간선 도 로 | 3,061 | 중로3-194 원창동434 | 광로3-3 | 일반도로 | | 1986 9.29 | |
| 기정 | 대로 | 1 | 54 | 35 | 보조간선 도 로 | 1,142 (193) | 중로3-269 경서동584 | 광로3-30 경서동608-11 | 일반도로 | 14호 공공공지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1 | 61 | 37 | 보조간선 도 로 | 682 | 중로3-270 경서동641-11 | 대로2-73 원창동433 | 일반도로 | 21호 근린공원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1 | 62 | 35 | 주간선 도 로 | 2,230 (495) | 광로3-13 | 대로2-73 경서동514 | 일반도로 | 58호 광장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1 | 63 | 30.6 | 주간선 도 로 | 4,544 (1,419) | 서측구역계 (청라2매립지구) | 원창동 31호광장 | 자 동 차 전용도로 | 심곡천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2 | 37 | 30 | 국지도로 | 1,429 (12) | 대로 1-7 | 중로3-314 원창동 409 | 일반도로 | | 1986 9.29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2 | 38 | 30 | 국지도로 | 1,129 (152) | 광로3-9 | 광로2-4 원창동406-17 | 일반도로 | | 2005 8.24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2 | 67 | 30 | 보조간선 도 로 | 796 | 대로1-60 경서동633-2 | 대로1-54 경서동609-2 | 일반도로 | 3호 문화공원 | 2006 11.21 | |
| 변경 | 대로 | 2 | 67 | 30 | 보조간선 도 로 | 796 | 대로1-60 경서동633-2 | 대로1-54 경서동609-2 | 일반도로 | 3호 문화공원 | 2006 11.21 | 가감속차로 반영 |
| 기정 | 대로 | 2 | 73 | 30 | 보조간선 도 로 | 4,161 | 중로3-192 원창동434 | 북측구역계 경서동514 | 일반도로 | 2호 근린공원 | 2006 11.21 | |
| 변경 | 대로 | 2 | 73 | 30 | 보조간선 도 로 | 4,161 | 중로3-192 원창동434 | 북측구역계 경서동514 | 일반도로 | 2호 근린공원 | 2006 11.21 | 자구계변 맹지해소 |
| 기정 | 대로 | 2 | 93 | 34 | 보조간선 도로 | 485 | 대로3-92 원창동420-2 | 중로3-193 원창동421 | 일반도로 | | 2010 5.12 | |
| 기정 | 대로 | 2 | 94 | 33.5 | 주간선 도 로 | 4,184 | 중로3-191 원창동431 | 북측구역계 경서동522-12 | 자동차 전용도로 | 3호 문화공원 | 2006 11.21 | 경관녹지62~65 중복결정 |
| 기정 | 대로 | 2 | 95 | 30 | 집산도로 | 862 | 중로3-270 경서동 541-10 | 대로2-73 경서동542-8 | 일반도로 | | 2013 8.12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3 | 88 | 25 | 집산도로 | 962 | 대로1-60 경서동641-8 | 대로1-54 경서동601-2 | 일반도로 | 3호 문화공원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3 | 92 | 25 | 보조간선 도로 | 1,705 | 광로2-4 원창동410-13 | 대로1-17 원창동433 | 일반도로 | | 2006 11.21 | |
| 변경 | 대로 | 3 | 92 | 25 | 보조간선 도로 | 1,705 | 광로2-4 원창동410-13 | 대로1-17 원창동433 | 일반도로 | | 2006 11.21 | 자구계변 맹지해소 |
| 기정 | 대로 | 3 | 177 | 27~44.2 (27) | 주간선 도로 | 4,501 (913) | 광장505호 | 광장90호 | 자동차 전용도로 | | 2012 5.07 | ( )는 사업구역내 |
| 기정 | 대로 | 3 | 178 | 25 | 집산도로 | 242 | 대로2-67 경서동615-1 | 대로3-88 경서동612-6 | 일반도로 | 31호 주차장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3 | 179 | 25 | 집산도로 | 233 | 대로2-67 경서동629-1 | 대로3-88 경서동630-7 | 일반도로 | 32호 주차장 | 2006 11.21 | |
| 기정 | 대로 | 3 | 180 | 25 | 주간선 도로 | 339 | 중로1-444 원창동414-2 | 대로2-93 원창동420-3 | 일반도로 | | 2014 7.29 | |
| 기정 | 중로 | 1 | 180 | 20~46 | 집산도로 | 862 | 중로3-192 | 중로3-유3 | 일반도로 | | 2012 12.24 | |
| 기정 | 중로 | 1 | 252 | 20 | 집산도로 | 357 | 광로3-30 경서동618-11 | 중로1-254 경서동618-4 | 일반도로 | 25호 주차장 | 2006 11.21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253 | 20 | 집산도로 | 357 | 광로3-30<br>경서동628-11 | 중로1-254<br>경서동628-4 | 일반도로 | 27호<br>주차장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1 | 254 | 20 | 집산도로 | 680 | 대로1-60<br>경서동634-4 | 대로1-54<br>경서동608-4 | 일반도로 | 3호<br>문화공원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1 | 256 | 20 | 집산도로 | 186 | 중로3-202<br>경서동612-2 | 대로3-88<br>경서동612-6 | 일반도로 | 3호<br>문화공원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1 | 258 | 20 | 집산도로 | 186 | 중로3-202<br>경서동630-3 | 대로3-88<br>경서동630-7 | 일반도로 | 3호<br>문화공원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1 | 268 | 21.75 | 집산도로 | 1,015 | 중로3-203<br>경서동526 | 대로2-95<br>경서동542-40 | 일반도로 |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1 | 443 | 23 | 집산도로 | 573 | 대로2-93<br>원창동420-3 | 대로2-93<br>원창동417-7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1 | 444 | 21 | 보조간선도로 | 1,588 | 광로2-4<br>원창동401-20 | 대로3-92<br>원창동416-5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1 | 445 | 21 | 집산도로 | 1,948 | 대로2-38<br>원창동143-5 | 중로1-445<br>원창동405-19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1 | 446 | 21 | 집산도로 | 369 | 중로1-447<br>원창동400-3 | 중로1-447<br>원창동400-10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1 | 447 | 21 | 집산도로 | 348 | 중로1-51<br>원창동405-16 | 중로1-447<br>원창동399-23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1 | 448 | 23.5 | 집산도로 | 471 | 광로2-4<br>원창동410-11 | 대로2-38<br>원창동143-7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1 | 460 | 24 | 국지도로 | 451 | 중로2-751 | 소공원5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1 | 24 | 집산도로 | 67 | 대로2-73 | 중로1-460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2 | 24 | 집산도로 | 73 | 대로2-73 | 중로2-751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3 | 24 | 국지도로 | 71 | 중로1-180 | 중로2-751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4 | 20 | 집산도로 | 170 | 중로1-268<br>경서동 528-5 | 중로1-465<br>경서동528-6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5 | 20 | 집산도로 | 507 | 중로 3-270<br>경서동 533-20 | 중로 1-268<br>경서동 533-18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6 | 20 | 집산도로 | 359 | 대로 2-95<br>경서동 542-20 | 중로 1-468<br>경서동 563-8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7 | 20 | 집산도로 | 360 | 대로 2-95<br>경서동 541-3 | 중로 1-468<br>경서동 562-3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8 | 20 | 집산도로 | 757 | 중로 3-270<br>경서동 562-8 | 대로 2-73<br>경서동 563-6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1 | 469 | 20 | 집산도로 | 596 | 중로3-270<br>원창동488-35 | 대로2-73<br>원창동578-3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1 | 470 | 20 | 집산도로 | 268 | 중로1-471 | 대로2-73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1 | 471 | 20 | 집산도로 | 358 | 중로1-268 | 대로1-62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1 | 472 | 20 | 집산도로 | 176 | 중로1-268 | 대로1-62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1 | 473 | 20 | 집산도로 | 125 | 광로2-4<br>원창동410-12 | 중로1-448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1 | 474 | 24.6 | 국지도로 | 25 | 중로3-269 | 투자3-4 | 일반도로 | | 2015<br>11.09 | |
| 변경 | 중로 | 1 | 474 | 24.6 | 국지도로 | 25 | 중로3-269 | 투자3-4 | 일반도로 | | 2015<br>11.09 | 가감속차로 반영 |
| 기정 | 중로 | 2 | 390 | 15 | 국지도로 | 358 | 중로1-252<br>경서동618-10 | 중로1-254<br>경서동608-4 | 일반도로 | 25호<br>주차장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2 | 393 | 15 | 국지도로 | 358 | 중로1-253<br>경서동628-10 | 중로1-254<br>경서동634-4 | 일반도로 | 28호<br>주차장 | 2006<br>11.21 | |

| 구분 | 규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2 | 402 | 15 | 국지도로 | 2,188 | 대로2-73<br>경서동531 | 대로2-73<br>경서동570 | 일반도로 | 2호<br>경관녹지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2 | 403 | 15 | 국지도로 | 16 | 중로2-402<br>경서동545 | 서측 구역계<br>경서동675 | 일반도로 | 2호<br>경관녹지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2 | 404 | 15 | 국지도로 | 126 | 광로3-30<br>경서동548-11 | 경서동548-9 | 일반도로 | | 2009<br>4.2 | 2016년 일부준공 |
| 기정 | 중로 | 2 | 405 | 15~18 | 국지도로 | 506 | 광로3-30<br>경서동548-12 | 경서동560-4 | 일반도로 | | 2009<br>4.2 | 2016년 일부준공 |
| 기정 | 중로 | 2 | 750 | 16.5 | 국지도로 | 76 | 중로1-448<br>원창동196-11 | 원창동196-1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2 | 751 | 18 | 국지도로 | 535 | 중로1-462 | 중로1-462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2 | 754 | 15 | 집산도로 | 447 | 대로2-73 | 중로2-402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2 | 755 | 18 | 집산도로 | 241 | 중로1-471 | 대로2-73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2 | 756 | 18 | 집산도로 | 429 | 중로1-471 | 중로1-472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2 | 757 | 18 | 집산도로 | 341 | 중로3-270 | 중로1-472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2 | 758 | 15 | 집산도로 | 68 | 중로1-268 | 중로2-757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2 | 760 | 16.5 | 국지도로 | 127 | 광로2-4<br>원창동410-12 | 중로1-448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2 | 761 | 16 | 국지도로 | 146 | 광로3-30 | 시티타워 | 일반도로 | | 2015<br>11.09 | 시티타워와<br>연계하여 개발 |
| 기정 | 중로 | 3 | 191 | 12 | 보조간선<br>도 로 | 1,545<br>(652) | 대로1-63<br>원창동431 | 광장(남청라IC)<br>원창동425-1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3 | 192 | 12 | 보조간선<br>도로 | 883 | 광장<br>원창동43 | 서측구역계<br>(청라2매립지구) | 일반도로 | 22호<br>근린공원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3 | 193 | 12 | 보조간선<br>도 로 | 1,564<br>(669) | 대로1-63<br>원창동402-8 | 광장(남청라IC)<br>원창동425-1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3 | 194 | 12 | 보조간선<br>도로 | 892 | 서측구역계<br>(청라2매립지구) | 광장<br>원창동43 | 일반도로 | 107호<br>완충녹지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3 | 266 | 13 | 국지도로 | 227 | 중로1-447<br>원창동410-12 | 중로1-448<br>원창동409-5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3 | 267 | 13 | 국지도로 | 27 | 중로1-448<br>원창동409-6 | 원창동407-3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3 | 268 | 13 | 국지도로 | 34 | 중로1-450<br>원창동143-13 | 원창동406-26 | 일반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중로 | 3 | 269 | 14 | 보조간선<br>도 로 | 4,177 | 중로3-191<br>원창동431 | 북측구역계<br>경서동522-12 | 일반도로 | 3호<br>문화공원 | 2006<br>11.21 | |
| 기정 | 중로 | 3 | 270 | 14 | 보존간선<br>도로 | 4,194 | 중로3-191<br>원창동431 | 북측구역계<br>경서동522-12 | 일반도로 | 3호<br>문화공원 | 2006<br>11.21 | |
| 변경 | 중로 | 3 | 270 | 14 | 보존간선<br>도로 | 4,194 | 중로3-191<br>원창동431 | 북측구역계<br>경서동522-12 | 일반도로 | 3호<br>문화공원 | 2006<br>11.21 | 오류 수정 |
| 기정 | 중로 | 3 | 310 | 14 | 집산도로 | 22 | 대로2-73 | 유원지1<br>내부 주차장1 | 일반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3 | 311 | 12 | 집산도로 | 1,062 | 중로3-192 | 인천로봇랜드<br>북측구역계 | 일반도로 | | 2012<br>12.24 | |
| 기정 | 중로 | 3 | 313 | 13 | 국지도로 | 142 | 대로3-180<br>원창동421-7 | 대2-93<br>원창동421-4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3 | 314 | 13 | 국지도로 | 1,453 | 원창동414-2 | 대로3-180<br>원창동414-2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중로 | 3 | 315 | 13 | 국지도로 | 483 | 대로2-93<br>원창동420-4 | 대로3-180<br>원창동419 | 일반도로 | | 2014<br>7.29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3 | 316 | 12 | 국지도로 | 19 | 대로2-93<br>원창동420-4 | 대로3-180<br>원창동419 | 일반도로 | | 2015<br>11.09 | |
| 기정 | 소로 | 1 | 35 | 10 | 국지도로 | 145 | 대로2-73<br>경서동643 | 서측 구역계<br>경서동509-17 | 일반도로 | | 2006<br>11.21 | |
| 기정 | 소로 | 1 | 36 | 10 | 국지도로 | 20 | 중로2-402<br>경서동570-2 | 서측 구역계<br>경서동570-2 | 일반도로 | | 2006<br>11.21 | |
| 기정 | 소로 | 1 | 73 | 10 | 국지도로 | 189 | 중로1-251 | 시티타워 | 일반도로 | | 2015<br>11.09 | 시티타워와<br>연계하여 개발 |
| 기정 | 중로 | 2 | 752 | 15 | 특수도로 | 177 | 중로2-751 | 중로2-751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2 | 753 | 15 | 특수도로 | 57 | 중로2-751 | 중로2-752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중로 | 2 | 759 | 15 | 특수도로 | 98 | 중로2-756 | 대로1-62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4<br>7.29 | |
| 기정 | 소로 | 1 | 37 | 10 | 특수도로 | 206<br>(30) | 중로3-202<br>경서동584 | 중로1-231<br>경서동600-3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06<br>11.21 | |
| 기정 | 소로 | 1 | 49 | 10 | 특수도로 | 132 | 광로2-4<br>원창동400-18 | 중로1-445<br>원창동400-10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소로 | 1 | 50 | 10 | 특수도로 | 195 | 중로1-445<br>원창동400-18 | 중로1-447<br>원창동400-10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소로 | 1 | 51 | 10 | 특수도로 | 80 | 중로1-445<br>원창동400-19 | 원창동4-10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소로 | 1 | 74 | 10 | 특수도로 | 172 | 광장5 | 중로1-180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소로 | 2 | 16 | 8 | 특수도로 | 41 | 광로2-4<br>원창동410-10 | 중로3-266<br>원창동410-12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소로 | 2 | 17 | 8 | 특수도로 | 73 | 중로1-448<br>원창동410-12 | 중로3-266<br>원창동410-12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소로 | 2 | 18 | 8 | 특수도로 | 30 | 중로1-448<br>원창동410-12 | 중로3-266<br>원창동410-12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누락<br>정정 | 소로 | 2 | 19 | 8 | 특수도로 | 47 | 중로3-313<br>원창동432-3 | 완충녹지116<br>원창동432-3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0<br>5.12 | |
| 기정 | 소로 | 3 | 92 | 6 | 특수도로 | 43<br>(27) | 중로3-202<br>경서동583-1 | 소로1-1<br>경서동589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06<br>11.21 | |
| 기정 | 소로 | 3 | 227 | 6 | 특수도로 | 77 | 대로2-73 | 중로1-460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3<br>8.12 | |
| 기정 | 소로 | 3 | 228 | 4 | 특수도로 | 24 | 철도시설1<br>경서동519-22 | 북측구역계<br>경서동519-22 | 보행자<br>전용도로 | | 2014<br>7.29 | 2016년 일부준공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2-②단계 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도로선형의 경미한 변경 및 단계조정에 따른 단계내 포함 노선, 연장변경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대로2-67 | 대로2-67 | ·일반도로 가감속차로 변경 | ·가스공사 인천사옥 허가조건 반영에 따른 가감속차로 일부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
| 대로2-73 | 대로2-73 | ·일반도로 지구계변 맹지해소 | ·공원, 녹지 계획 등에 의해 지구계변 일부 필지가 맹지가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일부 변경 |
| 대로3-92 | 대로3-92 | ·일반도로 지구계변 맹지해소 | ·공원, 녹지 계획 등에 의해 지구계변 일부 필지가 맹지가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일부 변경 |
| 중로1-474 | 중로1-474 | ·일반도로 가감속차로 변경 | ·하나금융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일부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
| 중로3-270 | 중로3-270 | ·일반도로 도면오류 수정 | ·기정도면 오류수정 |
| - | 소로(특)2-19 | ·보행자전용도로 누락정정<br>- 폭원 : 8m<br>- 연장 : 47m | ·누락정정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인천광역시) |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계 | | | - | - | 522,454.5 | 522,444.5 | 감)10.0 | - | |
| 소 계 | | | - | - | 489,784.5 | 489,774.5 | 감)10.0 | - | |
| 변경 | 2 | 공원 | 근린공원 | 경서동 산252-1임 | 192,877.0 | 192,877.0 | - | 2006.11.21 | |
| 변경 | 3 | 공원 | 근린공원 | 경서동 산251-7임 | 226,460.0 | 226,450.0 | 감)10.0 | 2006.11.21 | |
| 기정 | 30 | 공원 | 근린공원 | 서구 원창동 420-3전 | 11,171.0 | 11,171.0 | - | 2010.5.12 | |
| 기정 | 31 | 공원 | 근린공원 | 서구 원창동 401-4전 | 11,509.0 | 11,509.0 | - | 2010.5.12 | |
| 기정 | 32 | 공원 | 근린공원 | 서구 원창동 400-8전 | 22,105.0 | 22,105.0 | - | 2010.5.12 | |
| 기정 | 34 | 공원 | 근린공원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0,304.0 | 10,304.0 | - | 2013.8.12 | |
| 기정 | 35 | 공원 | 근린공원 | 서구 경서동 528답 일원 | 15,358.5 | 15,358.5 | - | 2014.7.29 | |
| 소 계 | | | - | - | 32,670.0 | 32,670 | - | - | |
| 기정 | 2 | 공원 | 소공원 | 서구 원창동 406-26전 | 7,758.0 | 7,758.0 | - | 2010.5.12 | |
| 기정 | 3 | 공원 | 소공원 | 서구 원창동 420잡 | 9,661.0 | 9,661.0 | - | 2010.5.12 | |
| 기정 | 4 | 공원 | 소공원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2,404.0 | 2,404.0 | - | 2013.8.12 | |
| 기정 | 5 | 공원 | 소공원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4,104.0 | 4,104.0 | - | 2013.8.12 | |
| 기정 | 6 | 공원 | 소공원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3,006.0 | 3,006.0 | - | 2013.8.12 | |
| 기정 | 7 | 공원 | 소공원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5,737.0 | 5,737.0 | - | 2013.8.12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3 | 근린공원 | • 면적 변경 226,460.0㎡ → 226,450.0㎡ | • 지구계변 맹지발생으로 공원 일부 조정 |

3)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계 | | | - | - | 1,043,275.5 (977,904.9) | 1,043,143.7 (977,773.1) | 감)131.8 | | ( ) 단계 내 면적 |
| 소 계 | | | - | - | 740,815.5 (675,444.9) | 740,707.5 (675,336.9) | 감)108.0 | | ( ) 단계 내 면적 |
| 변경 | 1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547-11답 | 22,449.0 | 22,445.0 | 감)4.0 | 2006.11.21 | |
| 기정 | 2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630-2답 | 32,233.0 | 32,233.0 | - | 2006.11.21 | |
| 기정 | 3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662-3전 | 37,148.0 | 37,148.0 | - | 2006.11.21 | |
| 변경 | 8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632-4답 | 11,152.0 | 11,083.0 | 감)69.0 | 2006.11.21 | |
| 기정 | 9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488-32임 | 11,074.0 | 11,074.0 | - | 2006.11.21 | |
| 기정 | 10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488-19잡 | 7,808.9 (4,530.0) | 7,808.9 (4,530.0) | - | 2006.11.21 | ( ) 단계 내 면적 |
| 기정 | 11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583-2답 | 3,632.0 | 3,632.0 | - | 2006.11.21 | |
| 기정 | 12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589-3답 | 7,421.3 (3,314.0) | 7,421.3 (3,314.0) | - | 2006.11.21 | ( ) 단계 내 면적 |
| 변경 | 13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519-8답 | 54,080.2 (14,941.0) | 54,045.2 (14,906.0) | 감)35.0 | 2006.11.21 | ( ) 단계 내 면적 |
| 기정 | 14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518-13답 | 8,254.0 | 8,254.0 | - | 2006.11.21 | 완14 중 5,409㎡ : 2016년 일부준공 |
| 기정 | 15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537-2답 | 132,680.2 (113,835.0) | 132,680.2 (113,835.0) | - | 2006.11.21 | ( ) 단계 내 면적 |
| 기정 | 96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00전 | 66,861.0 | 66,861.0 | - | 2005.8.24 | |
| 기정 | 97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06-26전 | 4,253.0 | 4,253.0 | - | 2005.8.24 | |
| 기정 | 98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10-8전 | 1,463.0 | 1,463.0 | - | 2006.11.21 | |
| 기정 | 99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04-13전 | 22,908.0 | 22,908.0 | - | 2005.8.24 | |
| 기정 | 100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29-6전 | 1,861.0 | 1,861.0 | - | 2006.11.21 | |
| 기정 | 101 | 녹지 | 완충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69,408.0 | 69,408.0 | - | 2006.11.21 | |
| 기정 | 104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29-4전 | 11,024.0 | 11,024.0 | - | 2006.11.21 | |
| 기정 | 107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17-11전 | 10,861.0 | 10,861.0 | - | 2006.11.21 | |
| 기정 | 115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398-29전 | 97,756.0 | 97,756.0 | - | 2010.5.12 | |
| 기정 | 116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222-11전 | 30,721.0 | 30,721.0 | - | 2010.5.12 | |
| 기정 | 117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16-5잡 | 3,075.0 | 3,075.0 | - | 2010.5.12 | |
| 기정 | 118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399-40도 | 2,577.0 | 2,577.0 | - | 2010.5.12 | |
| 기정 | 124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04-13전 | 16,872.0 | 16,872.0 | - | 2005.8.24 | |
| 기정 | 126 | 녹지 | 완충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745.0 | 1,745.0 | - | 2013.8.12 | |
| 기정 | 127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519-22도 | 7,187.0 | 7,187.0 | - | 2012.12.24 | 2016년 일부준공 |
| 기정 | 128 | 녹지 | 완충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153.0 | 1,153.0 | - | 2013.8.12 | |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기정 | 129 | 녹지 | 완충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2,654.0 | 2,654.0 | - | 2013.8.12 | |
| 기정 | 130 | 녹지 | 완충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4,120.0 | 4,120.0 | - | 2013.8.12 | |
| 기정 | 131 | 녹지 | 완충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2,384.0 | 2,384.0 | - | 2013.8.12 | |
| 기정 | 132 | 녹지 | 완충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5,603.0 | 5,603.0 | - | 2013.8.12 | |
| 기정 | 133 | 녹지 | 완충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2,208.0 | 2,208.0 | - | 2013.8.12 | |
| 기정 | 134 | 녹지 | 완충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463.0 | 463.0 | - | 2013.8.12 | |
| 기정 | 135 | 녹지 | 완충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856.0 | 1,856.0 | - | 2013.8.12 | |
| 변경 | 136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10-21전 일원 | 23,683.0 | 23,683.0 | - | 2014.7.29 | |
| 기정 | 137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17-7전 일원 | 1,280.0 | 1,280.0 | - | 2014.7.29 | |
| 기정 | 138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20-3전 일원 | 2,451.0 | 2,451.0 | - | 2014.7.29 | |
| 기정 | 139 | 녹지 | 완충녹지 | 원창동 420-3전 일원 | 1,321.0 | 1,321.0 | - | 2014.7.29 | |
| 기정 | 140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521-2답 일원 | 3,956.9 | 3,956.9 | - | 2014.7.29 | |
| 기정 | 141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522-1답 일원 | 4,480.5 | 4,480.5 | - | 2014.7.29 | |
| 기정 | 142 | 녹지 | 완충녹지 | 경서동 522-6답 일원 | 6,697.5 | 6,697.5 | - | 2014.7.29 | |
| 소 계 | | | - | - | 293,499.0 | 293,475.2 | 감)23.8 | - | ( ) 단계 내 면적 |
| 기정 | 1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1514도 | 1,506.0 | 1,506.0 | - | 2006.11.21 | |
| 기정 | 3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563-1답 | 4,516.0 | 4,516.0 | - | 2006.11.21 | |
| 기정 | 12 | 녹지 | 경관녹지 | 원창동 431천 | 1,321.0 | 1,321.0 | - | 2006.11.21 | |
| 기정 | 25 | 녹지 | 경관녹지 | 원창동 420-5전 일원 | 227.0 | 227.0 | - | 2006.11.21 | |
| 기정 | 26 | 녹지 | 경관녹지 | 원창동 420-8전 일원 | 4,067.0 | 4,067.0 | - | 2006.11.21 | |
| 변경 | 27 | 녹지 | 경관녹지 | 원창동 424-2도 일원 | 645.0 | 642.9 | 감)2.1 | 2006.11.21 | |
| 기정 | 29 | 녹지 | 경관녹지 | 원창동 424-2도 일원 | 272.0 | 272.0 | - | 2014.7.29 | |
| 기정 | 30 | 녹지 | 경관녹지 | 원창동 424-2도 일원 | 1,013.0 | 1,013.0 | - | 2014.7.29 | |
| 변경 | 31 | 녹지 | 경관녹지 | 원창동 427전 일원 | 8,158.3 | 8,136.6 | 감)21.7 | 2006.11.21 | |
| 기정 | 32 | 녹지 | 경관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64,393.0 | 64,393.0 | - | 2006.11.21 | ( ) 단계 내 면적 |
| 기정 | 33 | 녹지 | 경관녹지 | 원창동 432제 | 462.0 | 462.0 | - | 2006.11.21 | |
| 기정 | 34 | 녹지 | 경관녹지 | 원창동 434제 | 1,078.0 | 1,078.0 | - | 2006.11.21 | |
| 기정 | 35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509-18임 | 1,262.0 | 1,262.0 | - | 2006.11.21 | |
| 기정 | 36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574-9답 | 3,095.7 | 3,095.7 | - | 2006.11.21 | |
| 기정 | 38 | 녹지 | 경관녹지 | 원창동 426-4전 일원 | 104,783.0 | 104,783.0 | - | 2006.11.21 | |
| 기정 | 46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574-3답 | 5,550 | 5,550.0 | - | 2006.11.21 | |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기정 | 47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667-4전 | 8,771.0 | 8,771.0 | - | 2006.11.21 | |
| 기정 | 48 | 녹지 | 경관녹지 | 완창동 426전 | 13,519.0 | 13,519.0 | - | 2006.11.21 | |
| 기정 | 52 | 녹지 | 경관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018.0 | 1,018.0 | - | 2013.8.12 | |
| 기정 | 53 | 녹지 | 경관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586.0 | 586.0 | - | 2013.8.12 | |
| 기정 | 54 | 녹지 | 경관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329.0 | 329.0 | - | 2013.8.12 | |
| 기정 | 55 | 녹지 | 경관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341.0 | 341.0 | - | 2013.8.12 | |
| 기정 | 56 | 녹지 | 경관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324.0 | 1,324.0 | - | 2013.8.12 | |
| 기정 | 57 | 녹지 | 경관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692.0 | 1,692.0 | - | 2013.8.12 | |
| 기정 | 58 | 녹지 | 경관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239.0 | 1,239.0 | - | 2013.8.12 | |
| 기정 | 59 | 녹지 | 경관녹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1,443.0 | 1,443.0 | - | 2013.8.12 | |
| 기정 | 60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542-40답 일원 | 4,097.0 | 4,097.0 | - | 2013.8.12 | ( ) 단계 내 면적 |
| 기정 | 61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507전 일원 | 14,150.0 | 14,150.0 | - | 2014.7.29 | |
| 기정 | 62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산253-1임 일원 | 9,687.0 | 9,687.0 | - | 2015.3.26 |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차도 상부 녹지 중복지정 관리청: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기능유지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변경 |
| 기정 | 63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612-1답 일원 | 3,544.0 | 3,544.0 | - | 2015.3.26 | |
| 기정 | 64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641-6잡 일원 | 6,478.0 | 6,478.0 | - | 2015.3.26 | |
| 기정 | 65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662전 일원 | 11,570.0 | 11,570.0 | - | 2015.3.26 | |
| 기정 | 67 | 녹지 | 경관녹지 | 경서동 516도 일원 | 11,362.0 | 11,362.0 | - | 2015.11.9 | |
| 소 계 | | | - | - | 8,961.0 | 8,961.0 | - | - | |
| 기정 | 1 | 녹지 | 연결녹지 | 경서동 630답 | 5,207.0 | 5,207.0 | - | 2006.11.21 | |
| 기정 | 8 | 녹지 | 연결녹지 | 원창동 20-5전 | 1,186.0 | 1,186.0 | - | 2010.5.12 | |
| 기정 | 9 | 녹지 | 연결녹지 | 원창동 417-6전 일원 | 1,322.0 | 1,322.0 | - | 2014.7.29 | |
| 기정 | 10 | 녹지 | 연결녹지 | 원창동 420-5전 일원 | 1,246.0 | 1,246.0 | - | 2014.7.29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1 | 완충녹지 | • 도면오류수정<br>• 면적 변경 (22,449㎡ → 22,445㎡ 감)4.0㎡) | • 도면오류 수정 |
| 8 | 완충녹지 | • 면적 변경<br>• 11,152㎡ → 11,083㎡ 감)69.0㎡ | • 통신공급설비 신설에 따른 면적 조정 |
| 13 | 완충녹지 | • 면적 변경<br>• 14,941㎡ → 14,906㎡ 증)35.0㎡ | • 가감속차로 수정 |
| 27 | 경관녹지 | • 면적 변경<br>• 645㎡ → 642.9㎡ 감)2.1㎡ | • 가감속차로 수정 |
| 31 | 경관녹지 | • 면적 변경<br>• 8,158.3㎡ → 8,136.6㎡ 증)21.7㎡ | • 가감속차로 수정 |

4) 유원지

□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5)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인천광역시) |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계 | | - | - | 56,871 | 57,150 | 증)279 | - | |
| 기정 | 1 | 공공공지 | 경서동 601-1답 | 1,388 | 1,388 | - | 2006.11.21 | |
| 기정 | 2 | 공공공지 | 경서동 609-4구 | 3,846 | 3,846 | - | 2006.11.21 | |
| 기정 | 3 | 공공공지 | 경서동 615-1답 | 288 | 288 | - | 2006.11.21 | 2016년 일부준공 |
| 기정 | 4 | 공공공지 | 경서동 629-1답 | 435 | 435 | - | 2006.11.21 | 2016년 일부준공 |
| 기정 | 5 | 공공공지 | 경서동 633-2답 | 2,897 | 2,897 | - | 2006.11.21 | |
| 기정 | 6 | 공공공지 | 경서동 641-5잡 | 1,416 | 1,416 | - | 2006.11.21 | |
| 변경 | 7 | 공공공지 | 경서동 609-2답 | 3,313 | 3,178 | 감)135 | 2006.11.21 | 2016년 일부준공 |
| 기정 | 8 | 공공공지 | 경서동 634답 | 3,217 | 3,217 | - | 2006.11.21 | 2016년 일부준공 |
| 기정 | 9 | 공공공지 | 경서동 634-2답 | 577 | 577 | - | 2006.11.21 | |
| 기정 | 10 | 공공공지 | 경서동 634-9답 | 3,382 | 3,382 | - | 2006.11.21 | 2016년 일부준공 |
| 기정 | 13 | 공공공지 | 경서동 608-10답 | 3,524 | 3,524 | - | 2006.11.21 | |
| 기정 | 14 | 공공공지 | 경서동 608-3답 | 593 | 593 | - | 2006.11.21 | |
| 기정 | 34 | 공공공지 | 연희동 410-11전 | 1,563 | 1,563 | - | 2010.5.12 | |
| 변경 | 35 | 공공공지 | 경서동 545제 | 21,957 | 22,371 | 증)414 | 2011.8.1 | |
| 기정 | 40 | 공공공지 |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 5,946 | 5,946 | - | 2013.8.12 | |
| 기정 | 42 | 공공공지 | 원창동 421-2전 | 936 | 936 | - | 2014.7.29 | |
| 기정 | 43 | 공공공지 | 경서동 522-39답 일원 | 1,593 | 1,593 | - | 2015.11.9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7 | 공공공지 | • 면적변경<br>• 3,313㎡ → 3,178㎡ (감 135㎡) | • 가스공사 인천사옥 허가조건 반영 |
| 35 | 공공공지 | • 면적변경<br>• 21,957㎡ → 22,371㎡ (증 414㎡) | • 청라 북서측 투기장 매립사업 준공(2015. 11)에 따라 기존 진출입로 사용목적 상실로 공공공지 계획 환원 |

다. 유통·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통신공급설비

□ 통신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위 치(인천광역시)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계 | | | | 69 | - | |
| 신설 | 1 | 통신공급설비 | 서구 경서도 630-4답 일원 | 69 | - | 분기국사 |

□ 통신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1 | 통신공급설비 | • 통신공급설비 신설<br>• 69㎡ | • KT통신분기국사 반영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연구시설

□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1) 하 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마. 환경 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4. 관련도면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5,000) : 생략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생략

붙임2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③단계 실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준용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준용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10,000) (변경) : 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준용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분
  1)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2) R&D 및 첨단산업용지 (변경없음)
  3)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4) 업무시설용지 (변경)
    □ 변경사유 : 업무3획지분할 반영
  □ 기정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B1(업1) | ① | 56,428 | -1 | 56,428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특별계획구역 지정 |
| B2(업2) | ① | 68,449 | -1 | 68,449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특별계획구역 지정 |
| B3(업3) | ① | 13,798 | -1 | 13,798 | 필지합병가능 |
| B4(업4) | ① | 26,177 | -1 | 26,177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특별계획구역 지정 |
| B5(업5) | ① | 34,322 | -1 | 6,020 | 특별계획구역 지정 |
| | | | -2 | 5,657 | |
| | | | -3 | 5,444 | |
| | | | -4 | 5,367 | |
| | | | -5 | 6,600 | |
| | | | -6 | 2,625 | |
| | | | -7 | 2,609 | |
| (업6) | ② | 11,351 | -1 | 3,811 | 특별계획구역 지정 |
| | | | -2 | 3,770 | |
| | | | -3 | 3,770 | |
| B6(업8) | ① | 34,321 | -1 | 6,020 | 특별계획구역지정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 | | -2 | 5,657 | |
| B6(업8) | | | -3 | 5,444 | |
| | | | -4 | 5,366 | |
| | | | -5 | 6,600 | |
| | | | -6 | 2,625 | |
| | | | -7 | 2,609 | |
| (업7) | ② | 7,351 | -1 | 3,811 | 특별계획구역 지정 |
| | | | -2 | 3,540 | |
| B7(업9) | ① | 26,177 | -1 | 26,177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특별계획구역 지정 |
| B8(업10) | ① | 10,541 | -1 | 10,541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
| B9(업11) | ① | 61,703 | -1 | 61,703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특별계획구역 지정 |
| B10(업12) | ① | 54,369 | -1 | 54,369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특별계획구역 지정 |
| | - | **404,987** | - | **404,987** | - |

※ B 3-2 : 2-②단계

□ 변경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B1(업1) | ① | 56,428 | -1 | 56,428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특별계획구역 지정 |
| B2(업2) | ① | 68,449 | -1 | 68,449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특별계획구역 지정 |
| B3(업3) | ① | 13,798 | -1 | 13,731.1 | 필지합병가능, 2016년 일부준공 |
| | | | -3 | 60.9 | 필지합병가능, 2016년 일부준공 |
| B4(업4) | ① | 26,177 | -1 | 26,177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특별계획구역 지정 |
| B5(업5) | ① | 34,322 | -1 | 6,020 | 특별계획구역 지정 |
| | | | -2 | 5,657 | |
| | | | -3 | 5,444 | |
| | | | -4 | 5,367 | |
| | | | -5 | 6,600 | |
| | | | -6 | 2,625 | |
| | | | -7 | 2,609 | |
| (업6) | ② | 11,351 | -1 | 3,811 | 특별계획구역 지정 |
| | | | -2 | 3,770 | |
| | | | -3 | 3,770 | |
| B6(업8) | ① | 34,321 | -1 | 6,020 | 특별계획구역 지정 |
| | | | -2 | 5,657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 | | -3 | 5,444 | |
| | | | -4 | 5,366 | |
| | | | -5 | 6,600 | |
| | | | -6 | 2,625 | |
| | | | -7 | 2,609 | |
| (업7) | ② | 7,351 | -1 | 3,811 | 특별계획구역 지정 |
| | | | -2 | 3,540 | |
| B7(업9) | ① | 26,177 | -1 | 26,177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
| B8(업10) | ① | 10,541 | -1 | 10,541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
| B9(업11) | ① | 61,703 | -1 | 61,703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특별계획구역 지정 |
| B10(업12) | ① | 54,369 | -1 | 54,369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특별계획구역 지정 |
| | - | **404,987** | - | **404,987** | - |

※ B 3-2 : 2-②단계

5)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6) 기타시설용지

가)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나) 공영차고지용지 (변경없음)

다) 복합환승센터용지 (변경없음)

라) 전기공급시설용지 (변경사항 없음)

마) 가스공급시설용지 (변경사항 없음)

바) 통신공급시설용지 (신설)

□ 변경사유 : KT통신분기국사 용지 별도 시설 결정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통1 | - | 6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0-4답 일원 | 69 | 분기국사 |
| - | **1개소** | **69** | - | **69** | |

사) 연구시설용지 (변경없음)

아)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변경사항 없음)

자) 주유소용지 (변경)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주유3 | - | 2,045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18-14답 | 2,045 | |
| - | **1개소** | **2,045** | - | **2,045** | 2016년 일부준공 |

차) 체육시설용지 (변경없음)

카) 문화·의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타) 투자유치용지 (변경없음)

파) 골프장용지 (변경)

□ 변경사유 : 골프장내 주택단지계획 변경

□ 기정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골프장 1 | 소계 | 76,775 | - | 76,775 | |
| | 2 | 29,77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29,772 | -골프장 주택단지 필지별 규모는 265㎡ 이상으로 함<br>-가구별 공동개발 가능<br>-가구기준으로 개별사업시행 가능 |
| | 1 | 5,76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5,766 | |
| | 2 | 6,13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6,132 | |
| | 3 | 6,7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6,763 | |
| | 4 | 7,01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7,017 | · 2-5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 2-6BL 내부도로<br>· 3-6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 3-7BL 내부도로 |
| | 5 | 36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362 | |
| | 6 | 3,73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3,732 | |
| | 3 | 47,00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7,003 | |
| | 1 | 7,76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7,764 | |
| | 2 | 7,03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7,039 | |
| | 3 | 8,25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8,258 | |
| | 4 | 8,035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8,035 | |
| | 5 | 9,39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9,393 | |
| | 6 | 89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893 | |
| | 7 | 5,62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5,621 | |
| 골프장 2 | 2 | 55,59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55,598 | -골프장 주택단지 필지별 규모는 265㎡ 이상으로 함<br>-가구별 공동개발 가능<br>-가구기준으로 개별사업시행 가능<br>· 2-7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 2-8BL 내부도로 |
| | 1 | 8,12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8,127 | |
| | 2 | 6,21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6,216 | |
| | 3 | 8,12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8,128 | |
| | 4 | 8,50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8,509 | |
| | 5 | 8,7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8,741 | |
| | 6 | 8,76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8,768 | |
| | 7 | 72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723 | |
| | 8 | 6,38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6,386 | |
| 합계 | | 132,373 | - | 132,373 | |

※ 골프장용지 2-②단계

□ 변경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골프장 1 | 2 | 29,77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29,772 | · 2-5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 2-6BL 내부도로<br>· 3-6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 3-7BL 내부도로<br>2016년 일부준공 |
| | 1 | 5,765.9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5,765.98 | |
| | 1-1 | 444.7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4.79 | |
| | 1-2 | 444.7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4.79 | |
| | 1-3 | 444.7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4.79 | |
| | 1-4 | 444.7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4.79 | |
| | 1-5 | 444.7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4.79 | |
| | 1-6 | 444.7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4.79 | |
| | 1-7 | 441.8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1.82 | |
| | 1-8 | 442.5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2.53 | |
| | 1-9 | 442.5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2.53 | |
| | 1-10 | 442.5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2.53 | |
| | 1-11 | 442.5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2.53 | |
| | 1-12 | 442.5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2.53 | |
| | 1-13 | 442.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2.77 | |
| | 2 | 6,132.0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6,132.01 | |
| | 2-1 | 471.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1.41 | |
| | 2-2 | 471.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1.41 | |
| | 2-3 | 471.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1.41 | |
| | 2-4 | 471.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1.41 | |
| | 2-5 | 471.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1.41 | |
| | 2-6 | 471.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1.41 | |
| | 2-7 | 471.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1.41 | |
| | 2-8 | 471.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1.41 | |
| | 2-9 | 471.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1.41 | |
| | 2-10 | 471.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1.41 | |
| | 2-11 | 471.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1.41 | |
| | 2-12 | 471.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1.41 | |
| | 2-13 | 475.0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75.09 | |
| 골프장 1 | 2 3 | 6,7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6,763 | · 2-5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 2-6BL 내부도로<br>· 3-6BL |
| | 3-1 | 452.4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52.46 | |
| | 3-2 | 451.1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51.12 | |
| | 3-3 | 451.4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51.47 | |
| | 3-4 | 459.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59.77 | |
| | 3-5 | 459.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59.77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 3-6 | 459.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59.77 | |
| | 3-7 | 466.3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6.36 | |
| | 3-8 | 469.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9.67 | |
| | 3-9 | 494.1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94.18 | |
| | 3-10 | 492.1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92.14 | |
| | 3-11 | 567.9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567.98 | |
| | 3-12 | 553.0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553.03 | |
| | 3-13 | 536.3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536.36 | |
| | 3-14 | 448.9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48.92 | |
| | 4 | 7,016.9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7,016.98 | |
| | 4-1 | 465.8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5.82 | |
| | 4-2 | 468.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8.06 |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
| | 4-3 | 468.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8.06 | |
| | 4-4 | 468.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8.06 | |
| | 4-5 | 468.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8.06 | · 3-7BL 내부도로 |
| | 4-6 | 468.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8.06 | 2016년 일부준공 |
| | 4-7 | 468.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8.06 | |
| | 4-8 | 468.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8.06 | |
| | 4-9 | 468.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8.06 | |
| | 4-10 | 468.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8.06 | |
| | 4-11 | 468.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8.06 | |
| | 4-12 | 468.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8.06 | |
| | 4-13 | 464.7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4.72 | |
| | 4-14 | 467.8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7.87 | |
| | 4-15 | 469.9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469.91 | |
| | 5 | 36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362 | |
| | 6 | 3,732.0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8답 | 3,732.03 | |
| 골프장 1 | 3 | 47,00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7,003 | |
| | 1 | 7,763.7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7,763.76 | |
| | 1-1 | 461.5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61.58 | · 2-5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
| | 1-2 | 469.7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69.74 | |
| | 1-3 | 460.4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60.49 | |
| | 1-4 | 460.4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60.49 | |
| | 1-5 | 460.4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60.49 | · 2-6BL 내부도로 |
| | 1-6 | 461.7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61.78 | |
| | 1-7 | 469.9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69.96 | · 3-6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
| | 1-8 | 475.25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75.25 | |
| | 1-9 | 535.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535.67 | |
| | 1-10 | 536.9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536.90 | |
| | 1-11 | 537.8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537.83 | |
| | 1-12 | 485.2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85.26 | · 3-7BL 내부도로 |
| | 1-13 | 494.7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94.71 | |
| | 1-14 | 484.7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84.74 | 2016년 일부준공 |
| | 1-15 | 484.7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84.73 | |
| | 1-16 | 484.1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84.14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 2 | 7,039.2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7,039.23 | |
| | 2-1 | 445.5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45.57 | |
| | 2-2 | 445.5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45.57 | |
| | 2-3 | 445.5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45.57 | |
| | 2-4 | 445.5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45.57 | |
| | 2-5 | 445.5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45.57 | |
| | 2-6 | 445.5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45.56 | |
| | 2-7 | 485.2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85.20 | |
| | 2-8 | 485.2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85.21 | |
| | 2-9 | 485.2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85.21 | |
| | 2-10 | 485.2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85.21 | |
| | 2-11 | 485.2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85.21 | |
| | 2-12 | 485.2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85.21 | |
| | 2-13 | 485.2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85.21 | |
| | 2-14 | 485.2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85.21 | |
| | 2-15 | 484.15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84.15 | |
| 골프장 1 | 3 | 8,257.9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8,257.97 | · 2-5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 2-6BL 내부도로<br>· 3-6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 3-7BL 내부도로<br>2016년 일부준공 |
| | 3-1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2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3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4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5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6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7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8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9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10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11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12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13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14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15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16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17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18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3-19 | 434.6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4.63 | |
| | 4 | 8,034.8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8,034.87 | |
| | 4-1 | 457.0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57.09 | |
| | 4-2 | 457.0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57.09 | |
| | 4-3 | 454.8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54.87 | |
| | 4-4 | 435.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35.40 | |
| | 4-5 | 435.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35.40 | |
| | 4-6 | 435.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35.40 | |
| | 4-7 | 435.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35.40 | |
| | 4-8 | 439.5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39.52 | |
| | 4-9 | 448.4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48.47 | |
| | 4-10 | 448.4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48.47 | |
| | 4-11 | 448.4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48.47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 4-12 | 448.4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48.47 | |
| | 4-13 | 448.4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48.47 | |
| | 4-14 | 448.4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48.47 | |
| | 4-15 | 448.4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48.47 | |
| | 4-16 | 448.4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48.47 | |
| | 4-17 | 448.4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48.47 | |
| | 4-18 | 448.4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0-4답 | 448.47 | |
| 골프장 1 | 3 | 5 | 9,392.8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9,392.83 | · 2-5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 2-6BL 내부도로<br>· 3-6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 3-7BL 내부도로<br>2016년 일부준공 |
| | | 5-1 | 442.1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42.14 | |
| | | 5-2 | 438.05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38.05 | |
| | | 5-3 | 427.2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7.23 | |
| | | 5-4 | 421.5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1.54 | |
| | | 5-5 | 421.5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1.54 | |
| | | 5-6 | 421.5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1.54 | |
| | | 5-7 | 421.5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1.54 | |
| | | 5-8 | 425.8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5.87 | |
| | | 5-9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10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11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12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13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14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15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16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17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18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19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20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21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5-22 | 426.6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426.67 | |
| | | 6 | 89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893 | |
| | | 7 | 5,621.3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61-4답 | 5,621.34 | |
| 골프장 2 | | 2 | 55,59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55,598 | · 2-7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 2-8BL 내부도로<br>2016년 일부준공 |
| | | 1 | 8,12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8,127 | |
| | | 1-1 | 409.4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9.46 | |
| | | 1-2 | 409.4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9.46 | |
| | | 1-3 | 406.05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5 | |
| | | 1-4 | 405.9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98 | |
| | | 1-5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 1-6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 1-7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 1-8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 1-9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 1-10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 1-11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 1-12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 1-13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 1-14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 1-15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 1-16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1-17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1-18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1-19 | 406.0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0 | |
| | 1-20 | 406.05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05 | |
| 골프장 2 2 | 2 | 6,21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6,216 | |
| | 2-1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2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3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4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5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6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7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8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9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10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11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12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13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14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 | 2-15 | 414.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14.40 | · 2-7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 2-8BL 내부도로<br>2016년 일부준공 |
| | 3 | 8,12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8,128 | |
| | 3-1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2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3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4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5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6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7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8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9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10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11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12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13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14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15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16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17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18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19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 3-20 | 406.4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40 | |
| 골프장 2 2 | 4 | 8,50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8,509 | · 2-7BL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
| | 4-1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4-2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4-3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 면적(㎡) | 획지 | | 비고 |
|---|---|---|---|---|---|---|
| | | | | 위치 | 면적 | |
| | | 4-4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5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6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7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8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9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10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11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12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13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14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15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16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17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18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19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20 | 405.19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19 | |
| | | 4-21 | 405.2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20 | |
| | | 5 | 8,74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8,741 | |
| | | 5-1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2-8BL 내부도로<br><br>2016년 일부준공 |
| | | 5-2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3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4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5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6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7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8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9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10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11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12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13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14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15 | 400.6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0.60 | |
| | | 5-16 | 391.3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391.36 | |
| | | 5-17 | 381.9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381.92 | |
| | | 5-18 | 381.9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381.92 | |
| | | 5-19 | 381.9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381.92 | |
| | | 5-20 | 382.7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382.71 | |
| | | 5-21 | 405.9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5.96 | |
| | | 5-22 | 406.2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6.21 | |
| 골프장 2 | 2 | 6 | 8,76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8,768 | · 2-7BL<br>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br><br>· 2-8BL 내부도로 |
| | | 6-1 | 401.6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62 | |
| | | 6-2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 6-3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 6-4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 비고 |
|---|---|---|---|---|---|
| | | | 위치 | 면적 | |
| | 6-5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6-6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6-7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6-8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6-9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6-10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6-11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6-12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6-13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6-14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2016년 일부준공 |
| | 6-15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6-16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6-17 | 401.7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7 | |
| | 6-18 | 401.7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01.72 | |
| | 6-19 | 478.9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478.96 | |
| | 6-20 | 528.65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528.65 | |
| | 6-21 | 528.7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528.73 | |
| | 7 | 72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723 | |
| | 8 | 6,38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9-3답 | 6,386 | |
| - | - | 132,373 | | 132,373 | |

※ 골프장용지 2-②단계

7) 유보지 (변경없음)

□ 시티타워복합용지 사업시행시행분【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투자유치2BL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생략)

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분
1) 골프장내주택용지(변경)
□ 변경사유 : 골프장내 주택용지 조성계획 변경
□ 기정

| 도면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골프장내 주택단지 | 골프장내 주택단지 | 용도 | •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 | 건폐율 |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 | 용적률 |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 | 높이 |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 | 1필지당 세대수 | • 1필지당 가구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br>• 획지의 합병에 의한 공동개발시는 당초 지정된 필지당 가구수를 합한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br>• 골프장내 주택단지로 개발되는 단독주택지의 규모와 수용세대수는 <별표2-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의 합은 당초 사업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
| | | 배치 및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br><br>• 건축한계선 지정<br>- 단지 내 도로변 : 3~4미터<br>- 인접대지 경계선 : 1미터<br>- 골프장변 경계선 : 3~4미터 |
| | | 형태 및 외관 | • 지붕<br>-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br>·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가로의 비율이 1:2~1:3이 되도록 한다.<br>·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골프장내 주택단지 | 골프장내 주택단지 | 형태 및 외관 | • 외벽의 재료 및 형태<br>-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br>- 지붕재료 : 재료의 물성과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연소재의 재료를 권장한다.<br>- 건축물 외벽에 페인트 사용은 지양한다.<br>• 1층 바닥높이 등<br>-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미터 이내로 한다.<br>• 담장 및 대문, 계단 등<br>-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br>-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단, 단지내 도로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2미터)의 안쪽으로 설치한다.<br>· 다락<br>- 다락을 설치할 경우, 층고의 최고높이를 1.8미터이하로 한다(경사지붕에 한함) |
| | | 색채 | • 지붕 및 외벽의 주조색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블록별로 흰색, 베이지색, 지붕색(회색)으로 구분한다. 단, 지붕과 외벽이 일체화된 형태의 경우, 외벽은 지붕 색상에 따른다.<br>•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며, 재료의 물성과 자연스런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권장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br>•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br>• 위 항목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골프장 주택단지 조성계획서를 준용한다. |

※ 별도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경관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 변경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골프장내 주택단지 | 골프장내 주택단지 | 용도 | •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 | 건폐율 |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 | 용적률 |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 | 높이 |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 | 1필지당 세대수 | • 1필지당 가구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br>• 획지의 합병에 의한 공동개발시는 당초 지정된 필지당 가구수를 합한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br>• 골프장내 주택단지로 개발되는 단독주택지의 규모와 수용세대수는 <별표2-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의 합은 당초 사업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골프장내 주택단지 | 골프장내 주택단지 | 배치 및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br>• 건축한계선 지정<br>- 단지 내 도로변 : 2미터 |
| | | 형태 및 외관 | • 지붕<br>-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br>·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가로의 비율이 1:2~1:3이 되도록 한다.<br>·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br>• 외벽의 재료 및 형태<br>-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br>- 지붕재료 : 재료의 물성과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연소재의 재료를 권장한다.<br>- 건축물 외벽에 페인트 사용은 지양한다.<br>• 1층 바닥높이 등<br>-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미터 이내로 한다.<br>• 담장 및 대문, 계단 등<br>-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br>-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br>· 다락<br>- 다락을 설치할 경우, 층고의 최고높이를 1.8미터이하로 한다(경사지붕에 한함) |
| | | 색채 | • 지붕 및 외벽의 주조색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블록별로 흰색, 베이지색, 지붕색(회색)으로 구분한다. 단, 지붕과 외벽이 일체화된 형태의 경우, 외벽은 지붕 색상에 따른다.<br>•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며, 재료의 물성과 자연스런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권장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br>•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br>• 위 항목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골프장 주택단지 조성계획서를 준용한다. |

※ 별도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경관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 별표 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 기정

| 구분 | | 단독주택용지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R4<br>(골프장 내 주택단지) |
| | 허용용도 | ·제2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br>-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br>- 3층이하 공동주택(골프장 내 주택단지에 한함)<br>-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30%이하 |
| 용적률 | | 80%이하 |
| 최고층수 | | 3층 |
| 최고높이 | | 14m(필지별 기준지표면 레벨로부터 높이) |
| 1필지당 가구수 | | - |

□ 변경

| 구분 | | 단독주택용지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R4<br>(골프장 내 주택단지) |
| | 허용용도 | ·제2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br>-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br>-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30%이하 |
| 용적률 | | 80%이하 |
| 최고층수 | | 3층 |
| 최고높이 | | 14m(필지별 기준지표면 레벨로부터 높이) |
| 1필지당 가구수 | | 1가구 |

< 별표 2 > 골프장내 주택단지 조성기준

□ 기정

| 구 분 | 조 성 기 준 |
|---|---|
| 골프장내 주택단지 | • 획지의 분할 및 합병<br>- 필지를 분할할 경우 단위필지의 규모는 265㎡이상으로 하며, 연접한 필지 합병 허용.<br>- 가구별 공동개발 가능<br>- 가구기준으로 개별사업시행 가능<br>• 차량 진출입<br>- 골프장 주택단지의 도로는 사도로 개설토록 한다.<br>• 조성원칙<br>-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제44조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및 국토교통부 지침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5)”에 의거하여 계획·조성되어야 한다. 이때, 두 지침의 동일사항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 |

□ 변경

| 구 분 | 조 성 기 준 |
|---|---|
| 골프장내 주택단지 | • 획지의 분할 및 합병<br>- 필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연접한 2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분할·합병은 1회에 한한다.)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br>• 차량 진출입<br>- 골프장 주택단지의 도로는 사도로 개설토록 한다.<br>• 조성원칙<br>-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제44조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및 국토교통부 지침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계획·조성되어야 한다. 이때, 두 지침의 동일사항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 |

< 별표 2-1 > 골프장 내 주택단지의 규모 및 세대수

□ 기정

| 도면번호 | 규모유형 | 획지번호 | 허용세대수 | 비고 |
|---|---|---|---|---|
| 계 | | - | 355 세대 | - |
| 골프장1 | 대지기준 265㎡이상 | 2-1, 2-2, 2-3, 2-4, 3-1, 3-2, 3-3, 3-4, 3-5 | 206 세대 | 공동주택 건축시 허용세대수의 50% 이하로 건축하여야함 |
| 골프장2 | 대지기준 265㎡이상 | 2-1, 2-2, 2-3, 2-4, 2-5, 2-6 | 149 세대 | 공동주택 건축시 허용세대수의 50% 이하로 건축하여야함 |

□ 변경

| 도면번호 | 규모유형 | 획지번호 | 허용세대수 | 비고 |
|---|---|---|---|---|
| 계 | | - | 264 세대 | - |
| 골프장1 | | 2-1, 2-2, 2-3, 2-4, 3-1, 3-2, 3-3, 3-4, 3-5 | 145 세대 | - |
| 골프장2 | | 2-1, 2-2, 2-3, 2-4, 2-5, 2-6 | 119 세대 | - |

1)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2) R&D 및 첨단산업용지 (변경없음)

3)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4) 업무시설용지 (변경)

□ 변경사유 : 업무3 분할 획지(B3-3)의 건폐율,용적률 등 부여

□ 기정

< 별표 10 > 업무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구 분 | 중심업무용지 | | | | 일반업무용지 |
|---|---|---|---|---|---|
| | U1 (간선가로변) | | U2 (간선가로변) | U3 (이면도로변) | U4 (간선가로변) |
| 건폐율 | 80%이하 | 80%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이하 |
| 용적률 | 1,500%이하 | 500%이하 | 1,000% 이하 | 800% | 600% |
| 최저층수 | - | - | 5층 이상 | - | - |
| 해당블록 | B1, B2, B3-1, B4, B7~B10 | B3-2 | B5-①, B6-① | B5-②, B6-② | B11, B12, B13 |

□ 변경

| 구 분 | 중심업무용지 | | | | 일반업무용지 |
|---|---|---|---|---|---|
| | U1 (간선가로변) | | U2 (간선가로변) | U3 (이면도로변) | U4 (간선가로변) |
| 건폐율 | 80%이하 | 80%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이하 |
| 용적률 | 1,500%이하 | 500%이하 | 1,000% 이하 | 800% | 600% |
| 최저층수 | - | - | 5층 이상 | - | - |
| 해당블록 | B1, B2, B3-1, B4, B7~B10 | B3-2, B3-3 | B5-①, B6-① | B5-②, B6-② | B11, B12, B13 |

5) 기타시설용지 (변경)

□ 통신공급설비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완충녹지8호내 통신분기국사를 별도의 통신공급설비로 신설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통1 (신설) |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 통신용시설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80% 이하 |
| | | 용적률 | • 80% 이하 |
| | | 높이 | - |
| | | 배치 및 건축선 | - |
| -이외 변경사항없음 - | | | |

6) 유보지 (변경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대지내 공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

< 별표 21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조경 조성기준

| 구 분 | 조 성 기 준 | |
|---|---|---|
| 전면공지 | 기정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고, 일반형주택(R1)은 전명공지의 주차장이용이 허용된다. |
| | 변경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고, 일반형주택(R1)은 전명공지의 주차장이용이 허용된다. |
| 공공조경 | |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br>-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br>-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br>-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br>- 공공보행통로는 공공부문 및 인근 공공보행통로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 등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신설) |

※ 이외 변경사항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지정(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1/5,000) : 변경(생략)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 - 197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 - 용유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준공 고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91호(2016.5.3)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032-453-760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년 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 명 : 인천광역시장(대표 유정복)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1138)

###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43번지 일원

나. 면 적 : 99,708.2㎡

다. 용도별 면적

| 구 분 | |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 총 계 | | | 99,708.2 | 100.0 | |
| 관광·위락시설용지(마리나시설용지) | 소 계 | | 69,085.2 | 69.3 | |
| | 서비스 편의시설·기능시설 | 숙박·업무 | 13,774.7 | 13.8 | 왕산마리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
| | | 판매 | 43,053.1 | 43.2 | |
| | 기능시설 | 육상보관시설/선박보급시설 | 12,257.4 | 12.3 | |
| 공공기반시설용지 | 소 계 | | 30,623.0 | 30.7 | |
| | 도 로 | | 12,701.9 | 12.7 | 교량부(1,639㎡) 포함 |
| | 주차장 | | 1,425.4 | 1.4 | |
| | 광 장 | | 6,260.4 | 6.3 | |
| | 항만(방파호안) | | 10,235.3 | 10.3 | |

### 4. 준 공 일 : 2016. 8. 29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공공기반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광장, 항만(방파호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4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무상귀속 조서 참조)**

###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해당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 - 1161호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구 분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상호 및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양도·양수일 |
|---|---|---|---|---|
| 양 도 인 | 정보통신공사업 (제330105호) | 주식회사 광은 유 기 창 |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733(학성동) | 2016. 8.22 |
| 양 수 인 | 정보통신공사업 (제320268호) | ㈜경보텔레콤 이 경 민 | 인천 부평구 영성로 82, 305호(삼산동, 진광빌딩)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 - 1166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사업 방식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1496(2015.12.14.)호, 제2016-668(2016. 5. 16.)호로 공지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 8. 29.

##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 선정 방식

┌ 당초 : '공모에 의한 방식'

└ 변경 : '제안에 의한 방식'

**2. 변경 주요사유**

┌ 자체 제안서 평가기준이 마련됨.

└ 특례사업 준비기간 단축이 필요함.

**3. 대상 공원 및 내용**

| 연번 | 공 원 명 | 위치 | 사업의 방식 | | 담당기관 |
|---|---|---|---|---|---|
| | | | 당 초 | 변 경 | |
| 1 | 무 주 골 공 원 | 연수구 선학동 | 공모에 의한 방식 | 제안에 의한 방식 | 월미공원사업소 |
| 2 | 십 정 공 원 | 부평구 십정동 | 공모에 의한 방식 | 제안에 의한 방식 | 인천대공원사업소 |
| 3 | 연 희 공 원 | 서구 연희동 | 공모에 의한 방식 | 제안에 의한 방식 | 계양공원사업소 |
| 4 | 검단16호공원 | 서구 오류동 | 공모에 의한 방식 | 제안에 의한 방식 | 〃 |
| 5 | 송 도 2 공 원 | 연수구 옥련동 | 공모에 의한 방식 | 제안에 의한 방식 | 연수구 |

4. 향후 추진 계획

① ‘제안에 의한 방식’ 특례사업 공고 : (일정 추후 확정)

② 제안서 접수 및 심사(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5. 기타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032-440-3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6 - 1169 호

# 2016년 젓새우 한시어업허가 승인 공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승인사항(신청 접수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24

인천광역시장

## 1.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승인사항

가. 어업의 종류 : 안강망어업(구획어업)

나.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 젓새우(*Acetes Chinensis*)

다. 어획가능량 : 총 1,932톤

라. 해역의 범위 : 다음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석모수로)

| 연번 | 좌 표 | 연번 | 좌 표 |
|---|---|---|---|
| 1 | 37°46′03.00"N,126°21′19.00"E | 7 | 37°34′20.00"N,126°15′15.00"E |
| 2 | 37°42′19.00"N,126°21′16.00"E | 8 | 37°36′21.00"N,126°13′57.00"E |
| 3 | 37°41′30.00"N,126°23′13.00"E | 9 | 37°38′36.00"N,126°20′47.00"E |
| 4 | 37°38′45.00"N,126°24′14.00"E | 10 | 37°41′14.00"N,126°22′39.00"E |
| 5 | 37°38′13.00"N,126°21′54.00"E | 11 | 37°42′12.00"N,126°19′59.00"E |
| 6 | 37°36′38.00"N,126°21′38.00"E | 12 | 37°46′03.00"N,126°19′54.00"E |

마. 조업기간 및 시기 : ‘16. 9. 15 ~ 12. 14(3개월)

바. 조업척수 : 총 77척(인천 56, 경기 21)

1)「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된 어선에 겸업으로 허가

사. 척당 어획할당 및 관리

1) 어선별 어획량을 25톤으로 제한하고, 할당된 어획량 관리가 가능토록 허가 처분시 사전 승인된 판매장소에 판매하도록 조치

아. 기타(주요 제한·조건)

1) 허가기간 내 조업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한시어업허가에 따른 조업을 잠정 중단하고, 분쟁·갈등을 조정한 후 조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다른 어업과의 분쟁발생 예방을 위하여 젓새우만 포획하여야 하며, 혼획된 수산동물은 방류하고 조업 중단 후 이동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한시어업허가 대상 어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야간(22시~익일04시) 조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 중 동 허가와 관련한 불법어업 또는 승인사항 위반 행위 시 한시어업허가는 취소되며, 어업인은 즉시 한시어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5) 수산자원 모니터링 결과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시어업허가를 잠정 중단하며, 동 사유가 해결되는 경우 재개하여야 한다.

6)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획물(젓새우)을「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고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경인북부수협 외포리 위판장)

**※ 한시어업허가 처분 시 제한 및 조건이 변경, 추가될 수 있음**

## 2. 한시어업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1) 신청기간 : **2016. 8. 24.(수) ~ 9. 2.(금)**

2) 신청방법 : **방문 접수***(우편,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한시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선주)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제한 및 조건 준수에 대한 확약서 징구 예정)

** 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3)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수산과**

4) 구비서류 :

가) 한시어업허가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원본 지참) 1부

다) 선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각 1부

라) 한시어업 대상 해역에서의 젓새우 어획실적('12 ~ '15년) 1부 (대상 해역에서 어획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마) 해당 어선의 젓새우 위판실적 1부(해당 어업인에 한함)

바) 해당 어선의 출·입항 신고 실적 1부(해당 어업인에 한함)

사) 해당 어선의 전경 및 어구 사진 각 1장

**※ 구미서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신청 어업인에게 있음.**

나. 신청대상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된 어선의 소유자로서 한시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선적항이 인천광역시인 어선에 한하여 신청 가능)

## 3. 한시어업허가 배제사항 등

가.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 상습 불법자에 대한 한시어업허가 배제

1) 한시어업허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어업의 허가가 1회 이상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2년 이내 어업허가 정지일수(과징금을 포함한다)가 75일을 초과한 경우

※ 단, 생계형 어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사면(기록 삭제 등)을 받은 경우는 한시어업허가 배제사항에서 제외

## 4. 기타 참고사항

가.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로 확정된 어업인(선주)은 해상조업 질서 유지 및 한시어업허가 제한·조건 준수 등을 위하여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미이수 어업인은 한시어업허가 대상자에서 제외)**

나. 한시어업 및 기존의 허가어업 중 수산관계법령, 한시어업 허가에 설정된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다. 기타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승인 및 신청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4.6.23>

## 한시어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시·도: 5일<br>시·군·구: 3일 |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소속 단체명 | 직위 |

| 사용어선 | 어선의 종류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총톤수(톤) | 마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존의 허가 받은 어업의 내용 | 종류 | 어업의 종류 | 허가번호 | 허가기간 |
|---|---|---|---|---|
| | 주 어업 | | | |
| | 그 외의 어업 | | | |
| | 그 외의 어업 | | | |

| 한시어업 | 어업의 종류 | 수산동물의 종류 | 해역의 범위 | 조업기간 |
|---|---|---|---|---|
| | | | | |

「수산업법」 제42조(「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합니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1172호

#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 상호 및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법령위반 내 용 | 행정처분 내 용 |
|---|---|---|---|---|
| 제150372호 | (주)유엔티 백 영 아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56번길 24-12, 성지위너스타운 102동 201호(부평동) |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1월 (2016.08.25~ 2016.09.24)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1174호

#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인천가족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인천가족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29.

## 인 천 광 역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총괄조서

| 구 분 | 변 경 전 | | | | 변 경 후 | | | | 비고 (부지면적 증감) |
|---|---|---|---|---|---|---|---|---|---|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축면적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축면적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총계 | 1,680,694 | 737,117.7 | 11,165.35 | 25,562.23 | 1,681,471 | 817,514.6 | 14,318.63 | 31,935.95 | (증 777) |
| 도로 및 광장 | 118,505.8 | 118,505.8 | - | - | 124,478.8 | 124,478.8 | - | - | (증 5,973) |
| 조경시설 | 17,210.0 | 17,210.0 | - | - | 18,565.1 | 18,565.1 | - | - | (증 1,355.1) |
| 휴양시설 | 13,855.24 | 13,855.24 | - | - | 15,285.9 | 15,285.9 | - | - | (증 1,430.7) |
| 편익시설 | 16,531.7 | 16,531.7 | 711.1 | 1,086.0 | 27,283.8 | 27,283.8 | 1,064.07 | 1,438.97 | (증 10,752.1) |
| 관리시설 | 940.7 | 940.7 | 1,197.39 | 1,900.29 | 940.7 | 940.7 | 1,197.39 | 1,900.29 | |
| 기타시설 | 570,074.26 | 570,074.26 | 9,256.86 | 22,575.94 | 630,960.30 | 630,960.30 | 12,057.17 | 28,596.69 | (증 60,886.0) |
| 녹지 | 943,576.4 | | - | - | 863,956.4 | - | - | - | (감 76,619.9) |
| 기정- 시설율43.87%, 녹지율56.14%, 건폐율0.66% | | | | | 변경- 시설율48.62%, 녹지율51.38%, 건폐율0.85% | | | | |

### 2. 입안사유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의 1, 2단계가 완료되고 3-1단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봉안시설, 자연장, 산림복원, 산책로, 도로, 조경, 녹지 등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032-440-2833)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팀 (☎032-440-5252)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13),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175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녹지)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 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열람·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29.

## 인 천 광 역 시 장

### 1. 주요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5번지 일원

나. 입안내용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녹지)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폐지 | 1 | 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시설 | 원창동 213-5번지 일원 | 13,200 | 감)13,200 | - | 1991.07.20. (인고 제1991-97호) | |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1 | 폐기물 처리시설 | ◦ 폐지<br>- 감) 13,200㎡ | ◦사후관리가 종료되어 기능이 상실된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지를 통해 토지이용 현실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폐지 | 1 | 가스공급 설비 | 원창동 213-3번지 일원 | 12,176 | 감)12,176 | - | 1997.09.24. (인고 제1997-217호) | |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1 | 가스공급설비 | ◦ 폐지<br>- 감) 12,176㎡ | ◦인근 부지로 이전하여 기능이 상실된 가스공급 설비의 폐지를 통해 토지이용 현실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가1 | 녹 지 | 경관녹지 | 서구 원창동 213-5번지 일원 | | 증)1,384 | 1,384 | - |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가1 | 녹지 | ◦ 경관녹지 신설<br>- 증) 1,384㎡ | ◦폐기물처리시설 및 가스공급설비시설 폐지에 따른 기존 훼손지를 복원하여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에 위치한 저유시설과의 차폐를 통한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

**2.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24),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4. 관계서류**: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1176호

#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24),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6. 8. 29.

##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05번길 62(원창동 2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명 칭 : SK인천정유소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면 적 : 기정)451,880㎡→변경)438,618㎡ (감 13,262㎡)

○ 규 모(변경없음)

- 건축면적: 1,341.7㎡
- 공작물면적: 66,726.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SK인천석유화학(주) 대표이사 이재환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00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사업기간: 1984. 8. ~ 2017.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소재지 | 기정 | | | | 변경 | | | | | 소유자 | 비고 |
|---|---|---|---|---|---|---|---|---|---|---|---|
| | 지번 | 부번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번 | 부번 | 지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 |
| 원창동 | 196 | 4 | 1,745 | 1,745 | 196 | 4 | 제 | 1,745 | 1,745 | 국토교통부 | |
| 원창동 | 196 | 7 | 4,007 | 4,007 | 196 | 7 | 도 | 4,007 | 4,007 | 국토교통부 | |
| 원창동 | 196 | 9 | 2,856 | 2,856 | 196 | 9 | 제 | 2,856 | 2,856 | 국토교통부 | |
| 원창동 | 196 | 10 | 4,783 | 4,783 | 196 | 10 | 잡 | 4,783 | 4,783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196 | 12 | 3,375 | 3,375 | 196 | 12 | 잡 | 3,375 | 3,375 | 기획재정부 | |
| 원창동 | 196 | 13 | 2,772 | 797 | 196 | 13 | 도 | 2,772 | 797 | 인천광역시 | |
| 원창동 | 196 | 19 | 188 | 188 | 196 | 19 | 잡 | 188 | 188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196 | 16 | 2,026 | 2,005 | 196 | 16 | 잡 | 2,026 | 2,005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196 | 18 | 2,960 | 2,960 | 196 | 18 | 잡 | 2,960 | 2,960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1 | | 422 | 422 | 211 | | 잡 | 422 | 422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1 | 12 | 43 | 43 | 211 | 12 | 잡 | 43 | 43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1 | 13 | 871 | 871 | 211 | 13 | 잡 | 871 | 871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1 | 2 | 17,217 | 17,217 | 211 | 2 | 도 | 17,217 | 17,217 | 국토교통부 | |
| 원창동 | 211 | 3 | 5,897 | 5,897 | 211 | 3 | 잡 | 5,897 | 5,897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1 | 14 | 412 | 412 | 211 | 14 | 잡 | 412 | 412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1 | 15 | 1,472 | 1,472 | 211 | 15 | 잡 | 1,472 | 1,472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1 | 4 | 14,003 | 14,003 | 211 | 4 | 제 | 14,003 | 14,003 | 국토교통부 | |
| 원창동 | 211 | 5 | 255 | 3 | 211 | 5 | 제 | 255 | 3 | 국토교통부 | |
| 원창동 | 211 | 6 | 2,489 | 2,489 | 211 | 6 | 도 | 2,489 | 2,489 | 국토교통부 | |
| 원창동 | 211 | 7 | 126 | 126 | 211 | 7 | 잡 | 126 | 126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1 | 10 | 205 | 205 | 211 | 10 | 잡 | 205 | 205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 | | | | | | | | | | |
|---|---|---|---|---|---|---|---|---|---|---|---|
| 원창동 | 211 | 11 | 5,680 | 5,680 | 211 | 11 | 잡 | 5,680 | 5,680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3 | 1 | 93,048 | 93,048 | 213 | 1 | 대 | 93,048 | 93,048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3 | 5 | 12,632 | 12,632 | 213 | 5 | 대 | 6,751 | 0 | 주식회사 한화 | 분할 213-19, -20(2016.06.27.) (제척) |
| | | | | | 213 | 19 | 대 | 3,966 | 0 | 주식회사 한화 | 213-5에서 분할(2016.06.27.) (제척) |
| | | | | | 213 | 20 | 대 | 1,915 | 0 | 주식회사 한화 | 213-5에서 분할(2016.06.27.) (제척) |
| 원창동 | 213 | 6 | 346 | 346 | 213 | 6 | 대 | 346 | 0 | 주식회사 한화 | 제척 |
| 원창동 | 213 | 7 | 284 | 284 | 213 | 7 | 대 | 284 | 0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제척 |
| 원창동 | 213 | 8 | 251 | 251 | 213 | 8 | 대 | 251 | 251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3 | 9 | 926 | 926 | 213 | 9 | 대 | 926 | 926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3 | 10 | 1,927 | 963.5 | 213 | 10 | 대 | 1,927 | 963.5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 | | | 963.5 | | | | | 963.5 | 포스코에너지주식회사 | |
| 원창동 | 213 | 11 | 207 | 207 | 213 | 11 | 대 | 207 | 207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19 | 7 | 442 | 60 | 219 | 7 | 제 | 442 | 60 | 국토교통부 | |
| 원창동 | 220 | | 172 | 172 | 220 | | 잡 | 172 | 172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44 | 1 | 12,399 | 12,399 | 244 | 1 | 도 | 12,399 | 12,399 | 국토교통부 | |
| 원창동 | 244 | 2 | 946 | 946 | 244 | 2 | 잡 | 946 | 946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44 | 21 | 63 | 31.5 | 244 | 21 | 잡 | 63 | 31.5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 | | | 31.5 | | | | | 31.5 | 포스코에너지주식회사 | |
| 원창동 | 244 | 22 | 300 | 300 | 244 | 22 | 잡 | 300 | 300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44 | 3 | 115,441 | 115,441 | 244 | 3 | 잡 | 115,441 | 115,441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44 | 19 | 15,559 | 15,475 | 244 | 19 | 잡 | 15,559 | 15,475 | 국방부 | |
| 원창동 | 244 | 20 | 14,181 | 14,181 | 244 | 20 | 잡 | 14,181 | 14,181 | 주식회사 한화 | |
| 원창동 | 244 | 4 | 1,071 | 1,071 | 244 | 4 | 잡 | 1,071 | 1,071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44 | 10 | 6,536 | 6,330 | 244 | 10 | 도 | 6,536 | 6,330 | 국토교통부 | |
| 원창동 | 244 | 15 | 2,826 | 703 | 244 | 15 | 잡 | 2,826 | 703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44 | 16 | 1,505 | 1,505 | 244 | 16 | 잡 | 1,505 | 1,505 | 포스코에너지주식회사 | |
| 원창동 | 256 | | 48,504 | 48,504 | 256 | | 장 | 48,504 | 48,504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 |

| | | | | | | | | | | | |
|---|---|---|---|---|---|---|---|---|---|---|---|
| 원창동 | 256 | 32 | 655 | 655 | 256 | 32 | 장 | 655 | 655 | 에스케이인천<br>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56 | 7 | 18,388 | 18,388 | 256 | 7 | 잡 | 18,388 | 18,388 | 에스케이인천<br>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56 | 30 | 836 | 836 | 256 | 30 | 잡 | 836 | 836 | 에스케이인천<br>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56 | 31 | 1,599 | 1,599 | 256 | 31 | 잡 | 1,599 | 1,599 | 에스케이인천<br>석유화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56 | 9 | 713 | 713 | 256 | 9 | 잡 | 713 | 713 | 에스케이인천석유화<br>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56 | 16 | 22,443 | 22,443 | 256 | 16 | 임 | 22,443 | 22,443 | 에스케이인천석유화<br>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56 | 24 | 273 | 273 | 256 | 24 | 장 | 273 | 273 | 에스케이인천석유화<br>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56 | 26 | 662 | 662 | 256 | 26 | 장 | 662 | 662 | 에스케이인천석유화<br>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56 | 27 | 208 | 208 | 256 | 27 | 장 | 208 | 208 | 에스케이인천석유화<br>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61 | 1 | 20 | 20 | 261 | 1 | 대 | 20 | 20 | 에스케이인천석유화<br>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61 | 3 | 54 | 27 | 261 | 3 | 대 | 54 | 27 | 에스케이인천<br>석유화학주식회사 | |
| | | | | 27 | | | | | 27 | 포스코에너지<br>주식회사 | |
| 원창동 | 261 | 4 | 1 | 1 | 261 | 4 | 대 | 1 | 1 | 에스케이인천석유화<br>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294 | 2 | 66 | 66 | 294 | 2 | 장 | 66 | 66 | 에스케이인천석유화<br>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310 | | 499 | 499 | 310 | | 장 | 499 | 499 | 에스케이인천석유화<br>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321 | | 106 | 106 | 321 | | 잡 | 106 | 106 | 에스케이인천석유화<br>학주식회사 | |
| 원창동 | 437 | 27 | 28,874 | 7,030 | 437 | 27 | 잡 | 28,874 | 7,030 | 해양수산부 | |
| **합계** | | | **478,767** | **451,880.0** | | | | **478,767** | **438,618** | | |

7. 관계서류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인천계양소방서 공고 제2016 - 6호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공표함에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천 계 양 소 방 서 장
2016년 8월 29일

#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공고

##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 2. 인정요건

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3. 공표예정 대상

| 대 상 명 | 대표자 | 위 치 | 업 종 | 비 고 |
|---|---|---|---|---|
| 까르르스타 | 장00 | 계양구 작전동 863-15 | 일반음식점 | 인정요건 확인한바 이상없음 |
| 횡성축협 한우프라자 | 정00 | 계양구 작전동 286-2 | 일반음식점 | 인정요건 확인한바 이상없음 |

## 4. 이의신청

가. 신청기한 : 2016. 9. 17(토) 까지

나. 신청장소 :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다. 신청방법

- 서 면『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전자우편(gold1296@korea.kr)

## 5. 문의처 :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032-650-564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6-159호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6.08.29.~2016.09.12(15일간)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

가. 납부기한 : 2016년 9월 22일까지

나. 납부방법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납부독촉및압류예고공시송달대상

| 연번 | 부과연도 | 부과번호 | 대상자 | 주민등록 주소 | 단속차량 | 처분과태료 | 단속일시 | 단속장소 | 단속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
| 1 | 2016 | 000004 | 김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58번길 ** (유방동) | 경기 94바 28** | 300,000 | 2015.12.07. 15:00 | 서구 가좌동 백범대로 (주)코오롱 정문 앞 | 폭0.27미터초과 (폭2.77미터) | 반송 (수취인 불명) | |
| 2 | 2016 | 000005 | 안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길 ***** (일월동) | 강원 98사 27** | 1,000,000 | 2015.12.07. 10:43 | 동구 만석동 인중로 | 폭0.54미터초과 (폭3.04미터) | 반송 (수취인 불명) | |
| 3 | 2016 | 000035 | 정남*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151번길 ** , ** (의정부동) | 전남 91바 73** | 300,000 | 2015.12.16. 14:49 | 서구 왕길동 원당대로 (안동포 사거리) | 폭0.28미터초과 (폭2.78미터) | 반송 (폐문부재) | |
| 4 | 2016 | 000063 | 이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41번길 ** | 제주 97아 97** | 1,000,000 | 2015.12.21. 15:55 | 중구 연안동 연안부두로 | 폭0.80미터초과 (폭3.3미터) | 반송 (이사불명) | |
| 5 | 2016 | 000079 | 황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73번길 **, **** (청학동, ****) | 인천 85바 85** | 300,000 | 2016.01.05. 11:15 | 중구 항동 항동과적 검문소 | 높이0.15미터초과(높이4.35미터) | 반송 (폐문부재) | |
| 6 | 2016 | 000261 | 강규*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 , **** ***** (**아파트) | 인천 06사 64** | 500,000 | 2016.03.25. 14:40 | 남동구 논현동 포구로 | 축하중1.70톤초과 (3축하중11.70톤) | 반송 (폐문부재) |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6 - 160호

#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중인 **『인천가족공원조성(3-1단계)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분묘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 29.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가족공원조성(3-1단계)사업

나.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 54-10번지 등 일원

다. 사 업 내 용 : 분묘번호 나2~,나3~,나4~,나5~,나6~ 분묘중 일부(묘지 연번기준 : A, B, C, D)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 상 시 기 : 예산범위내에서 감정평가후 개별통지

나. 보 상 방 법 : 현금보상

다. 보상금산정 :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라. 보 상 절 차 : 분묘개장 등의 절차 이행후 보상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6. 8. 29 ~ 9. 13 (15일간)

나. 열람(이의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시설보상팀(전화 032-440-5173, 5223)

※ 열람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실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종합건설본부에서만 가능)

다. 신청방법 : 편입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4. 편입물건조서 및 기타사항**

가. 분 묘 : 인천 부평구 부평동 산54-10번지 등 토지 지상에 위치한 분묘 (비석 등 지장물 포함)

| 위 치 | 지 번 |
|---|---|
| 부평구 부평동 | 산 54-10, 산 53-1, 산 52-1, 산 52-29번지 일원 |

나. 편입 분묘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예 규

# 인 천 광 역 시 예 규 ( 발 령 )

☐ 제 명 : 인천광역시 국외훈련 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에 맞춘 국외훈련 공무원 선발 요건정비 등 국외훈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위원,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 정비 (제3조제3항 및 제5항)

○ 국외훈련 선발요건 개선(제4조제1항)

- 1년 이상의 훈련: 5년 경력 → 3년 경력
- 6월 이상 1년 미만의 훈련: 3년 경력 → 2년 6개월 경력
- 6월 미만의 훈련: 만 53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국외훈련 및 유학휴직 선발대상
  - 4년이 경과한 자 → 3년이 경과한 자

○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함(제16조제3항)

○ 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함(제17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30조제1항제2호 및 별표 4)

○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 국외훈련 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예규 제461호

# 인천광역시 국외훈련 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 국외훈련 업무 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교육훈련담당사무관”을 “능력개발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년”을 “2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53세”를 “55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4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30조제1항제2호 및 별표 4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80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제25조제2항, 제12항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안 제18조의3 신설)

- 시장은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 작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공개모집

나. 공사감리자의 명부 등록 신청 (안 제18조의4 신설)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안에 신고 된 건축사로 제한

다. 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 방법 등 (안 제18조의5 신설)

- 시장은 등록 요건에 적합한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시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공사감리자 명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 가능

라. 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 (안 제18조의6 신설)
- 허가권자는 시장이 작성한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
-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 가능

마.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안 제18조의7 신설)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 허가권자는 건축주의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비용 지불여부 확인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건축계획과장, 전화: 032-440-47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이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공사감리자를 모집·관리할 수 있다.

제18조의4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공사감리자 명부”라 한다)에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제18조의5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방법 등) ① 시장은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하고, 공사감리자 명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사법」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6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자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나. 국내외 장기출장
   다.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라. 그 밖의 사유

②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7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

| 신청구분 | [ ] 신규 | [ ] 재신청 |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

| | |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사무소주소 |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4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 서류 |
|---|
| -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 공사감리자 명부

| 성명 | 자격번호 | 신고번호 | 사무소명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br>팩스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 허가번호<br>허가일자 | 건축구분 | 대지위치<br>건축주명 | 감리자명<br>사무소명 | 착공일자<br>착공연기일자 | 임사승인일자<br>사용승인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사무소주소 | |

| | |
|---|---|
| 사유 및 기간 | [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 [ ] 국내외 장기출장 |
| | [ ]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 | [ ] 그 밖의 사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6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
|---|
|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제18조의3(공사감리자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br><br>1. 모집 대상<br>2. 모집 기간<br>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br>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br>③ 시장은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공사감리자를 모집·관리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8조의4(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공사감리자 명부”라 한다)에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8조의5(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방법 등)** ① 시장은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하고, 공사감리자 명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br>②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③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8조의6(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으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br>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br>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br>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br>4. 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자<br>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br>나. 국내외 장기출장<br>다.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br>라. 그 밖의 사유<br><br>②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br>③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2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br>④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br>⑤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8조의7(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br><br>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br><br>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br>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br>$$Y = y1 - \frac{(X - x2)(y1 - y2)}{x1 - x2}$$<br>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br>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br><br>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br>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81호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장(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 8. 25.

인 천 광 역 시 장

#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규정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의 해당 위원회 심의 ·의결 참여가 불가함으로

나.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조례 제13조(위원회의 구성)제①항제2호를 보완·개선하여 조례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을 “인천광역시의원 2명”으로 개정
(안 제13조제1항제2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440-3802)로 제출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관련,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조례를 보완·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 ▢ 현황

○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택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음

- 위원 19명중 <u>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 2명 포함</u>되어 있음

## ▢ 개정사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규정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의 해당 위원회 심의 ·의결 참여가 불가함으로

○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조례 제13조(위원회의 구성)제①항제2호를 보완·개선하여 조례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 ▢ 주요 개정 내용

○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제12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위원회 구성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를 “인천광역시의원 2명”으로 개정. (안 제13조제1항제2호)

## □ 추진일정

○ 2016. 08. : 조례 일부개정계획(안) 수립

○ 2016. 08. : 사전심사(법무담당관실)

○ 2016. 09. : 실·국별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2016. 09. : 법제심사(법무담당관실)

○ 2016.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 10. : 시의회 심의 의결

○ 2016. 11. : 공포, 시행

※ 붙임 : 1. 개정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4. 입법예고문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2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국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을 “인천광역시의원 2명”으로 개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생략<br>2.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국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생략<br>2. 인천광역시의원 2명 |

[붙임 3]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2010.11.2. 제정)<br><br>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br>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br>2. 본인,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은 사항<br><br>□「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2013.01.04. 제정<br><br>제13조(위원회의 구성)<br>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br>2.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br>3. 교통업무 소관 국장 |
|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82호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8. 25.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가. 그동안 실무상으로 반영하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한편,

나.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법률고문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함으로써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을 마련(안 제2조제3항)

나. 법률고문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성 검증 강화(안 제3조)

1) 법률고문 선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으로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2) 법률고문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다. 법률고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4조)

1) 위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위촉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1호)

2)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을 법률고문 재위촉시 반영(안 제4조제2항제2호)

라. 법률고문이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시 사전신고와 직무회피를 규정(안 제6조제1항)

마. 법률고문 위촉현황, 자문실적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 신설(안 제8조제1항)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307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292, FAX) 032-440-8634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 조례 개정안 | 찬·반 여부 및 사유 |
|---|---|
| | - 구체적으로 기술<br>-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각종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등)**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2.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3. 시 또는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등)**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수는 23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1명의 법률고문으로 보며, 법무법인인 법률고문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회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또는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 받아 수행 중에 있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률고문 위촉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4조(위촉 제한)** ① 시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4.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5조(청렴서약)** 법률고문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제6조(사전신고 등)** ① 법률고문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 등에서의 자문 또는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
2.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임원·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3.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4. 법률고문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5.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행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으로 시에 불이익을 준 경우
7. 그 밖에 법률고문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제8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률고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법률고문 위촉 현황
2. 법률고문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법률고문 위촉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9조(회의)** 시장은 시정의 중요 사안에 관한 관계자 회의에 법률고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고문료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률고문에게 고문료, 소송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 - 53호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가. 최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안전한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5조)

라.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jaemo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 출 자 | 해당사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 고 |
|---|---|---|---|
| ○ 주 소 :<br>○ 성 명 :<br>○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박종우 의원 대표 발의)

| 의 안 번 호 | 728 |
|---|---|

발의연월일 : 2016. 8. 17.
발 의 자 : 박종우·김진규 의원
(찬성자 : 7명)

## 1. 제안이유

가. 최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안전한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5조)

라.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인천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을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범죄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공무원”을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br>-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br>- 제22조(조례)<br><br>“내용은 별지 작성” |
| 관련법규 정비대상 | |
| 관련자료 | |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
   - 건축, 도시, 환경 등에서 추진하는 안전과 관련된 범죄예방사업은 사업대상의 범위가 넓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상황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과장 안병희**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55호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가.「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별표 2]에 따라 유지관리비 산출 시 오수 배출사업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배출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에 근거하여 유입 승인 오염부하량이 산정됨에 따라, 실제 오수배출량이 소량인 경우 부담금 부과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오·폐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변경하고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의 해당연월의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2개월 후 확정 고시되므로 부과 시점과 상이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산출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의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산출 공식 중 유입승인 부하량과 실제 배출부하량의 비율을 조정함 (별표 2 제1호)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중 물가 상승률 산출방법을 변경하고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산정 시 오수 배출사업자의 오수 승인유량 조건을 명시함 (별표 2 제1호)

다. 월평균 기준 오수·폐수 배출량이 2,000㎥/일을 초과(2015년 4월)함에 따라 초기 유지관리비 산출을 삭제함(별표 2 제3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30.(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 ○ 주 소 :<br>○ 성 명 :<br>○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 730 |
|---|---|

발의연월일 : 2016. 8. 19.
발의자 : 김진규·정창일·
김종인·임정빈 의원

(찬성자 5명)

## 1. 제안이유

가.「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별표 2]에 따라 유지관리비 산출 시 오수 배출사업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배출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에 근거하여 유입 승인 오염부하량이 산정됨에 따라, 실제 오수배출량이 소량인 경우 부담금 부과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오·폐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변경하고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의 해당연월의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2개월 후 확정 고시되므로 부과 시점과 상이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산출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의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산출 공식 중 유입승인 부하량과 실제 배출부하량의 비율을 조정함 (별표 2 제1호)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중 물가 상승률 산출방법을 변경하고 유입승인 오

염부하량 산정 시 오수 배출사업자의 오수 승인유량 조건을 명시함(별표 2 제1호)

다. 월평균 기준 오수·폐수 배출량이 2,000㎥/일을 초과(2015년 4월)함에 따라 초기 유지관리비 산출을 삭제함(별표 2 제3호)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가. BS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BS = M \times \left\{ 0.3 \frac{BLi}{\sum_{i=1}^{n} BLi} + 0.7 \frac{F(Li)}{\sum_{i=1}^{n} F(Li)} \right\}$$

(1) 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1)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되는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 2/1,000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2)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kg)

= {유량 × (BOD + COD + SS + T-N + T-P)} × 1/1000

※ 오수 배출사업자의 경우 유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한다.

(3)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a \cdot Qi \times \left( \frac{b \cdot BODi + c \cdot CODi}{2} + d \cdot SSi + e \cdot T-Ni + f \cdot T-Pi \right)$$

(가)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배출량

(나)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종별 계수

| 구 분 | a | 비 고 |
|---|---|---|
| 폐 수 | 1.5 | |
| 오 수 | 1.0 | |

2) BOD 계수

| BOD 값 (㎎/ℓ) | b | 비 고 |
|---|---|---|
| BOD ≤ 200 | 1.0 | |
| 200 < BOD ≤ 300 | 1.1 | |
| 300 < BOD ≤ 400 | 1.2 | |
| 400 < BOD ≤ 500 | 1.4 | |
| 500 < BOD ≤ 600 | 1.6 | |
| 600 < BOD | 2.0 | |

3) COD 계수

| COD 값 (㎎/ℓ) | c | 비 고 |
|---|---|---|
| COD ≤ 200 | 1.0 | |
| 200 < COD ≤ 300 | 1.1 | |
| 300 < COD ≤ 400 | 1.3 | |
| 400 < COD ≤ 500 | 1.6 | |
| 500 < COD ≤ 600 | 2.0 | |
| 600 < COD ≤ 700 | 2.5 | |
| 700 < COD | 3.0 | |

4) SS 계수

| SS 값 (㎎/ℓ) | d | 비 고 |
|---|---|---|
| SS ≤ 200 | 1.0 | |
| 200 < SS ≤ 300 | 1.1 | |
| 300 < SS ≤ 400 | 1.2 | |
| 400 < SS ≤ 500 | 1.4 | |
| 500 < SS ≤ 600 | 1.6 | |
| 600 < SS | 2.0 | |

5) T-N, T-P 계수

| T-N 값 (㎎/ℓ) | T-P 값 (㎎/ℓ) | e, f | 비 고 |
|---|---|---|---|
| T-N ≤ 40 | T-P ≤ 4 | 1.0 | |
| 40 < T-N ≤ 100 | 4 < T-P ≤ 8 | 1.1 | |
| 100 < T-N ≤ 200 | 8 < T-P ≤ 16 | 1.2 | |
| 200 < T-N ≤ 300 | 16 < T-P ≤ 32 | 1.4 | |
| 300 < T-N | 32 < T-P | 1.6 | |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2 유지관리비산출기준 1. 산출공식 | 별표 2 유지관리비산출기준 1. 산출공식 |
|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
| 가. BS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 가. ---------- |
| $BS = M \times \left\{ 0.5 \frac{BLi}{n} + 0.5 \frac{F(Li)}{n} \right\}$ | $BS = M \times \left\{ 0.3 \frac{BLi}{n} + 0.7 \frac{F(Li)}{n} \right\}$ |
| $\sum_{j=1} BLi \qquad \sum_{j=1} F(Li)$ | $\sum_{j=1} BLi \qquad \sum_{j=1} F(Li)$ |
| (1) 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 (1)---------- |
|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 (가) ---------- |
|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나) ---------- |
|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 |
| 1)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1)---------- |
|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되는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
|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 2/1,000 | 2)---------- |
| 3) R : 물가상승률(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 |

| | |
|---|---|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br>(2)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br>- 유입승인 오염부하량(kg)<br>= {유량 × (BOD + COD + SS + T-N + T-P)} × 1/1000<br><신 설> | 3)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 물가지수)<br>(2)----------<br>※오수 배출사업자의 경우 유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한다. |
| 3. 초기 유지관리비 산출<br>가. 조기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하여 초기 일정량 오수·폐수 유입 시기까지 유지관리비 지원<br>①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월평균 기준 오수·폐수 배출량이 최초로 2,000㎥/일을 초과하는 시기의 해당 연도까지는 원인자(사업자)에게 664원/㎥ 징수하고, 부족한 유지관리비는 인천광역시가 지원한다.<br>② 산출공식<br>- 업체별 월간 유지관리비 = 오수·폐수 총 배출량(톤/월) × 664원/톤<br>나. 월평균 기준 오수·폐수 배출량이 2,000㎥/일을 최초 초과하는 시기의 다음 연도부터는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비(시설재투자적립금 포함)를 징수한다. | 〈삭 제〉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계법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br>○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br>○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br>"내용은 별지 작성" |
|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부담금은 100% 원인자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 4. 작성자

환경녹지국 수질환경과장 이 의 연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 56호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5.1.1. 시행)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31.(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 ○ 주 소 :<br>○ 성 명 :<br>○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영수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 735 |
|---|---|

발의연월일 :2016. 8. .

발의자 :안영수・김경선・박병만 의원

(찬성자 4명)

##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5.1.1. 시행)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낙농도우미”란 “낙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일시적으로 착유와 사료급여 등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육성·발전 및 축산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브랜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홍보에 관한 사업
2. 목장 악취(냄새)제거·수질오염방지·위생적인 가축 사육 등 친환경 목장 만들기 사업

3. 젖소 사육농가 복지 향상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축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계법령 | ☐ 축산법<br>- 제2조(정의)<br>-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br><br>☐ 지방재정법<br>-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br><br>“내용은 별지 작성” |
|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양축가 축산업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 일부 보조

나. 관련조문

○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브랜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홍보에 관한 사업

- 6개 사업 714,000천원

【시비 295,600(41%), 군·구비 295,600(41%), 자부담 128,800(18%)】

2) 목장 악취(냄세)제거・수질오염방지・위생적인 가축 사육 등 친환경 목장만들기 사업

- 4개 사업 1,759,700천원

【시비 557,695(32%), 군·구비 557,695(32%), 자부담 644,310(36%)】

3) 젖소 사육농가 복지 증진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업

- 1개 사업 78,800천원

【시비 23,640(30%), 군·구비 23,640(30%), 자부담 31,520(40%)】

나. 추계 결과

○ 총 사업비 : 2,552,500천원

【시비 876,935(35%), 군·구비 876,935(35%), 자부담 798,320(30%)】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군구비+자부담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 붙임

## 4. 작성자

경제산업국 농축산유통과장 한 태 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 (2017년) | 2차년도 (2018년) | 3차년도 (2019년) | 4차년도 (2020년) | 5차년도 (2021년) | 계 | 비 고 |
|---|---|---|---|---|---|---|---|---|
| 세입 | | | | | | | | |
| | 소계 | | | | | | | |
| 세출 | 축산업 육성 및 지원 | 2,552,500 | 2,680,125 | 2,814,131 | 2,954,838 | 3,102,580 | 14,104,174 | |
| | 소계 | 2,552,500 | 2,680,125 | 2,814,131 | 2,954,838 | 3,102,580 | 14,104,174 | |
| 재원 조달 | | 2,552,500 | 2,680,125 | 2,814,131 | 2,954,838 | 3,102,580 | 14,104,174 | |
| 국 비 | | | | | | | | |
| 시비 | 소 계 | 876,935 | 920,782 | 966,821 | 1,015,162 | 1,065,920 | 4,845,620 | |
| | 일반회계 | 876,935 | 920,782 | 966,821 | 1,015,162 | 1,065,920 | 4,845,620 | |
| | 특별회계 | | | | | | | |
| | 기 금 | | | | | | | |
| 군·구비 | | 876,935 | 920,782 | 966,821 | 1,015,162 | 1,065,920 | 4,845,620 | |
| 민 간 | | | | | | | | |
| 자부담 | | 798,630 | 838,561 | 880,489 | 924,514 | 970,740 | 4,412,934 | |

**군 · 구**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6 - 996호

# 신조공인의 등록 공고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22.

## 인천광역시남구청장

**다 음**

1. 등 록 근 거 :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2. 사용개시일 : 2016.8.22.(월)

3. 등록공인명 : 별첨

# 신조 등록 공인 현황

| 연번 | 공 인 명 | 규격 및 서체 | 인 영 | 최초사용일 | 등록사유 |
|---|---|---|---|---|---|
| 1 | 인천광역시남구<br>대표옴부즈만인 | 2.4㎝ 정방형<br>문체부훈민정음체 | 인천광역시<br>남구대표<br>옴부즈만인 | 2016. 8. 22. | 인천광역시남구<br>공인조례 제6조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6-45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3-215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3-215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평구청 미래도시과(☎032-509-69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8. 25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시행지 : 부평구 일신동 33-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215호선)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구분 | 규모 | | | | 사용형태 | 기능 | 연장(m)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결정 | 중로 | 3 | 215 | 14~17 | 일반도로 | 국지도로 | 215 | 중1-292호선 | 중3-355호선 | 결정일 : '05.3.16 |
| **금회시행** | **중로** | **3** | **215** | **17** | **일반도로** | **국지도로** | **42** | **-** |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이행** |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식회사 인천약품 대표이사 윤진하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항동로 143번길, 10-35(일신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8.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붙임】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소유자 | | 비고 |
|---|---|---|---|---|---|---|---|---|---|
| | | | | 공부 | 편입 | 잔여 | 성명 | 주소 | |
| 1 | 부평구 일신동 | 33-6 | 대 | 92.7 | 92.7 | 0 | 주식회사 인천약품 | 부평구 항동로 143번길, 10-35(일신동)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